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제16호

1992

3

나라경제-1992년 3월 2일 발행-제3권 제3호-1990년 1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라-4859호 발행처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561-1400 1991년 8월 30일 제3종 우편물 (나급)인가-월간



특집 / UR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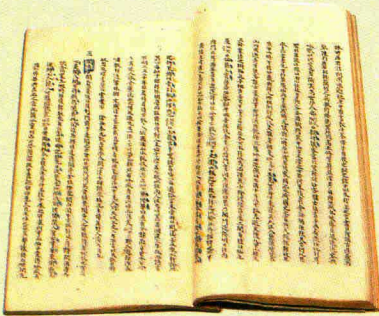
**경제정책해설 /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 시간제근로의 활성화와 근로조건외 보장**

야탈의 초점 /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

별책부록

경제부처의 1992년도 중점추진시책

壬亂 이후 피폐해진 농촌의 재건을 위한 종합농업서



허 균(許筠, 1569~1618)

조선중기 선조 때의 문신인 허균은 본관이 陽川이었고, 字는 端甫, 號는 蛟山·惺所·白月居士였다. 특히 그는 시문에 뛰어난 천재성을 보여 사회제도의 모순성을 고발한 대표적 걸작 『홍길동전』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하며,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남동생이다.

庭試文科와 文科重試에 급제한 이후

刑曹正郎·公州牧使·刑曹參議·承文院副提調·左參贊 등의 주요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명나라의 사신을 영접할 때는 탁월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허균은 두 차례에 걸쳐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경제나 천주교에 관한 많은 서책을 도입하였다.

그는 성품이 호탕하고 서류출신 이달에게 시를 배운 것을 기화로 스스로 서민으로 자처하면서, 중국소설들을 탐독하고 사회모순을 고발하는 소설과 讖記를 만들어 내었다. 더구나 이를 통하여 당시 教條主義的인 朱子學에 반대하고 陽明學을 수용한 그의 學問觀과 均等思想은 그후 實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는 1618년에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는 반란을 河仁俊·金宇成 등과 계획하다 발각되어 家産이 籍沒되고 능지처참되었다. 그의 유작으로서는 『閒情錄』 이외에도 『홍길동전』 『蛟山詩話』 『惺所覆瓿稿』 『惺叟詩話』 『早年讖記』 『屠門大爵』 등이 전해오고 있다.

농업을 유통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새로운 상업적 營農方式을 주창

『閒情錄』은 임란 직후 피폐해진 농업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처참한 民生은 외면한 채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政爭에 염증을 느낀 허균은 山林에 은거하려 하였으며, 향촌사회에서의 생산증진을 통한 경제기반 확립을 의욕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던 것이다.

『閒情錄』은 광해군 2년(1610)에서 동 10년(1618) 사이에 8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이 저작은 모두가 농서는 아니었으나, 다만 산림에 퇴거하는 閒者의 생활유지를 위해 그 일부(卷 16)에 '治農'편을 기술함으로써 마침내 農書로 불리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초기의 『農事直說』이 食糧作物만을 다룬 농서인 반면, 『閒情錄』 治農編은 稼圃·樹植·牧養 등 농업전반을 다룬 종합농서로서 농경생활에서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영주체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농민이 아니라, 허균 자신과 같이 '정치적으로 뜻이 맞지 않아 관직에서 퇴거하여 농촌에 정착하려는 사대부(閒者)'란 특정계층이었다. 뿐만 아니라 허균이 내건 농업경영의 목표 역시 '閒者가 스스로 농민화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경영'이기보다는, 從僕을 거느리면서 '佃인에게 竝作을 시키는 지주경영'을 바탕으로 한 致富에 중점을 두었다. 이른바 '自耕을 통하여 자급자족을 행하는 소극적인 소농민경영'보다는 종복을 거느리고 '直營地 經營'과 '竝作地를 통한 地主經營'을 병행하자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농업경영을 유통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富를 축적하려는 상업적 營農의 개념으로 농업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입지조건이 좋은 수륙교통의 요지나 物產이 풍부한 평야지대에다 자리를 잡고 致富를 위한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로는 재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그는 전제조건으로 農時를 놓치지 말 것과 재화를 節用하라는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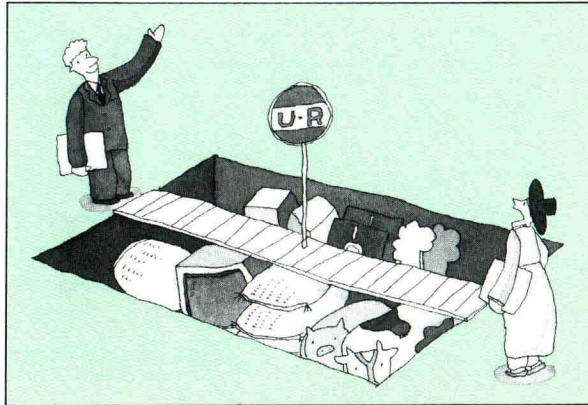
이처럼 허균은 이 농서를 통하여 소경영이 아닌 상업적인 농업에 기반한 대경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재화를 축적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明代의 간행본인 『陶朱公致富奇書』을 底本으로 하여 중국 강남지방의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閒情錄』은 당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의 재건과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된 획기적인 농서였다. 특히 여기에서 제기되는 농업경영 방식도 조선의 전지역에 적용되기보다는 영·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당시의 수륙교통과 유통경제가 잘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거하여 치부를 위한 농업생산 및 농업경영을 하려는 것이었다.

UR협상의 여파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물결이 드세지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상업적 대경영의 육성을 통한 부의 축적을 주장한 『閒情錄』에 대한 깊이있는 천착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정책과 관련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 결코 적지 않다 하겠다. 농림경제

나라경제

1992 **3** 제16호



권두칼럼

전환기적 도전에 대한 應戰의 공동의식
/ 김원기 ·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전국토를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터전으로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황인선 · 서울경제신문 기자 8

특집 UR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

UR협상 최종협정문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우리의 대응 / 김인호 · 경제기획원 14

시장접근 분야 / 조건호 · 재무부 18

섬유 분야 / 추준석 · 상공부 22

농산물 분야 / 조일호 · 농림수산부 26

규범제정 및 투자 분야 / 박영국 · 상공부 31

지적재산권 분야 / 노영욱 · 특허청 36

서비스 분야 / 이윤재 · 경제기획원 42

제도 분야 / 김용규 · 외무부 46

지상중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제언
/ 조 순 ·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50

출입기자코너

새로운 각오와 인식전환을 / 이길용 · 내외경제신문 기자/건설부 54
전문성과 상식을 조화시켜야

/ 정성관 · 매일경제신문 기자/보건사회부 55

이달의 초점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 남상빈 · 종합무역상사협의회 57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제력집중억제 위한 조치
/ 사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61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불가피
/ 금정연 · 재무부 63

농산물수입 직접참여 바람직하지 않아
/ 김영욱 · 농림수산부 65

경제동향

나라안 지난해는 내수진정세 시험, 최근 물가·임금·
고용안정 조짐 / 권오봉 · 경제기획원 67

나라밖 국제유가, 석유사이클상 하강시점
/ 윤동훈 · 산업연구원 72

부시대통령의 '92 연두교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최근 미국의 기술정책동향

/ 박영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6

만평

이원복 · 덕성여대 교수 80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경제정책해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전용부담금제도 / 김선오·농림수산부	84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시책 / 성재동·상공부	88
지역난방의 보급현황과 추진방향 / 유동욱·동력자원부	92
성인병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 안상우·보건사회부	96
시간제근로의 활성화와 근로조건의 보장 / 문형남·노동부	99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추진대책 / 김규선·교통부	104
전파진흥을 위한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 / 이상윤·채신부	107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청사진 / 최석식·과학기술처	110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 / 최주섭·환경처	118
<hr/>	
재언 우리 경제를 다시 생각한다	
‘經濟論理’로 일본에 접근하자 / 박수천·상공부	129
<hr/>	
나라경제 화랑	81

경제수상

바깥을 보는 지혜 / 유득환·상공부	122
다시 한번 뛰어야겠다 / 박진호·과학기술처	124
‘작고 힘없는 나라’ 론 / 최양부·농림수산부	125
선진국의 제도를 통해 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제 / 송형섭·보건사회부	126
집배원 손수운전 우편배달 / 서순조·채신부	127
입장차이와 균형감각 / 조우현·건설부	128
<hr/>	
생활경제정보시리즈 경제정책상담전화 ‘우리의 경제’를 통해 본 궁금증	
세계관련 문의사항 해설 / 오성환·경제기획원	132
<hr/>	
건강한 삶을 위하여	
중년주부들의 체중 조절 / 홍명호·고려의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장	151
<hr/>	
노영하 바둑칼럼	152
<hr/>	
경제부처 동정 정책일지·인사이동 / 편집실	136
<hr/>	
경제부처 발간자료안내 / 편집실	143
<hr/>	
나라경제를 읽고	153
<hr/>	
법적부록	
경제부처의 1992년도 중점추진시책	

전환기적 挑戰에 대한 應戰의 共同意識

金元基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최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선거마저 수차례 치르게 되어 있어 정치여건의 변화가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우리 경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실제도 그렇게 어려우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더욱이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과소비가 팽배해지면서 경제의 바탕이 되는 勤勉節約하는 풍토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하는 의식, 輸入開放의 여파로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 상품의 수입수요를 보고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하는 의식, 輸出競爭力이 급속히 약화되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高賃金 때문에’ ‘技術開發投資 부족 때문에’ ‘근로자의 정성이 부족해서’ 등 원인은 열거되건만 ‘나 때문은 아닌데’ 하는 의식, 대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토록 不動產投機 등 財테크에 몰두하여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하는 의식 등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현상이란 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우리 경제의 제반문제들은 바로 이상과 같은 意識의 歪曲化에서 상당한 根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밖으로부터 東歐社會主義國家에서의 경제개혁, 소련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獨立國家聯合의 창설 및 UR협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의 확립, 세계시장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돌위협 등 여러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지난 4반세기에 걸쳐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제조업의 활력이 쇠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는 가운데 民主化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價値觀의 혼돈마저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政府·企業·家計 등 경제주체의 認識不足으로 문제의 해답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이 좀더 기술개발에 진력해 준다면, 근로자가 좀더 근로의욕을 회복하여 생산성을 높여준다면 하는 생각을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가 보다 지원책을 강화해 준다면, 근로자가 옛날처럼 정성어린 맘을 흘려 준다면 하고 바란다. 이와 달리 근로자와 가계는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불로소득 집단이 경제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왜 高賃金타령이나 하고 있느냐’고 불만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오늘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겨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



은 바로 壓縮成長時代에서 自生的 成長時代로 전환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공동의식의 부족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해답 또한 認識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과거 自由貿易基調下의 수출환경이나 기술 도입이 용이했던 환경, 그리고 개방의 압력을 피할 수 있었던 환경은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고임금·고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생적 성장시대의 요청을 피할 수 없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經濟制度·經濟體質·經濟思考 모두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주체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경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政府는 政策運用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有效競争을 보장하는 市場經濟秩序 확립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왜곡된 價値觀과 倫理觀을 건전하게 이끌어나가는 한편 人的 資源의 保育에 한층 더 힘을 기울여 새로운 기술분업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經濟體質의 先進化를 위해 後進型 加工貿易體制가 先進型 加工貿易體制와 產業體制로 전환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政府役割의 合理性을 적극 도모하여야 하겠다.

둘째, 企業은 성장기조를 자생적 성장으로 변화하여 海外特需 등 외부적 충격이나 정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여러가지 개선에 의한 효율적 성장의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의 官僚主義를 과감히 철폐하고 人本主義의 경영풍토를 조성토록 하여 革新(innovation)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형성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家計와 勤勞者는 흐트러지고 있는 合理性을 회복하여 근면과 절약정신을 되찾고 開放化·國際化에 부응하는 경제행위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資本主義 經濟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價値觀의 再定立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발전해야 가계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투철한 職業觀을 확립함으로써 선진경제체질에 부합하는 勞使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다.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開放化·國際化時代의 흐름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대내적으로 民主化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야만 한다면,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인 도전들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역할의 합리화, 자생적 성장시대의 기업상 구축, 가계와 근로자 의식의 근대화·합리화라는 경제의 소프트웨어부분의 압축성장이 가장 긴요하다고 하겠다.

한 민족의 經濟가 先進經濟로 도약하는 것은 政府나 企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民族 모두의 응축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믿음이 정착될 수만 있다면,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은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진통과정이라 여겨 볼 만도 하다.

전국토를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터전으로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글·황인선/서울경제신문 기자

맛있게 잘 먹고 부드럽게 배설하는 것만큼 유쾌한 일도 드물다.

우리는 평소 옷과 가구·신문지·음식물 등 갖가지 물건들을 사용한 다음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제품을 장만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드시 배출되는 반감지 않은 것이 바로 쓰레기다.

그러나 쏟아지는 각종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종이·연탄재 등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8만4천 가량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폐비닐과 폐유·폐산 등 산업쓰레기도 하루에 6만1천톤씩 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쓰레기를 제때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우리는 쓰레기공해로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날로 폭증하는 쓰레기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에

서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주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환경처의 廢棄物管理局이다.

최근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맑은 공기와 良質의 上水源 공급이며 쓰레기의 위생처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오염과 상수원 수질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을 확충해 왔으나,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온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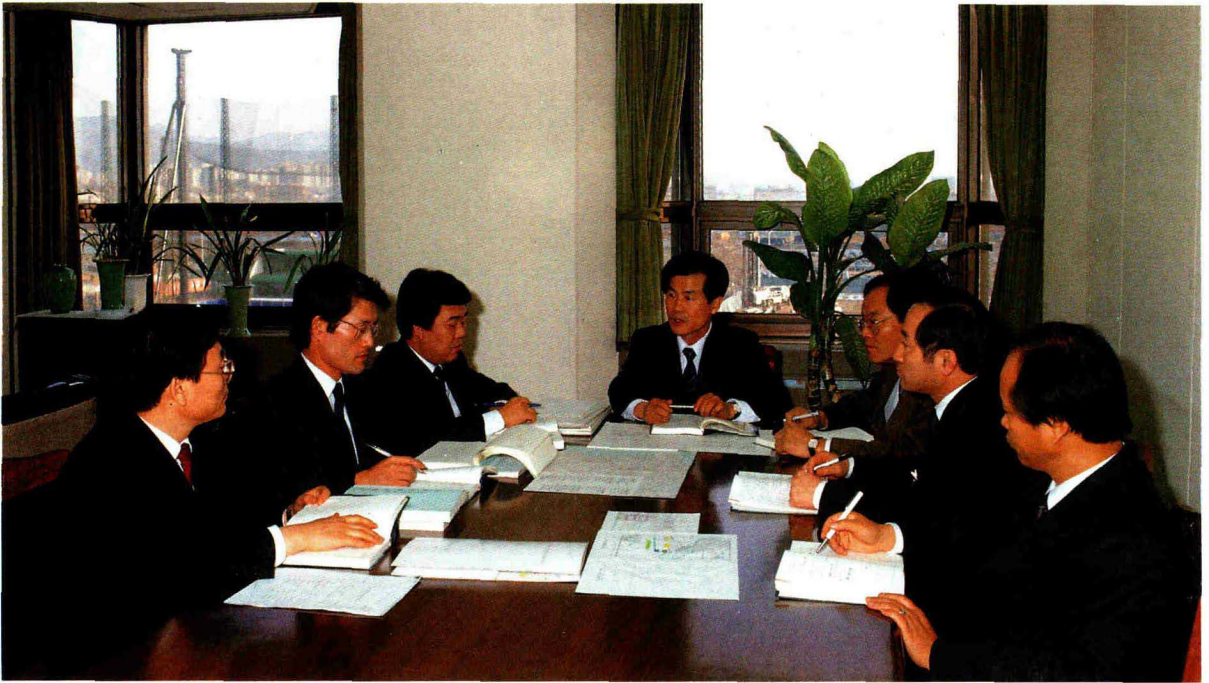
그러나 요즘은 폭증하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문제가 환경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상태이다.

앞으로 이 같은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기관장은 長壽할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短命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처의 폐기물관리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관리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서울의 아파트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시행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지방도시의 경우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책임자 자리는 예전처럼 시쳇말로 ‘물먹는’ 관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유능하고 패기있는 능력자가 기용되는 중요한 자리로 바뀌고 있다.

쓰레기관리정책의 산실인 폐기물관리국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구조직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수질제도과장과 原州 지방환경청장을 역임한 尹瑞成국장이 이끄는 폐기물관리국에는 尹국장외에 1명의 국장급과 6명의 서기관 등이 포진, 불철주야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국장급인 金時平 유독물질관리관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골프장 농약오염문제를 비롯, 1만여종의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들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폐기물관리국의 주무과인 폐기물제도과(과장 安榮載)는 쓰레기관리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각종 법령제정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상공부와 가전제품업계, 타이어 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인내력으로 상대방을 설득, 폐기물처리를 위한 예치금제도를 성사시켜 환경처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켜 놓기도 했다.

일반폐기물과는 기술고시 출신인 崔周燮과장이 이끌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찌꺼기와 연탄재·폐지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감량화시켜 위생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쓰레기를 불연성과 가연성·재활용성으로 나뉘 수거처리하는 쓰레기분리수거제를 도입, 실시중에 있는데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전국 34개 광역매립장 건설문제와 소각처리시설 확충·쓰레기분리수거제도의 조기정착 등이 폐기물관리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다.

가 최대 관건이라 하겠다.

아울러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위생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燒却施設 설치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중요과제이다.

그러나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34개 권역의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은 金浦지역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거주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정폐기물과(과장 高允和)는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쓰레기는 주로 제품생산공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화성사업소의 소각시설

발생량도 하루에 6만1천을 넘고 있는데다 쓰레기의 性狀도 복잡해지고 있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가 무척 어려운 입장이다.

게다가 대기업 등의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공장 자체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낮아 대부분 시설규모와 기술면에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산업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유독물질관리과(과장 李光訓)는 말 그대로 有毒物質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유독물질은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제조·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건강과 주위 환경에 위해성이 큰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조와 수입·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다.

토양보전과(과장 蘇俊燮)는 각종 농작물 생산의 원천인 땅의 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지역에 토양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면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피해우려가 큰 금속광산과 제련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유량을 엄격히 조사토록 하고, 毒性이 높거나 猛毒性인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폐기물재활용과(과장 徐東憲)는 버려진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빈병과 고철·폐지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올해 39개소의 재활용사업소를 증설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제에 대한 對국민홍보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국은 지난해 9월 폐기물처리를 위한 예치금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올해 벽두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8개월이 넘도록 가동을 중단했던 화성산업폐기물처리장을 재가동하는 쾌거를 이룩해냈다.

폐기물처리비의 예치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 차원에서 해당제품 사용 후 폐기물이 되었을 때 회수·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금액의 비율을 사전에 예치한 다음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물론 이번 예치금제도 도입과정에서 환경처가 제시한 대상품목이 다소 줄었고 예치금요율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상공부와 농림수산부·동자부 등 관계부처와 가전업체를 비롯, 주류업체·타이어업체 등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집요하게 협상을 벌인 결과, 가전제품의 텔레비전과 주류의 유리병 등 7개 분야의 17개 품목을 예치금 대상으로 선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자동차 등이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폐차처리문제가 사회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할 경우 국민여론에 힘입어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과 기업·정부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쓰레기처리를 위해 일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

화성사업소의 재가동도 앞으로 환경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분쟁으로 8개월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됐던 화성산업폐기물처리장이 사업주체와 피해

주민간의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지난 1월에 다시 정상가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환경관리공단 산하 華城사업소(소장 尹聖鎭)는 지난 '87년 10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쏟아져나오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산업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t 가량 처리해 왔었다.

그러나 화성사업소가 가동된 후 이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악성폐수가 흘러나와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雨汀面 珠谷里 앞바다의 수산물양식장에 피해를 끼쳐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함께 사업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의 집단항의는 사업소 진입도로를 막고 격렬한 시위로 번져 화성사업소측은 지난해 4월 이후 불가피하게 산업폐기물처리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해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들은 제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공장주변에 산업폐기물을 쌓아놓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관리공단의 車成鎬이사장과 화성사업소 철수대책위원회 윤호선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은 대화로써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 지난 1월 3일부터 화성사업소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재가동에 들어가 하루 평균 50t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측 대표들은 현재 조성완료한 1만2,400평 이상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더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소 수익의 일정금액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고 환경영향조사결과 이전이 불가

**날로 폭증하는 쓰레기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주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환경처의 폐기물관리국이다.**

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조치키로 하는 등 14개항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 기피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시설 설치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타결될 수도 있다는 본보기가 되었다.

이번 화성사업소 사건은 공해피해주민들이 피해보상과 사업소 철수를 요구하며 사업소 진입로를 막고 장기 집단농성을 벌였는데도 정부가 극약처방인 공권력투입을 자제하고 공해피해에 따른 주변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지역발전지원사업을 약속하면서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폐기물관리국은 앞으로도 이 같은 값비싼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적지않은 難題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쓰레기매립지 부지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진중인 전국 34개 광역매립장 건설문제와 소각처리시설 확충·쓰레기분리수거제도의 조기정착 등이 최대의 현안이다.

이 가운데 쓰레기매립장은 부지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인데 반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명목으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따라서 그린벨트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철저한 위생매립시설과 함께 쓰레기매립 후에도 산림등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공약과 그에 따른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매립과 아울러 소각처리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소각처리방법은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감량화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하루 평균 1t의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약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아울러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서울의 아파트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시행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지방도시의 경우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尹瑞成 폐기물관리국장은 이와 관련, “쓰레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특히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과 소각처리시설 확충·쓰레기분리수거제의 조기정착 등 현안을 국민과 기업·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꾸준히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UR협상 最終協定文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우리의 대응

UR은 지난 5년간의 협상노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0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국제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UR은 앞으로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상최대의 의욕적인 多者間 協商임에 틀림없다.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이제 UR은 지난 5년간의 협상노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0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국제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UR은 앞으로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상최대의 의욕적인 多者間 協商임에 틀림없다.

UR協商이 개시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20일 最終協定文案(Draft Final Act)이 제시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제한된 협상력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협상분야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입장반영이 아직 미흡한 분야도 있으나, 또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킨 분야도 적지 않다.

앞으로 UR協商이 현재 잡아놓은 일정대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 제시된 최종협정문안의 상당부분은 UR협상의 결과로서 그 기본적 골격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同 協定文案을 중심으로 그간의 협상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또 앞으로 있을 마무리협상에 대한 방향과 국내대응과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협상진행 상황

'86년 9월 우루과이의 해안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서 세계각국의 각료들이 모여 출범시킨 UR협상은 여덟번째의 GATT 多者間 協商으로서

당초에는 '90년 12월 브뤼셀 閣僚會議을 개최하여 타결한다는 일정으로 협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브뤼셀 각료회의 개최 이전까지 농산물분야의 補助金支給問題 등 상당분야의 주요쟁점이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브뤼셀 각료회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으며 협상은 일단 '91년으로 연기되었다.

'91년에 들어서 GATT에서의 협상추진과 병행하여 GATT 밖에서도 G7 頂上會談의 개최 등 주요 협상참가국간 활발한 막후접촉이 있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농산물 등 일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92년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美國의 대통령선거와 EC 執行委員會의 개편 등으로 인해 UR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9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GATT 던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협상타결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던켈총장은 '91년 9월 각 협상그룹 의장들에게 協定文 草案을 연내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농산물분야부터 잠정안을 작성 제출하였다. 몇 차례의 연기 끝에 각 협상그룹 의장들이 협상분야별 草案을 작성하였으며, 던켈총장은 이를 종합한 최종협정문안을 '91년 12월 貿易協商委員會(TNC)에 제출함으로써 UR은 불완전하나마 비로소 하나의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UR최종협정문안은 본래 협상참가국들의 합의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나 농산물 보조금 감축과 농산물의 關稅化의 범위 등 일부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작성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협상 참가국들은 최종협정문안을 일단 향후협상의 기초로 삼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最終協定文案을 수정 없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정·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지난 1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TNC회의에서 美國·오스트레일리아 등 주로 농산물 수출국들은 미세한 수정만 인정하자고 발언하였으나 EC·日本 등은 상당수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日本·멕시코·캐나다·스위스·이스라엘 등은 농산물분야의 예외 없는 關稅化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 던켈總長은 1월, TNC회의에서 앞으로 동 협정문안을 기초로 이른바 4원(four track) 협상추진방식에 따라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회의참가국들은 대부분 이를 지지하였다. 던켈 GATT사무총장이 제안한 4원 협상방식은 ① 상품분야의 讓許協商(농산물 보조금 감축계획 포함) ② 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 ③ 협정문의 법제화 ④ 마지막 절충(fine tuning)에 대한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④를 제외하고는 ①, ②, ③의 세 가지 트랙별로 協商日程이 제시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던켈총장은 4월 중순까지 이 모든 작업을

완결하자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 最終協定文案

다음으로는 앞으로 마무리협상의 기초가 될 '91년 12월 20일자 최종협정문안을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對外指向의인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경제의 발전은 GATT의 國際自由貿易體制에 기초를 둔 대외무역에 의해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국제무역체제는 일부선진국의 각종 회색조치의 남용 및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등으로 왜곡되어 왔으며, 최근의 EC통합 및 北美自由協定 추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의 확산, 쌍무적인 통상문제 해결방식의 확대 등이 가세하여 점차 우리의 교역여건이 어려워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동 최종협정문안이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 요소를 시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최종협정문안은 그 분량이 500쪽에 가깝고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하며 또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합의도출이라는 어려움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同 協定文案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주요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협정문안에는 우선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93년부터 5년간 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관세를 목표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으므로 關稅無稅化에 따른 부담은 남아 있으나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 비관세조치의 완화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섬유분야에서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섬유교역을 자유화하고 선진수입국의 자의적인 쿼터조정관행도 철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의 섬유수출이 한차원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知的財産權 보호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국제화를 상당수준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방의 부담이 가벼운 반면 기술수출, 해외투자분야 등에서 우리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 분야가 새로운 國際交易秩序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국내제도의 개선의무를 이행하고 앞으로 지속될 동 분야의 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자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GATT規範의 강화도 대체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일방조치와 관련하여 締約國은 반드시 GATT 紛爭解決節次를 준수하고 GATT와 일치하지 않는 국내법의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雙

務的인 통상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GATT체제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있는 조치는 협정발효후 원칙적으로 4년 이내에 철폐토록 되어 있어 철강·신발·전자제품 등 그동안 각종 회색조치에 의해 규제를 받아온 품목의 海外輸出環境이 개선될 것이다. 또 反덤핑 조치발동의 기준을 보다 명료히 설정하여 일부 선진국의 자의적인 반덤핑措置 發動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최종협정문안에는 농산물분야에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관세화가 포함되어 있다. 즉, 농산물분야에서도 農業補助金 지급에 있어 구조조정 보조금이 허용되고 개발도상국 우대조치가 크게 강화되는 등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입장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이른바 예외없는 관세화와 最小市場接近이 동 협정문안에 포함됨으로써 이를 따를 경우 쌀도 '93년부터 국내소비량의 3%를 낮은 세율로 개방하고 나머지 물량도 國內外價格差를 관세화하여 개방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협정문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감으로써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의 입장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만큼 농산물분야에서 국회·농민단체·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

인 나라도 없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GATT관계자나 주요 協商相對國들에게 우리 농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多者間協商에서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일관된 견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설득과 협상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補助金支給과 관련하여서는 최종협정문안이 구조조정 관련 보조금을 허용보조금 범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국내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배려가 요망된다. 緊急輸入制限措置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국가를 선별하여 쿼터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 (Quota Modulation)가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어 小品種·多量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

향후 UR협상이 단켈 GATT 사무총장이 제안한 대로 추진된다면 3월말까지 시장접근(농산물 포함) 및 서비스 讓許協商이 완료되고 최종협정문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과 마지막 절충(fine tuning)도 3월말~4월초까지는 완료된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각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4월중순경에는 TNC 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이 수용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어 각국의 國內批准節次를 추진하게 되고 11~12월중 UR협상결과를 이행할 시점(현재는

1993년 1월 1일 예상)을 결정하는 GATT총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현재의 시간표이다.

이와 같은 협상일정은 美國과 EC가 농산물분야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기타국가들이 협상대세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美國과 EC 등의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따라서 UR협상 조기타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우선 美國은 UR최종협정문안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市場接近의 협상결과를 보고 나서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EC는 농산물분야 협정문의 수정을 목표로 향후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분야의 國別履行計劃書에 관한 협상에서 이러한 입장의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요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UR협상은 讓許協商과 마지막 절충이 마무리되는 3월 하순~4월초에 가서야 그 타결 여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전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UR협상의 타결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政府는 현재 제시된 일정에 따라 협상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다.

시장접근분야 讓許協商에서는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에 노력하고 關稅無稅化 및 關稅調和協商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 양허협상과 관련해서는 수정양허표의 작성과 함께 우리의 개방계획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마지막 절충작업에 대비하여 주요 협상참가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마지막 절충을 위한 대안과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마무리 협상에 대해 면밀히 대처해 나가는 것 못지 않게 정부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UR협상의 타결에 대비한 UR관련 국내보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91년 5월 대외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UR관련 국내후속대책으로 16개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UR관련 국내후속대책은 UR타결시 국내시장개방이 확대될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앞으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선될 GATT의 貿易關聯規範에 일치하도록 국내무역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제, 그리고 GATT의 기능강화에 대비하여 국내의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내제도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長短期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UR협상을 우리 경제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우리 경제는 賦存資源이 빈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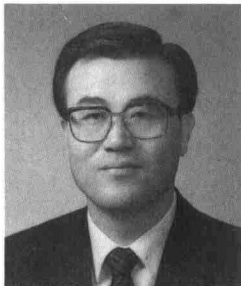
때문에 앞으로도 대외로부터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경쟁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본·기술뿐만 아니라 制度·慣行問題도 아울러 다루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UR협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공산품 교역뿐만 아니라, 기술(지적재산권)·서비스 등 분야에서 개방관련 국내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各國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제도를 '89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무역관련제도의 명료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외적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은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단계적으로 開放化를 추진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쌍무적인 협상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UR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방화·무역관련 국내제도의 개선 등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국제화·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UR協商 결과를 우리 경제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필필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분야의 의정서는 여타분야의 의정서가 해당분야의 무역자유화, 시장개방, 규범적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UR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讓許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조건호
재무부 관세국장

UR 협상 참여국들은 금년 1월 1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제시한 의정서 초안을 토대로 향후 UR협상을 4원협상전략(four-track approach)에 따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장접근분야(Market Access)는 그 중 하나로서 앞으로 집중적인 讓許協商이 이루어질 것이며 농산물까지도 이 분야에 포함되었다.

먼저 시장접근분야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어느 나라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는 교역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Non-Tariff Measures) 장벽의 높낮이가 문제가 된다. 비관세장벽은 통관절차·쿼터제도·수입품 검사제도·원산지 증명제도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이들을 수입규제적인 수단으로 남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新保護貿易主義 경향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도 적지 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UR에서 시장접근분야란 당초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UR협상체계가 지난해에 7개 분야로 축소조정되면서 당초의 관세·비관세·천연자원·열대산품 등 네가지 협상그룹이 통합된 분야를 말한다. 開途國의 관심 대상인 열대산품, 천연자원분야는 관세·비관세로 문제점이 압축되므로 이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의정서의 내용 및 특징

시장접근분야의 의정서는 여타분

야의 의정서가 해당분야의 무역자유화, 시장개방, 규범적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UR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讓許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도 시장접근분야 의정서가 아니라 'GATT에 대한 UR 의정서 (UR Protocol to GATT)'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시장접근분야 의정서 내용이 '79년에 타결된 동경라운드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비관세조치의 양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반해 이를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표 1) 시장접근분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

주요 사항	내 용
관세인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 1월 1일부터 매년 동일비율로 관세를 인하하여 '97년 1월 1일까지 관세인하 목표를 달성토록 함. • 관세인하 이행기간에 대한 예외허용
비관세조치 양허의 수정·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조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 GATT 제28조(양허의 수정) 및 관련협상 절차 적용 • 이해당사국과의 사전합의·보상 필요
부속서	■ 관세 및 비관세 양허표를 의정서에 부속서로 첨부

(표 2) 분야별 접근방법 주요내용

제안명	주요 내용
미국의 무세화 제안('90.10)	철강·전자·건설장비·비철금속·종이·목재·의약품·의료기기·수산물(9개분야)의 관세를 분야에 따라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회
EC의 관세조화 제안('90.12)	섬유·신발·석유화학·플라스틱의 관세를 낮은 수준으로 인하. 섬유의 경우 선·개도국간에 인하목표 세율에 차이를 둠.
화학제품 관세조화 제안('91.10)	미국·EC·캐나다가 화학제품(28~39류)에 대한 관세를 분야에 따라 無稅化 내지 5.5% 내지 6.5%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제안

다. 의정서에 비관세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심공간에 상호 합의된 비관세조치에 관한 사항을 양허표에 揭記하게 되었다.

의정서의 두번째 특징은 관세인하 이행기간이 동경라운드에서는 8년('80~'87)이었는데 비하여 UR에서는 5년('93~'97)으로 단축하여 합의된 관세인하목표를 조속히 인함으로써 교역증진 효과를 조기에 실현해 보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관세인하 이행기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은 最貧國에 대한 장기이행기간의 허용,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배려, 현재 논의중에 있는 無稅化 및 關稅調和 방안에서 관세인하 이행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각국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설정할 수는 없고 다자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예외적용 품목이 결정될 것이다.

시장접근분야 의정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국제교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전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상황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의 향후 협상전망과 그 대응방안을 언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시장접근분야 진행상황을 관세 부문과 비관세조치 부문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세 부문

시장접근분야의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관세에 있어서는 '88년 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UR에서 달성해야 할 관세인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몬트리올 관세인하 목표란 각국이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86년 9월 관세율 기준으로 33%를 인하하는 것이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많은 개발도상국은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푼타 델 에스테 선언문에 그들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 선진국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울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7월 공산품, 같은해 11월 수산물에 대하여 몬트리올 목표를 달성한 관세인하 계획(Initial Reduction Plan)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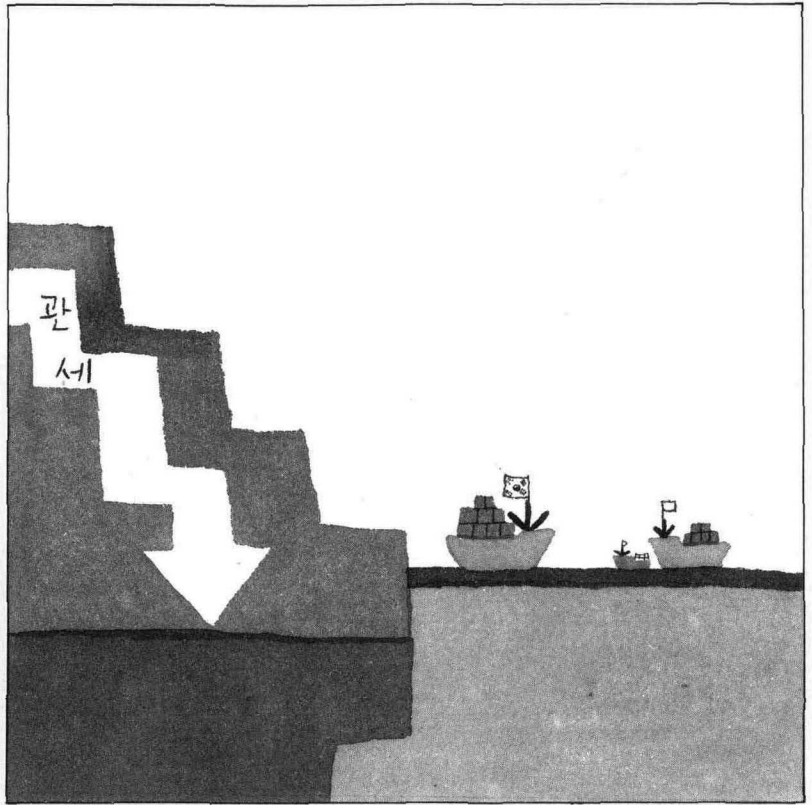
한 바 있다.

'90년 12월 브뤼셀 회의를 전후하여 특정분야의 관세를 없애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제안외에 '91년 12월 미국의 섬유 관세조화 제안, 캐나다의 수산물 관세조화 제안, 일본의 화학제품·비철금속 및 전자 관세조화 제안 등이 있다. 이러한 분야별 접근방법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면 제안국이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교역확대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며, 미국의 무세화제안 이후 제시된 EC·일본의 분야별 제안은 미국에 대한 협상 대응카드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위와 같은 분야별 제안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병행하여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위한 양자간 협상도 빈번하였다. 우리나라와 상호 관심품목을 교환한 국가는 20여개국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는 분야별 협상이나 양자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비관세 부문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요 교역상대국간에 Request/Offer 형식으로 양자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비관세조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분야는 상대국에 대하여 우리 제도의 자세한 설명으로 납득이 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국이 우리의 수입허가제도·국내조세제도·검사제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3개국에 비관세조치 완화·철폐에 대한 개방요구서(Request List)를 제출하였고 12개국으로부터 개방요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책

관세 협상

향후 관세협상은 무세화·관세조화 제안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제한된 협상일정으로 보아 기대하는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지만 각국이 소기의 협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은 분명하다.

먼저 無稅化 協商에 대하여 살펴보면 EC는 의약품 및 철강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타결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분야에는 전면참여가 가능하나 기타분야에는 주요국간에 무세화가 합의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부분참여할 계획이다.

關稅調和 협상을 주요제안별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C 및 미국의 섬유 관세조화 제안은 섬유가 우리의 수출주종상품인 점을 감안, 미국의 제안보다 진취적인 EC의 제안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의 제안은 선진국의 高關稅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3국 공동의 화학제품 관세 조화 제안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의 경우 동제안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캐나다의 수산물 관세조화 제안과 일본의 비철금속·전자·화학제품 관세조화 제안이 지난해 12월 제시되었으나 이 분야도 미국·EC 등 주요국의 협상태도에 그 타결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다자간 협상은 주요국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짧은 협상기간내에 타결이 어려운 점이 있는바, 상호 관심국간에 주요 교역품 위주로 관세를 양허하는 양자간 협상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자협상에 있어서 讓許均衡,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應能負擔原則, 고관세 유지분야의 우선적 관세인하 등 세가지 기본원칙하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비관세 협상

비관세조치도 UR협상에서부터는 관세와 함께 의정서에 부속하는 양허표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향후 협상은 협상상대국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비관세조치를 철폐·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해당국의 양허표에 포함시키기 위한 각국의 협상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해당 비관세조치의 양허를 명료하게 양허표에 揭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양자협상에 있어서 讓許均衡,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應能負擔原則, 고관세 유지분야의 우선적 관세인하 등 세가지 기본원칙하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비관세조치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해당국가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양허표에 향후 상호 분쟁의 소지가 없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揭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대국이 부당한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의 철폐·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상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장접근분야 협상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UR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미국 등으로부터 쌍무적인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세계경제의 불확화가 심화되어 불력에 가입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선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 강화 및 개도국의 개방화 지연 등으로 우리에

게 별로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UR 타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시장접근 분야에 국한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관세의 경우 우리의 현행 관세율 수준이 UR관세인하 기점인 '86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관세인하목표율인 33%를 달성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추가적인 관세인하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므로 UR 타결로 교역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관세조치 분야는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양허교환이 없어 비관세조치 양허에 따른 득실분석이 어려우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없는 사항을 양허해 주고 상대방의 수입규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양허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비관세조치 분야도 UR 타결로 불리할 것은 없다고 하겠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방안이 예외없는 관세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덴켈 議定書대로 추진된다면 농업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우리의 무역규모나 경제발전 수준이 상당하므로 주요 교역국이 雙務的인 압력을 가해올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UR협상결과를 교역증진과 우리 경제가 더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개방에 따른 부담이 있는 분야는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섬유 분야

섬유분야의 공식협상 목표는 현재의 多者間섬유협정을 철폐하고 GATT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섬유교역 체제를 지탱해온 섬유교역 질서를 해체하고, 섬유교역에 GATT의 자유경쟁원칙을 도입하여 섬유교역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90년 기준으로 약 4,2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의 섬유교역은 一般工産品이면서도 유일하게 GATT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多者間섬유협정(MFA: Multi-Fibre Arrangement)이라 불리는 차별적인 規制協定에 의해 '74년 1월 이래 규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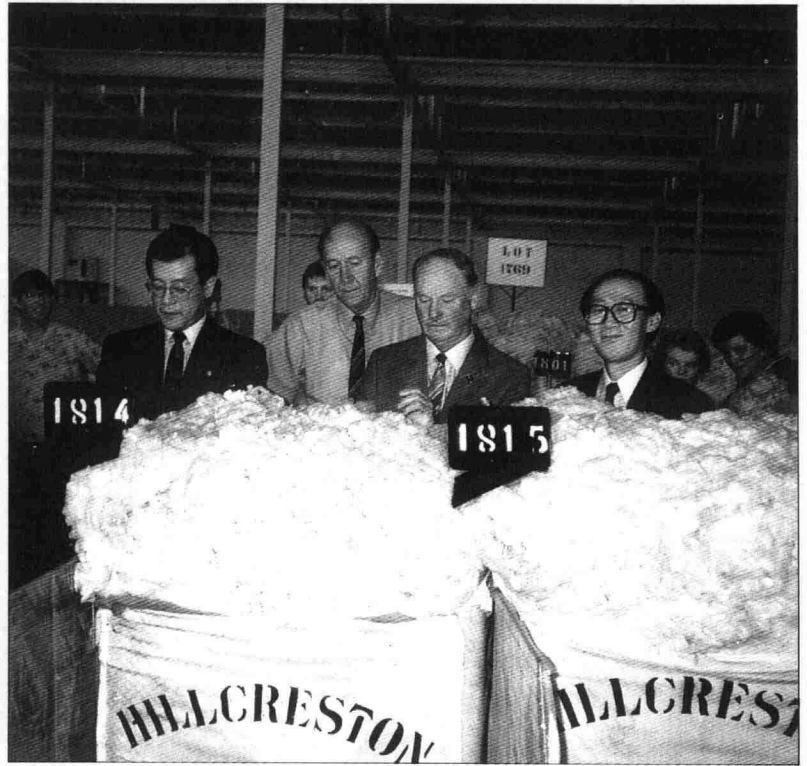
세계 섬유교역은 지난 '61년 7월 면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1년간의 잠정협정인 단기면직물협정을 효시로 하여 '73년까지 12년간 연장·시행되어온 장기면직물협정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는 '64년 12월에 장기면직물협정에 28번째로 가입하고 '65년 1월부터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았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조섬유의 생산과 교역이 증대하여 면직물뿐만 아니라 모직물·인조합섬 섬유까지 포함되는 전반적인 섬유류 交易規範이 필요하게 되자 선진국들은 세계 섬유교역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있는 교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GATT체제에서 이탈한 포괄적인 규제협정인 多者間纖維協定, 즉 MF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MFA로 지칭되는 '섬유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Arrangement Regarding Int'l Trade in Textiles)'이 '74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었으며 이후 계속 연장되어 MFA I('74년 1월~'77년 12월), MFA II('77년 1월~'81년 12월), MFA III('81년 1월~'86년 7월) 및 MFA IV('86년 8월~'91년 7월)를 거쳐 작년 7월 MFA IV의 단순 연장까지 총 4번의 연장을 거치면서 GATT체제 밖에서 세계 섬유교역을 규제해오고 있다.

수입선진국들은 MFA협정에 의해 GATT로부터 예외인정을 받아 GATT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수입수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MFA에 근거하여 미국·EC·캐나다 등 선진 7개국과 兩者쿼터協定을 체결하여 현재 전체 섬유수출의 30% 정도가 수량 규제하에 수출되고 있다.

협상의 배경

이와 같이 길게는 지난 '61년부터 30여년간, 짧게는 지난 '74년부터 20년 가까이 규제를 받아온 섬유교역은 '86년 9월 GATT의 여덟번째 多者間貿易自由化 協商인 UR협상의 15개 협상분야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그동안 GATT의 '의붓자식'으로 취급되어온 MFA를 철폐하고 GATT로 복귀시켜 섬유교역도 일반공산품과 같이 GATT의 제반 규정과 원칙을 적용케 하는 협상을 지난 5년여 동안 전개해온 것이다.

'86년 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합의된 섬유분야의 공식협상 목표는 '강화된 GATT규정 및 원칙에 기초하여 섬유교역을 궁극적으로 GATT로 복귀시킴으로써 자유화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MFA를 철폐하고 GATT로 복귀시키는 방법(Modality)을 도출함으로써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섬유교역 체제를 지탱해온 섬유교역 질서를 해체하고, 섬유교역에 있어서 GATT의 자유경쟁원칙을 도입하여 섬유교역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 동안 현 MFA에 의해 유지



되어온 쿼터체제에 익숙해져 외부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던 섬유교역을 GATT의 자유무역 체제로 급격히 복귀시킬 경우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인 GATT 복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며, 이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그리고 개도국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것이다.

최종협정문안의 주요 내용

이번 UR협상을 통해 도출한 점진적인 MFA 철폐 및 GATT 복귀 방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 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품목을 단계별로 GATT로 복귀시키고(GATT

복귀율), 일단 GATT로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GATT의 제반 규정과 원칙을 적용하여 GATT를 벗어난 여하한 형태의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없게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이같이 GATT 복귀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므로 복귀 과정에서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연증가율을 통한 많은 쿼터량을 인정해 주어 자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GATT 복귀의 기본 골격하에 최종협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복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TT 복귀에 소요되는 時限

GATT 복귀에 소요되는 총시한은 '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으로서, 이를 3단계

로 나누어 1단계는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단계는 '96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마지막 3단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는 MFA가 완전 철폐되고 GATT 복귀가 완료되는 것이다.

품목의 비율

상기 단계별로 GATT로 복귀되는 품목의 비율로서, 1단계에는 協定附屬書에 명시된 대상품목의 '90년 총수입량의 12%에 해당되는 품목을 GATT로 복귀시키고, 2단계에는 17%, 3단계에는 18%를 각각 복귀시키는 한편, 이와 별도로 1단계 이전에 부속서상에 명시된 대상품목의 '90년 수입량의 4%에 해당되는 품목을 추가로 복귀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의 GATT 복귀기간 동안 부속서상의 총섬유류 규제 대상품목 중 51%에 해당되는 품목을 복귀시키고, 나머지 49%에 해당되는 품목은 2003년 1월 1일자로 GATT로 복귀시키게 된다.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한 조치 복귀기간중 복귀되지 않고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MFA에 의거한 雙務協定上에 인정된 각 규제 품목별 연 증가율을 기초로 하여, 현 증가율에 추가로 현 증가율의 16%, 25%, 27%를 각각 단계별로 매년 증가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쿼터수준의 결정

상기 年增加率을 적용할 기초가

되는 쿼터수준을 정하는 문제로서, 그동안 선진 수입국과 일부 개도국들은 현 쌍무협정상의 쿼터량을 무시하고 과거 3년간 또는 1년간의 수출실적을 기본 쿼터 수준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나라를 비롯 홍콩·중국 등 상대적으로 현 쌍무협정상 다량의 쿼터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의 쿼터물량을 기초로 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협정안에는 현 MFA하의 섬유교역 질서를 최대한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쿼터량을 기초 수준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상호합의' 조항의 삭제

이번 최종협정안 내용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중국 등 소위 섬유 주종 수출국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협상에 임했던 쟁점으로 소위 '상호합의'(different mix)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미국·EC 등 선진수입국과 일부 개도국이 강하게 주장했던 조항으로서, 협정기간중 輸出·輸入國이 상호간에 합의할 경우에는 협정상의 기본 쿼터량과 年增加率, 융통성 등을 협정안 내용과 다르게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우리를 비롯하여 홍콩 등 섬유 주종 輸出國들은 동 조항의 삭제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것은 과거 MFA가 연장되어 오면서 소위 '합리적 이탈(reasonable departure)'이라든지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라는 규정 등을 통해 주종 공급국들은 쿼터량을 삭감당하고 불합리하게 낮은 연증가율을 적용받아 온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합의 조항이 선진수입국이 상호 합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쿼터량을 삭감하는 데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협상 노력의 결과 이번 최종협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한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여건의 강화

10년의 복귀기간 동안 단계별로 GATT로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경우 GATT상의 정당한 권리인 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발동하게 되는 것인 데 반해, 복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야기시켰을 경우 GATT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긴급수입제한조치(소위 GATT 복귀시까지 적용할 잠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발동조건과 기준 등을 현 MFA상의 긴급수입제한 규정보다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發動要件이 강화되었다. 즉 이 같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시 규제수준은 과거 3년간이 아닌 1년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했고, 연증가율은 6% 이상 보장토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은 先進輸入國뿐만 아니라 수출개도국들도 가능토록 되었다.

GATT 복귀 혜택의 제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종 협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GATT규범 및 원칙의 강화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GATT규범 및 원칙의 강화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번 협상을 출범시킨 우루과이 閣僚宣言에 포함된 섬유협상의 목표인 것이다. 즉 선진국은 MFA를 철폐하여 섬유교역을 GATT체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번 UR협상을 통하여 GATT의 규범과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섬유교역 환경이 마련돼야 GATT로 복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하여 特定國이 GATT상의 제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동 국가에 대해서는 GATT 복귀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최종 협정안에는 GATT상의 제반 의무로 섬유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통관 및 수입허가 절차의 간소화, 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의무이행 및 知的財産權 보호를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섬유교역 조건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纖維監視機構 (Textile Monitoring Body)의 검토 및 권고를 거쳐 GATT이사회에서 동 국가에 대해 협정상 인정된 연중 가을의 혜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대응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섬유에 대한 최종협정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EC 등 선진수입국이 다소 양보한 반면, 수출개도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EC 등 선진 수입국이 自國의 의회 및 섬유업계의 강한 반발에

**섬유에 대한 최종협정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EC 등
선진수입국이 다소 양보한 반면,
수출개도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 불구하고, 수출개도국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한 협정안에 잠정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금번 섬유협상이 과거 MFA 연장 협상과는 달리 UR의 15개 협상분야 중의 한 분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미국·EC 등 선진 수입국들은 UR협상 분야 중 농산물을 비롯하여 서비스·투자·知的財産權 등 自國으로서는 중요한 협상 분야가 많고 이들 분야에서의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전체 개도국의 최대 관심분야인 섬유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MFA 규제를 받아오는 동안 쿼터량으로 인해 수출할 수 있는 한도가 묶여 있어, 더 이상의 수출 증대가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 MFA 쿼터로 인해 안정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피해 제값으로 수출할 수 있는 등 혜택을 입는 측면도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우리의 수출시장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우기 MFA 규제로 인해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반사적인 혜택

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 쿼터로 세부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 수는 미국시장에서 64개 품목, EC시장에서 49개 품목에 달하는 데 반해, 後發開途國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시장에서 19개, EC시장에서 4개, 말레이시아는 미국 시장에서 28개, EC시장에서 6개, 파키스탄은 미국 시장에서 25개, EC시장에서 18개를 규제받고 있어, 우리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품목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금번 MFA 규제의 점진적인 철폐로 인한 자유화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쿼터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한 우리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촉진하는 데는 불리한 역효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UR 섬유협상을 계기로 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앞으로의 섬유교역 자유화에 따른 경쟁체제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를 위해 우리 섬유산업의 構造調整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번 섬유협상 과정에서 섬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는 10년간의 충분한 GATT 복귀의 잠정기간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쿼터 규제라는 온실 속에 안주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우리 섬유산업의 수출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필]

UR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

農産物 분야

UR 농산물협상은 '91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내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미국·EC 등 주요 협상국간의 대립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결국은 해를 넘겨 '92년으로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총장관

UR 농산물협상은 '91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연내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미국·EC 등 주요 협상국간의 대립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결국은 해를 넘겨 '92년으로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대표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서로 최선을 다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 타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끝내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 조차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91년 11월 9일, 美·EC 頂上會談에서 양측은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그것은 표면상의 움직임에 불과했고, 미국과 EC의 농산물교역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푼타 델 에스테 宣言'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91년 하반기까지의 진척상황

미국과 EC는 농업에 대한 국내지원을 줄여 나가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천방법에 있어서 미국이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반면에 EC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C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역대 모

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價格支持를 해주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재정부담이 증가되어 고민해 왔으며, UR협상을 계기로 그동안 지나치게 팽창해온 가격지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EC는 공동농업정책의 改革案 내용이 UR농산물협상 속에 모두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출보조물량은 미국의 주장만큼 급격하게 줄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태국·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을 등에 업고, 당초에 내세웠던 의욕적인 농산물교역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예외 없는 關稅化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캐나다·멕시코·스위스·이스라엘 등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14개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 또는 개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내부적으로는 각국의 농업여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은 지금까지 GATT에서 예외로 취급되어온 농산물분야를 일시에 GATT체제에 일치시키는 결과를 유도하여 수입국의 농업생산기반을 약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농산물분야는 올해부터 시장접근그룹에 통합되었으나 3월 1일까지 國別履行計劃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2월중에 열리는 양자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정초안(Draft Final Act)의 제시배경

이처럼 농산물 교역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간의 기본적인 인식과 견해차가 대립되는 상황은 계속되어 왔으며, 집중적인 비공식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서로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수준 이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美·EC 정상회담 이후 양측간의 견해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실무적인 접촉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협상은 다시 한 걸음 후퇴한 셈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GATT 總長은 회의를 계속해도 견해차가 좁혀질 전망이 없고, 아무런 결과 없이 협상을 끝낼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비록 주요국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最終協定草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비공식 석상에서 밝힌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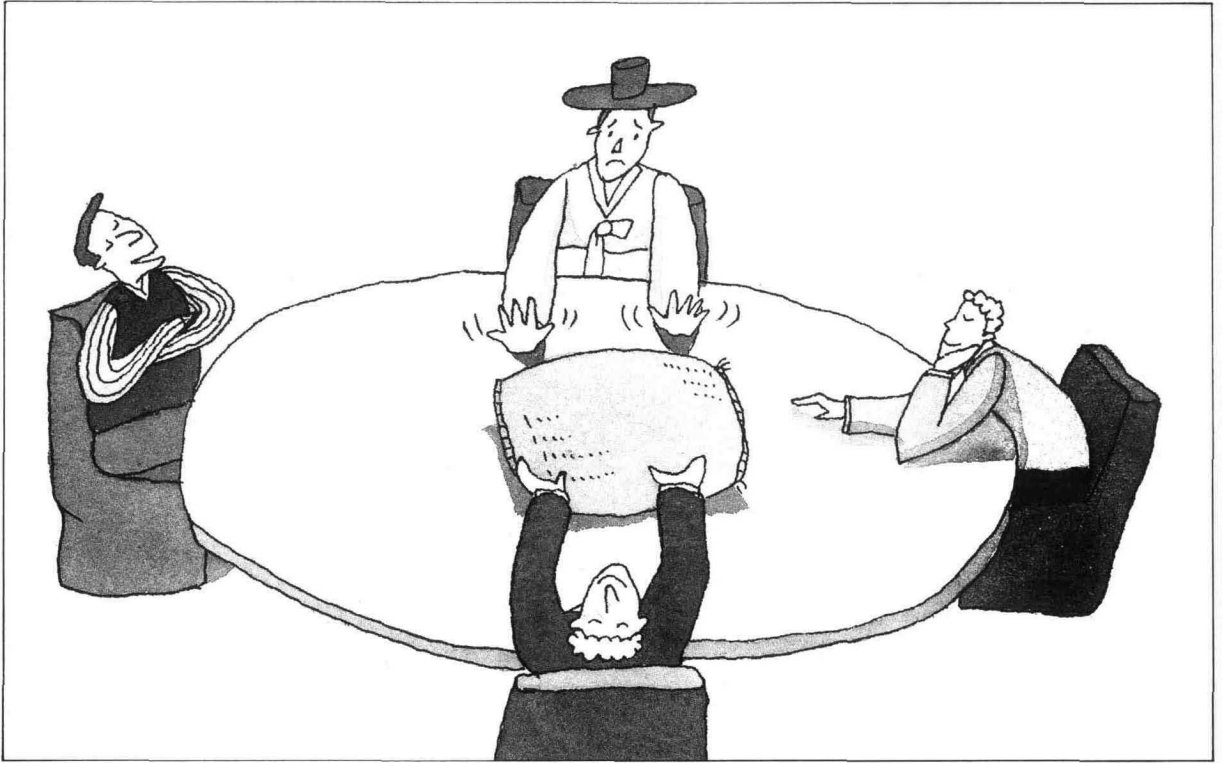
'91년 12월 20일 개최된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總長은 협정초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각국은 이 협정초안을 검토하여 '92년 1월 13일 회의에서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른 분야에서는 내용이 대체로 합의를 이룬 것이나, 농산물분야는 상당 부분이 總長 책임하에 작성되었고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보조금 감축폭·이행기간·기준연도·개발도상국 우대 등의 숫자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협상 주요국간의 합의 없이 초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나 EC가 어떠한 의도에서 總長의 이와 같은 시도를 묵인 또는 양해해 주었는지에 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왜냐하면 總長이 이들의 양해 없이 독자적인 초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협상타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시도가 되어 協商主導國들이 큰 책임 없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퇴로만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협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협정초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91년 12월 20일 협정초안이 제시된 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EC이다. EC는 '91년 12월 23일 일반 각료이사회에서 EC의 요구사항이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고,



이러한 입장을 거듭해서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현재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출보조 등에서 EC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EC는 농산물초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현재대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해 域內國家들 사이의 이견조정조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92년말의 선거를 앞두고 UR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시켰다는 가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시行政府는 협정초안 제시 이전에는 EC와의 兩者協議가 벽에 부딪치자 대단히 실망스런 분위기였으나, 협정초안이 제시되자 이를 기본적으로 향후 협상

의 기초로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산물분야에서는 수출보조감축 등 보조금감축이 충분치 못하다는 우려와 함께 협정초안의 내용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한계이며,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월 9일 열린 下院農業委員會(House Agricultural Committee)에서 14개 생산자단체 중 북미 곡물수출협회를 제외한 13개 단체가 협정초안의 일부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협정초안에 따라 모든 품목을 관세화할 경우 미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웨이버(waiver) 품목에 대한 수입통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생산자들도 協定草案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행정부는 표면상으

로는 협정초안을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업계·의회 등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본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워낙 거세고, 또한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막강한 경제력에 비해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 적극적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미국과 EC간의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주시하면서 조용히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태국·브라질 등 케언즈그룹은 협정초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그 기본정신은 농산물교역을 자유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협정초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은 협정초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EC와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한 국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의 과제는 이러한 반대세력들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협정초안의 내용

시장개방 분야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8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상당치(Tariffication Equivalence)는 '86~'88년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계산하여 '93~'99년 기간동안 36% 감축하고, 모든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양허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현수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그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도 처음 연도에 국내소비량 3%를 기본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이를 5%까지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다.

관세상당치가 계산되는 품목은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든 품목들로서 국내외 가격차를 기초로 관세상당치가 계산된다.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감축방법에는 종전보다 용

**우리는 그동안 쌀 등
기초식량에 관해서는 관세화할 수
없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草案에서는 품목별 감축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품종에 차이가 있거나 그외 필요시 관세상당치를 利害關係國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긴급피해구제제도는 수입가격이 급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상당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에서는 수량제한 조치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발동요건·시기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내보조 분야

국내보조정책은 허용대상정책과 감축대상정책으로 분류하여 허용대상정책은 협상타결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고, 감축대상정책은 향후 지원수준을 줄여나가야 하며, 감축이행수단으로는 '86~'88년 국내

외 가격차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부부문 총량보조측정장치(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사용하며, '93~'99년 기간 동안 이를 20% 감축하도록 하였다.

허용대상정책은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는 감축대상정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허용정책은 ① 생산자에 대한 價格支持 효과가 없어야 하며 ② 정책의 재원이 소비자들로부터 이전된 것이 아닌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이어야 하고 ③ 이행기간 이후의 농업생산량 및 생산구조 등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AMS는 주요 품목별로 계산되는데 해당품목에 대한 개별 보조를 측정하기 힘든 品目不特定事業은 한데 묶어 별도로 품목불특정 AMS로 계산하는데, AMS는 정부부문 시장가격 지지·감축대상 직접보조·기타 감축대상 지원으로 구성되며, 시장가격지지는 '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정부 支持物量을 곱해 계산하고, 감축대상 직접보조와 기타 감축대상지원은 재정지출 또는 국내외 가격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AMS가 생산액의 5% 이하일 때는 보조비중이 미미하므로 감축의무가 면제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만 감축의무가 주어진다.

수출보조 분야

품목별로 '86~'90년을 기준으로 감축대상 수출보조를 '93~'99년 기간 동안 물량은 24%, 금액은 36% 감축해 나가며, 수출보조 감축대상 품목은 곡물·낙농품·육류·과채류·담배·면화 등 22개 品目群

이다. 식량원조의 명목으로 주는 우회적인 수출보조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출보조는 제한하고 있다.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종류로는, ① 수출과 관련된 직접보조 ② 정부 및 정부 이행기간에 의한 低價輸出 ③ 정부재정에 의한 수출보조 ④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 ⑤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운송비 지원 ⑥ 가공품에 포함된 원료농산물의 수출보조 등이 있다.

개도국 우대

開途國이 선진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으므로 선진국보다 낮은 감축률 및 이행기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감축률은 선진국의 3분의 2까지, 이행기간은 최대한 10년까지(선진국은 7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보조 허용대상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적인 투자보조, 생산자재에 대한 보조, 마약재배에 대한 作目轉

換을 허용정책으로 인정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과 국내운송비 지원에 대한 감축의무를 면제해 주며, 最貧開途國에 대해서는 모든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91년 1월 13일 무역협상위원회에서 GATT 던켈사무총장은 앞으로 1~2월 중에 시장접근분야 양자협상을 진행시키고, '91년 12월 20일에 제시한 협정초안의 法律文書化 작업을 추진하며,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협정초안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 4월 중순까지는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던켈총장의 전략을 대부분의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수긍하였으나, 근본적인 합의는 아직도 안된 상태이므로 과연 올해 4월까지 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던켈總長은 되도록이면 협정초안 수정을 극히 제한하고 현재 상태대로 협상을 종결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EC의 반대,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일본·캐나다 등 국가들의 동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분야는 올해부터 시장접근 그룹에 통합되었으나 3월 1일까지 國別履行計劃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2월중에 열리는 양자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국별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협정초안의 수정·보완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자협상에 곧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며, 일단 국별이행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그동안 쌀 등 기초식량에 관해서는 관세화할 수 없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또한 우리는 우리 농업의 상대적 낙후성, 규모의 영세성에 비추어 開途國優待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연도도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진국과는 달리 '86~'88년이 아닌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향후 협정초안 수정·보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UR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

규범제정 및 투자분야

규범제정 및 투자분야에 대한 협정안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 향후 세계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박영국
상공부 국제협력담당관

戰後 세계무역 확대와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온 GATT규범은 그동안 7차에 걸친 多者間貿易協商(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거치면서 보완·발전되어 왔으나 '80년대초 제2차 석유과동에서 비롯된 景氣不況을 겪으면서 선진국의 보호주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자 이같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해온 GATT규범은 그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은 자국의 편의에 의해 GATT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출자유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소위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를 만연시키는 가 하면, 反덤핑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反덤핑 관세를 일종의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남용했으며, 또한 각국은 斜陽産業의 보호차원을 넘어 자국의 첨단 산업기술을 포함한 전략 수출산업의 보호·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GATT의 무차별적인 互惠主義와는 거리가 먼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던 것이다.

협상의 배경

이에 따라 과거의 多者間協商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출범한 금번 UR협상에서는 이와 같은 GATT 체제하의 貿易規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범제정 협상

에 포함된 중요한 협상분야로는 '79년 마무리된 동경라운드 협상을 통해 체결된 9개 협정 중 反덤핑·보조금/상계관세·기술장벽, 수입허가절차 협정이 있고, GATT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규정(19조) 및 GATT條文의 개정협상분야 등이 있으며 성격상 다소 다르지만 협상 편의상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무역관련 투자분야가 있다.

규범제정 협상의 각 분야는 그 성격상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고 또한 우리로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분야별 최종 협정문안 내용

反덤핑 협정

우리가 덩핑협상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하는 것은 과거 미국·EC 등 선진수입국의 反덤핑 관세부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고 본다.

덤핑협상은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 등 소위 先發開途國들과 일본·北區·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도 UR 전체 협상분야 중 가장 중요한 협상분야의 하나로서 적극 입해왔던 분야이며 또한 이에 맞서 미국·EC 등 선진 수입국도 강경하게 自國 입장을 방어해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反덤핑 협상의 핵심은 反덤핑협정을 최대한 강화하여 反덤핑관세 발

동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수출국 입장과 이에 맞서 현 협정의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관행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미국·EC간의 입장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최종 문안은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보아 수출국의 입장이 그런대로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기존 규범이 강화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출국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장기적인 시장전락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전에는 덩핑판정시 이 같은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최종 문안에는 이러한 판매가격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둘째, 덩핑판정시에는 수출가격과 수출국의 국내판매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국내판매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수출가격을 생산비·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한 가격(소위 '구성가격')과 비교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종전에는 관리비나 이윤 등을 산정할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이윤과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을 조사당국이 임의로 설정하여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덩핑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最終文案은 실제자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및 이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

출자의 동종상품의 정상이윤이나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여타 수출자의 正常利潤의 가중평균 또는 수출국내 동일부류제품 생산자의 대표적 이윤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과거에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한 비용 및 이윤에 근거하여 내리는 덩핑판정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덩핑판정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국내가격은 加重平均을, 수출가격은 개별 거래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과도한 덩핑마진율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종문안은 양 가격의 비교를 가중평균으로 하든지 또는 개별 거래가격으로 하든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출가격의 패턴이 구매자·지역·기간별로 상당히 다른 경우에 한할 때에만 국내가격은 가중평균을, 수출가격은 개별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넷째, 덩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내 국내업체의 提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미국·EC 등 수입국은 제소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동 제소를 지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최종문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를 조사한 이후에 덩핑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덩핑조사시 특정국 특정품목의 덩핑마진율이나 수입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을 경우에는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덩핑조사를 종결토록 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덤핑마진율이 0.5%, EC는 시장점유율이 1%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이번 최종 협정문안에는 덤핑마진율 2%, 시장점유율 1%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중소수출업체가 소규모 물량을 수출하는 경우나 덤핑마진이 미미할 경우에는 덤핑관세 부과로부터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현재 미국은 소위 덤핑관세의 消滅條項 (sunset clause)이라는 규정이 없어, 한번 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언제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속 동 덤핑관세가 지속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 협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덤핑관세가 5년 이후에는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최종문안에는 미국·EC 등 수입국이 주장해온 우회덤핑 규제제도도 포함되어 수입국내에서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제3국 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그리고 제3국에서 조립하는 경우가 아니면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되는 경우(country hopping)의 세가지 형태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에 대해 수입국내에서의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의 경우에는 기존의 덤핑방지 관세가 수입되는 부품 또는 구성품에도 적용되도록 했고, 제3국 조립을 통한 迂廻덤핑과 country hopping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사를 거친 후 덤핑방지 관세가 잠정조치 적용일 이전 150일까지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번 最終 協定文書에는 그동안 주장해온 수출국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협정문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동 협정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 및 제도의 운용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새로운 규제를 인정함에 있어서 최종문안은 수출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그동안 輸出入國 간의 타협이 어려웠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협정안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最終 協定文書에는 그동안 주장해온 수출국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협정의 운용 과정에서 선진 수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기술적으로 협정문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동 협정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 및 제도의 운용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보조금/상계관세

현행 GATT 규정 및 補助金/相計關稅 협정에 의하면 工產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금융·세제·재정상의 지원 포함)은 금지되어 있고, 기술개발이나 지역개발, 환경보존 등을 위한 국내 보조금은 지급이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수출보조금도 상당수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국이 엄청난 규모로 지급하고 있는 국내보조금도 실제적으로는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당초 금지한 수출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보조금이 지급된 수출상품에 대해 부과하게 되어 있는 相計關稅 규정도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하여 오히려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UR협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보조금지급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여 이로 인한 무역의 왜곡효과를 억제하는 한편, 상계관세의 부과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남용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 협정문안에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하여 우선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소득·가격지원 등의 존재와 이로 인한 혜택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보조금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금지대상 보조금, 상계관세부과 가능보조금 및 허용대상 보조금 등 세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금지대상 보조금으로는 현행보조금 협정상에도 금지되어 있는 수출보조금의 例示目録에 법률상·사실상의 輸出成課附 보조금, 국산품 사용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수입대체성 보조금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금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은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

거나 보조금위원회에서 당해 보조금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조사만을 통하여 금지보조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供與國에 대해 보조금지급의 철회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상계관세부과 가능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국내산업 또는 GATT상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보조금으로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보조금위원회의 피해조사를 통한 결정에 의해 무역의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범위내에서 보복조치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허용대상 보조금에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조치로서 사실상 特定企業群에 혜택을 주지 않는 보조금이 해당되며, 또한 비록 특정 기업군에 혜택을 주더라도 연구 및 지역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즉, 연구보조금 중에 기초연구는 소요비용의 50%까지, 응용연구는 소요비용의 25%까지 허용하고, 지역개발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을 행정적 單一體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GNP가 전국평균 85% 이하 또는 실업률이 전국평균 대비 110% 이상인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허용대상 보조금의 경우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는 불가능하며, 특별구제절차로서 국내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

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조금위원회가 철폐 및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에 대해서도, 최소 피해수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지급 수준이 선진국의 경우 1%, 개도국의 경우 2% 이하인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발동치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상계관세 조치의 自動消滅時效도 5년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개도국에 대한 우대문제로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5개 그룹으로 細分類하여 한국·싱가포르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과 같이 즉시 철폐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나, 최종문안은 개도국을 크게 最貧開途國과 그밖의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최빈개도국에는 수출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였고, 그밖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원칙적으로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우대를 인정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란 현행 GATT 규정(제19조)상 상대국의 정당한 수출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限時的으로 관세인상 또는 수량규제 등의 형태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동 조치를 발동할 때에는 수입되는 동종물품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상대방 국가에 대한 보상·보복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뒤따라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선진국들은 동 조치에 의한 수입제한보다는 양국간 수출자유규제 등과 같은 편법적이고 GATT 규정을 일탈한 '회색조치'를 선호해왔다(GATT 발족 이래 130여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된 반면 회색조치에 의한 규제는 300여건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UR협상에서는 이 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보다 명료화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는 한편, 수출자유규제와 같은 회색조치를 철폐하는 방안 등에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최대쟁점으로 진통을 겪었던 문제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정당한 수출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조치이므로(이 점이 反덤핑 관세조치와 다름)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전체 개도국 및 많은 선진국의 주장과 동 조치의 발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야기시킨 특정국가만을 규제하는 選別適用(selectivity)을 인정해야 한다는 EC의 강경한 주장이 대립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EC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특정 수출국에 대한 규제수준을 과거 수출물량보다 오히려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최종 협정안에는 의장이 妥協案으로서 특정국의 규제수준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소위 Quota Modulation이라 지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 모든 개도국들과 많은 선진국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재협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가능성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투자분야는 規範制定 분야와 편이상 같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격상 투자분야는 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와 같이 금번 UR협상 분야 중 새로운 분야에 해당되는 선진국의 관심협상 분야이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이 규제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투자제한조치의 무역왜곡 또는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제한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되어야 한다는 개도국간의 기본적인 인식차이로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議長이 자신의 책임하에 최종문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문안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정하여 금지대상이 되는 투자제한조치를 GATT 3조의 內國民待遇의무와 GATT 11조의 수량제한 철폐의무에 상치되는 조치로 함으로써 선진국이 규제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수출이행조건’의 명시적인 규정을 삭제한 반면, 개도국이 주장한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기업관행’도 삭제되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예외에서는 개도국은 폭 넓은 예외를 주장했으나 최종문안에서는 GATT 18조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금지대상 투자제한조치의 잠정운용

대외무역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雙務的인
통상마찰을 多者的인 규범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용기간을 선진국은 2년, 개도국은 5년, 最貧國은 7년으로 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다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기타 규범제정 분야

그밖에 규범제정 분야 최종협정안에는 동경라운드 협상시 체결된 협정 중 기술장벽 협정과 수입허가 절차 협정이 보다 명료히 개정되었으며 현행 GATT 條文 중에서 일부조항을 명료하게 개선하였다.

즉, GATT가 발족한 이래 GATT 조문의 수정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비추어 미비점이 많이 있었으며 해석상으로 불명확한 조항이 있고 또한 각국이 예외조항을 남용하여 왔었다. 따라서 새로운 무역환경과 무역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GATT 설립 이래 누적되어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GATT 條文을 명료화하고 개선하였는바, 그 중요한 조문으로는 GATT 2조 1(B)항의 관세 양허 표상의 기타 관세 및 부과금에 대한 규정, 17조의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정, 28조의 관세 양허에 대한 재

협상절차 규정, 25조상의 웨이버 규정과 가입의정서 및 잠정 적용 의정서상의 소위 예외조항(Grandfathering 條項)과 24조의 관세동맹 및 지역협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동안 선·개도국간 논란을 벌여온 GATT 18조 B상의 국제수지 조항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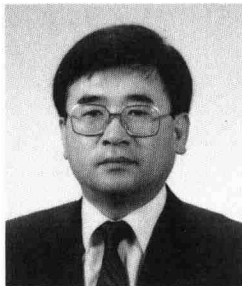
우리의 대응방안

규범제정 및 투자분야에 대한 협정안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 향후 세계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규범분야의 협정안 내용을 보다 더 세밀히 분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 경제는 앞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雙務的인 통상마찰을 多者的인 규범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역 및 산업 관련규범과 정책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고 명료성(transparency)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모든 규정과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이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분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말씀

지적재산권협상

UR 지적재산권 협상은 農産物분야, 市場接近분야 등 UR의 다른 분야와 함께 '90년 12월 브뤼셀閣僚會議에 의한 정치적 타결로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각국간의利害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한 후 UR의 다른 분야와 함께 협상이 재개되어 작년 한햇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왔다.



노영욱

특허청 기획관리관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그 내용이 非可視的이고 抽象的이어서 相關業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國際貿易關係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무역적자가 증대하기 시작하고 교역상품이 사용된 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가 상품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자, 지적재산권 문제가 국제경제 관계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이슈의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 모방기술의 발달로 선진기술의 複製가 손쉬워지게 되고 개도국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국제무역 확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保護壓力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적재산권 협상의 과정

이러한 선진국의 요구는 兩國家間의 관계에서 먼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다가온 것이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해 진행된 韓·美 지적재산권 협상이었다. 선진국은 이에 병행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설정하여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선진국은 종래 GATT 체제 밖에 있는 농산물·서비스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GATT가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GATT 義務 違反時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制裁(報復)를 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진국의 요구가 반영되어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閣僚宣言'('86. 9)에 의해서 '87년부터 지난 5년간 논의해왔던 것이 UR 知的財産權協商(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UR 지적재산권 협상은 농산물분야, 시장접근분야 등 UR의 다른 분야와 함께 '90년 12월 브뤼셀 閣僚會議에 의한 정치적 타결로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분야에서 미국·EC 간에 國內補助金 減縮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국간의利害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한 후 UR의 다른 분야와 함께 협상이 재개되어 작년 한해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왔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선진국간, 선·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의한 협정안 작성이 어려워지자 L. Annel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協定案을 작성, 지난 '91년 12월 20일에 개최된 TNC(貿易協商委員會) 회의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협정안이 작성된 것도 있으나, 일부 분야는 기술을 개발한 권리자의 보호에 두고 있는 선진국과 기술의 이전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도국간에 입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협정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權利(8개 분야)를 규정

하고 있어 선진국간에도 사항에 따라 상호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13일 이들 最終協定案을 평가하기 위한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각국이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동 TNC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협상계획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협상분야는 3월말 또는 4월 중순까지 법적 조문 정비작업 및 극히 제한된 부분의 意見調整(모든 참가국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R협상은 지적재산권·농산물분야 등을 포함,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전체적인 타결여부를 결정하는 방식(Single Undertaking)이기 때문에, 아직 각국 의견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농산물 등 다른 협상 분야에서 어떤 합의가 있어야만 知的財産權 분야도 타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知的財産權 分野 최종협정안의 주요내용

이러한 UR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종협정안은 전문 및 총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내용 전체에 적용되는 內國民待遇, 최혜국대우의 원칙, 權利消盡 등의 기본원칙

둘째, ① 도서·문예창작물에 관한 著作權 ② 음반·방송·사업자·實演家 등의 권리에 관한 著作隣接權 ③ 상표 ④ 포도주 등의 酒類에 관한 地理的表示 ⑤ 意匠 ⑥ 기술적

발명에 관한 特許 ⑦ 반도체 칩 등 集積回路의 配置設計 ⑧ 영업비밀 등 8개 분야 권리의 구체적 保護基準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기준

셋째,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他人이 권리자의 허가없이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여) 제조한 물품을 國內 流通段階 혹은 수출입단계에서 處理·團束·押收하는 절차

그리고 협정에 관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紛爭解決節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

기본원칙에는 지적재산권의 대상범위와 내국민대우, 多者間 貿易體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지적재산권 체계에서 처음 도입되는 最惠國待遇 및 권리자가 일단 라이선스하거나 직접 판매한 기술·상품 등에 대해서는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權利消盡에 관한 국제분쟁은 협정상 紛爭解決節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고 권리소진은 並列輸入(parallel import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진국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리의 주장이기도 한 개도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권리소진에 관한 문제는 TRIPs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소진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라이선스를 받은 국가에 역수출 혹은 제3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

었으며, 반대로 그러한 제품을 수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8개 분야의 각 권리 중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 일반적인 문학, 예술 창작물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資料編輯物(즉, 데이터 베이스)을 포함하고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音盤을 제작한 음반제작자, 직접 예술작품 등을 공연한 實演家(Performers), 放送事業者의 보호를 著作隣接權의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기간을 50년(단, 방송사업자는 20년)으로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저작인접권(특히, 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산물 분야의 금진전으로 UR협상이 채택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 準備期間이 1~5년이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지적재산권 협정에 부합되도록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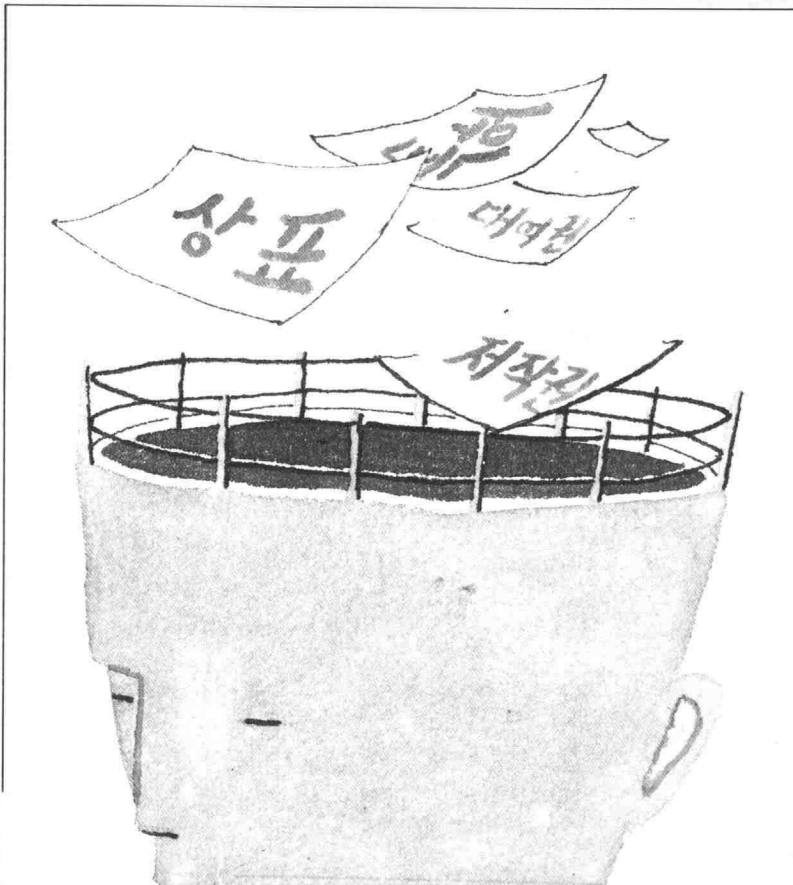
반·제작자·실연가)의 보호기간 외에는 이미 국내법에 반영(국내법은 20년으로 규정)되어 국내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에 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表現(expression) 그 자체 외에 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 등까지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의 독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장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까지 보호하게 되면 逆操作(reverse engineering)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우리를 포함한 기타국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가 表現 그 자체에 限定되고 아이디어, 작동기법, 수학적 방법론 등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 대여권

국제조약에 처음에 도입되는 貸與權(rental rights) 즉, 원저작권자가 자기가 개발 또는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음반·영상저작물의 貸與行爲를 직·간접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는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항이다. 대여권의 도입 이유는 성행하고 있는 대여업소로부터 음반·VTR 테이프 등을 대여하여 저작물 소비자가 카세트, VCR 등을 이용해 복제함으로써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원본의 판매액 감소 등)에 대한 권리자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인식을 같이 했으나, 대여권을 인정하되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대여행위를 직접 허가 금지할 수 있



는 排他權(exclusive rental rights)으로 규정할 것인가, 혹은 대여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대여행위에 대해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 報償請求權(right of remuneration)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대여업 특히, 영세한 VTR 테이프 대여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報償請求權을 주장하였고 개도국이 동조하였으나, 미·EC 등 선진국은 排他權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의장은 최종협정안에 컴퓨터 프로그램(대다수 국가가 이미 배타권으로 규정), 음반·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을 배타권으로 하고 다만,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특성(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복제기술상 복제해도 원본에 비해 質이 저하)을 고려하여 대여행위를 통해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권리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대여업계는 외국영화 VTR 테이프 등을 仲介商을 통해 수입하는 것에서 원저작권자에 대여의 허가를 취득한 후 직수입하는 것으로 流通構造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대여를 통해 저작물이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制度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상표

상표에서는 색채상표까지 보호하고 보호기간은 최소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有名

TNC회의에서 합의된 향후 협상계획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협상분야는 3월말 또는 4월 중순까지 법적 조문 정비작업 및 극히 제한된 부분의 意見調整(모든 참가국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商標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色彩商標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 산업계로 하여금 商標製作 및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色彩商標 및 立體商標 도입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

삼페인·꼬냘 등 生産地의 기후·풍토가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酒類 등의 경우 그 생산지를 표시하는 地理的 表示는 주로 와인 등의 主産地인 EC와 미국·오스트레일리아·중남미 등 移民國家의 관심사항이었다. 보호받을 것이 많은 EC의 강력한 보호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중남미 등 국가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결국, 최종협정안에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되, 이미 상품의 一般名稱이 되었거나(例: 삼페인), 선의로 他國에서 장기간 사용하고 있던 지리적 표시는 보호의 예외로 함으로써 調整을 피하였다. 우리로서는 이미 상당부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例外規程을 충분히 원용할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특허

特許의 경우는 관련정부기관(特許廳)에 출원한 날부터 최소 2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허를 부여하는 기술의 대상(特許對象) 및 특정한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強制實施權(Non-voluntary licence)과 관련하여 선·개도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특허대상에 物質特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물질특허가 대부분 의약·농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 특허를 부여하여 권리자가 일정기간 獨占權을 갖게 되면 국민의 보건상 관련산업이 취약한 개도국으로서의 지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최종협정안에는 선진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物質發明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되 첨단 유전공학과 관련이 있는 동·식물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으로써(단, 식물발명은 特別法으로 보호) 첨단 유전공학 기술에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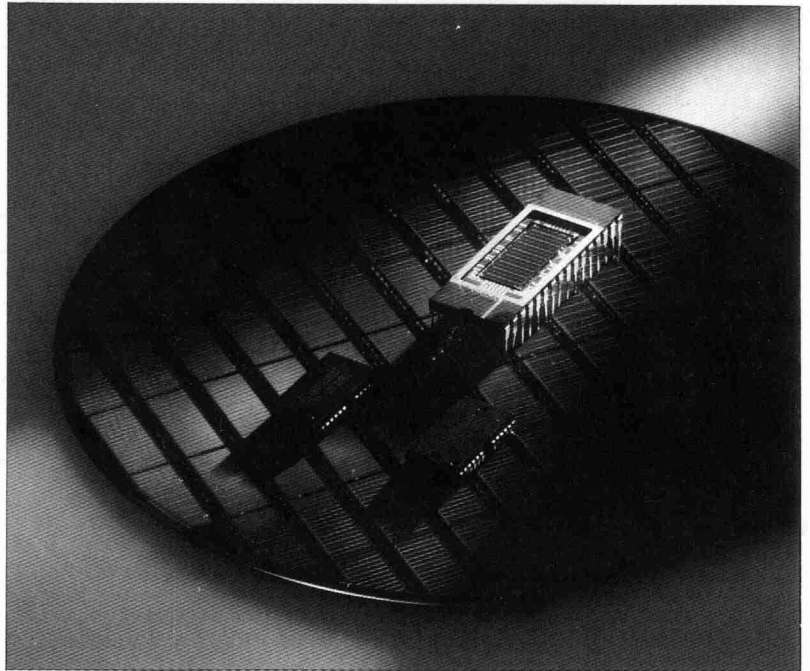
強制實施權에서는 강제실시권 발동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려는 선진국과 현상태 유지 혹은 가급적 확대하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었으나 국가긴급사태, 公共目的, 利用發明, 합리적 기간내 합리적인 계약 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

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다소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우리로서는 현행 우리 제도와 일치하고 큰 괴리가 없으며 선진국의 기술을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반도체 칩 등 集積回路 配置設計(layout-designs) 보호분야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주장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여기서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 칩에 결합되는 회로의 배열에 관한 도면으로 우리가 흔히 4MD RAM, 16MD RAM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의 集積度(容量)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工產品에 반도체 칩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 분야가 우리의 수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電子產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전자업체가 반도체 칩을 부품으로 구입할 때 그 반도체 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선의로 구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제품 등 最終製品의 유통·수출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要旨로 3회에 걸쳐 書面提議案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미·일·EC 선진국과 우리밖에 없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결국은 우리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最終協定案에 규정되었다. 즉 善意購買者는 반드시 보호되



어 권리자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기 전에 선의로 구매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여 제조한 電子製品은 자유롭게 유통·수출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에도 既購入한 재고품, 주문중이던 반도체 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단, 이 경우에는 자유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지급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 따라서 침해사실의 通知를 받고 난 후에도 새로이 불법 반도체 칩을 구입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우리의 관련업체는 반도체 칩 구입시 이 점을 유의하고 권리자로부터 侵害事實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전자제품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영업비밀

營業秘密(undisclosed information) 분야에서 선진국은 의약·농약 제조허가를 保社部 등 관련기관에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臨床實驗資料를 작성하는 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既投資者 보호차원에서 이 임상실험자료를 타 경쟁업자가 원용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新藥開發 能力이 부족하고 임상실험자료를 작성할 능력이 취약한 우리 및 개도국이 반대하였으나, 최종협정안에는 동 임상실험자료를 부정한 營業的 利用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제약업체에 다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처리 및 단속절차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처리 및 단속절차(enforcement)에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단계에서의 손해보상 청구 등의 訴訟, 處理節次 그리고 수출입 단계에서의 稅關에서 침해물품을 通關停止하는 절차(국경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단계에서의 절차는 우리 국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강력한 집행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國境措置의 적용범위와 그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국경조치를 상표, 저작권 침해물품 외에 세관에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特許·意匠·半導體·營業秘密 침해물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선진국 주장에 대해 우리는 개도국과 연계하여 국경조치를 상표, 저작권 침해물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권리자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국경조치를 요청할 경우 세관은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경조치가 남발되어 우리 수출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상표, 저작권 침해물품은 반드시 國境措置를 적용하도록 하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는 국경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국경조치에 따른 수출입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특허·영업비밀·의장·반도체 권리 침해물품에 국경조치가 발동되어 통관정지가 된 경우에는 수출입업자가 공탁금을 예치한 후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 관련업계는 동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외 紛爭解決節次는 UR 전체의 統合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가
對美·對EC 등 兩者協商을 통해
이미 상당한 개방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우리의 대응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는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가 對美·對EC 등 兩者協商을 통해 이미 상당한 개방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우리 제도에 미반영된 분야도 지적재산권 분야의 향후 정책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간 知的財産權 問題를 兩者協商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공세적 입장이 수세적 입장보다 훨씬 협상력이 강하여 거의 일방적인 양보라고까지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다자협상 결과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효과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발명과 創作意慾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원활한 技術移轉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R 知的財産權 協定案은 선

진국의 보호압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最少要件(minimum standard)을 규정하는 협정이 없다면 선진국은 자국법에 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우리에게 이를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權利者와 使用者間的 균형된 국제규범을 통해 선진국의 과도한 입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R협상이 농산물 등 他協商分野와 함께 묶어 일괄적으로 타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인 농산물 협상의 동향을 유의하고 특히 협상 주도국인 美國·EC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농산물 분야의 급진전으로 UR협상이 채택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부여되는 準備期間이 1~5년(선진국 : 1년, 개도국 : 5년)이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지적재산권 협정에 부합되도록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UR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협정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동 내용이 향후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방향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국내제도의 정비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란

UR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

서비스 분야

UR 서비스협상은 크게 서비스 일반협정문을 작성하는 작업과 각국의 서비스부문 자유화수준을 약속하는 국가별 양허협상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UR 서비스협상은 크게 서비스 일반협정문(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작성하는 작업과 각국의 서비스부문 자유화수준을 약속하는 국가별 양허협상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협상추진경위 및 향후협상일정

현재 一般協定文 초안은 해결되지 못한 몇가지 기술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동 일반협정에 포함될 인력이 동·통신·금융 등 주요분야에 있어서의 부족서도 초안이 마련되었다. 한편 각국의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약속하는 국가별 양허협상은 지난해 초부터 작년 11월까지 국가별로 최초의 양허계획표를 명료화하는 양자협의(Consultation)를 거쳐 지난 1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양허협상(Concession Negotiation)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협의기간중에 미국·EC·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핀란드·노르웨이 등과 1~4차의 양자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들 나라와 본격 양허협상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UR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일반협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한 두 차례의 국가별 양허협상을 거쳐 3월 9일까지 중간 수정 양허계획표를 GATT에 제출하고 최종 양허협상 결과를 3월 31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 양허계획표를 일반 협정문에 첨부시킴으로써 UR 서비스협상을 종결시킨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협상일정계획은 전체 UR협상의 진전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비스협상의 3월말 종료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이제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최종협정문안의 주요내용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국제교역규범의 정립 문제는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다. 그간 서비스교역에 대한 규율은 국가별 쌍무적인 협정이나 서비스교역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OECD 국가들끼리의 약속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교역이 量的인 면에서나 質的인 면에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수출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다자간의 체제에서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 등 선진국의 주도로 UR에 서비스협상이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협정은 교역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금융·운송·통신 등 전형적인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회계·엔지니어링·설계·광고 등 사업서비스에까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최종협정문안에 포함된 서비스협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最惠國 대우원칙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GATS 발효후에는 일단 어느 국가에게 부여한 혜택은 GATS 가입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최혜국 대우원칙에 따라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배타적인 시장개방은 더이상 불가능해지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국내시장 자유화의 추진만이 앞으로는 가능해지게 된다.

둘째로, 서비스협정은 일반적 의무로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즉 각국은 서비스협정문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동 협정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법률·규정·행정지침·결정·규칙·조치들을 공표하여야 한다.

셋째, 각국의 자유화수준은 각국의 개별적 약속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협정은 각국의 자유화 약속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방식을,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네가티브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자유화 약속대상 업종을 讓許表(Schedule of Concession)에 기재하는 범위는 각국이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양허표에 등재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진출과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조치는 물론, 내국인과의 제도적 및 실질적·차별적인 규제조치를 모두 양허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서비스공급자의 총자산·총자산규모·총산출액·기업의 설립형태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더이상 그와 같은 규제조치는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환경보호·공중도덕 등 정당한 국가정책목표에 의한 규제제도는 계속 유효하며 신규로 도입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시장접근이나 內國民待遇를 막으려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밖에 서비스협정은 자유화약속이 행해진 부문 및 업종에서 국내조치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 국제지급과 이전에 대한 제한금지, 서비스공급자 자격의 인정,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예외적 제한 등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협정은 보조금·정부조달·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는 상품분야협상과의 관계, 시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의무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서비스협정 발효후 2~3년 내에 협상을 재개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미루어 놓고 있다.

한편 금융·통신·항공·인력이 등등 4개분야에 대해서는 부속서가 마련되었다. 이들 부속서는 일반협정의 규정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분야별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금융분야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복잡함에 비추어 금융서비스의 포괄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선진국이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급속히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의 독점제한·정부구매·국경



간공급·기업설립·신상품개발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의무조항을 금융부속서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개도국들의 반대로 이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각국이 자유화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理解覺書로 결론이 났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국 등 일부선진국은 금융부속서에 대하여 아직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신 부속서는 통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부구조임에 따라 공중전기통신망과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내 통신의 범위, 통신요금이 原價에 지향을 해야 한다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 부속서는 쌍무적인 성격을 갖는 航空運輸權에는 서비스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항공기 수리 및 유지, 항공운송활동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서비스 등만 서비스

협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이동 부속서는 인력이동의 실질적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인력이동이 협상대상이고, 인력이동의 심각성에 비추어 서비스협정이 각국의 영구적인 거주 및 취업·시민권에 대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최종협정문안에 나타난 서비스 일반협정과 부속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이들 협정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본입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자유화약속에 대한 양허협상

각국의 자유화약속 내용을 기재하는 양허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양허협상을 통하여 그 결과로서 확정되게 된다. 양허협상은 각국의 양허

계획표 (offer list) 와 이에 대응한 개방 요구서 (request list) 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각국은 '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를 계기로 양허계획표를 제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45개 국가가 양허계획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EC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남미·중국 등 개도국들도 다수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91년 1월 시청각서비스·사업서비스·통신·건설·유통·금융·운송·관광 등 8개분야에 대해서 최초양허계획표 (initial offer) 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EC·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스위스·뉴질랜드·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폴란드·인도 등 12개 국가가 개방요구서를 제시하였다. 우리에게 대한 개방요구 사항 제시 및 양허협상은 우리 서비스시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선진국들은 사업 서비스·금융·통신분야에서 광범위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

미국 등 일부국가는 특히 금융분야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자국의 개방혜택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 그외에도 각 국가는 회계·광고·보건시설의 관리·프랜차이즈 분야 등에 있어서는 자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구체적인 교역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환경관련 서비스·수산업 등 이미 자유화된 외국인투자 업종은 양허표에 모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국의 개방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자유화된 수준 이상의 양허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92년 1월부터의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92년 1월 서비스협상 주요국 회의는 새로운 양허계획서 작성 방식에 따라 2월 10일까지 각국이 수정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EC·일본·오스트레일리아·스위스 등 주요선진 국가가 이미 수정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양허계획서 작성 방식에 의한 수정 양허계획서를 2월 중순까지는 제출할 예정이며, 동 수정 양허계획서에는 최초 양허계획서를 작성한 '90년 11월 이후 해운·유통 등 분야에서 추가로 자유화된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 기왕에 자유화된 일부 업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EC·일본·인도네시아·태국·중국 등 총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UR 서비스협상을 계기로 거센
자유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화와
체질개선의 자기혁신과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비스 분야는
물론 實物經濟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5개 국가에 대해서 유통·금융·건설·통신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요구서를 제시하였다. 선진국과는 개방수준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이나 영업활동이 진입장벽을 경험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의 규제제도에 관한 자료도 축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요구 사항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여지가 큰 동남아시아 국가, 중국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향후 서비스협상은 3월말까지 두 차례의 국별 양허협상을 통해서 일단 마무리지를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UR 전반에 대한 협상전망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미국·EC간의異見 등으로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협정과 양허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것인지, 또 그 결과의 발효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확

한 전망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 전망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남은 협상기간 동안에 미국·EC 등 협상주도국들이 그동안의 양자협의 및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집요하게 자국입장을 관철하려고 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상대국 요구사항의 우선 순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러한 협상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영세한 규모와 전근대적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내경쟁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적지 않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UR 서비스협상을 계기로 거센 자유화의 波高가 몰려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화와 체질개선의 자기혁신과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비스 분야는 물론 實物經濟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정부·기업,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에게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UR 후속과제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필필

제도 분야

UR 多者間 貿易協商의 7개 분야 중의 하나인 제도분야 협상그룹은 특정의 무역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자간 무역체제 전반에 관한 제도적인 규범의 개선 및 강화를 협상목표로 삼고 있다.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UR 多者間 貿易協商의 7개 분야 중의 하나인 제도분야 협상그룹은 특정의 무역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자간 무역체제 전반에 관한 제도적인 규범의 개선 및 강화를 협상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 협상그룹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분쟁해결, GATT 기능 강화 및 다자간 무역기구 (MTO: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및 자동화

분쟁해결에 관한 최종협정문안의 특징은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 및 자동화이다. GATT에서의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협의, GATT 이사회의 패널 설치, 패널의 심사 및 보고서 제출, GATT 이사회의 패널보고서 채택, 敗訴國의 패널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이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패소국이 패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GATT 이사회가 보복을 승인하게 된다.

이번 분쟁해결에 관한 최종협정문안은 전술한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패널이 설치된 날로부터 패널 권고사항의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시까지 18개월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GATT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시 만장일치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분쟁 당사국 一方이 패널 설치 단계나 패널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동의를 유보함으로써 분쟁해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금번 분쟁해결 관련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패널설치 요청이 GATT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제기되는 경우 늦어도 두번째 이사회에서는 패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패널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上訴 패널보고서의 경우 30일 이내) 채택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패소국이 패널 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보복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분쟁해결 절차의 자동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금번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문 초안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방조치를 억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GATT상의 무역분쟁에 관한 한 締約國이 일방조치에 호소치 않을 것과 GATT 분쟁해

결 절차를 준수한다는 공약이 협정 초안에 명기됨으로써 특히 미국의 경우 무역분쟁시 여타 체약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방조치 억제 공약은 GATT상의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자동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로서 향후 미국은 일방조치 발동을 억제하는 대신 보다 활발하게 GATT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해결과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분쟁해결기구를 多者間貿易機構 산하에 신설한다는 점이며, 분쟁해결 기구는 지금까지 GATT 이사회가 전담하여 온 분쟁해결 기능을 다자간무역기구 설립 협정 발효 직후부터 떠맡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GATT 이사회가 상품분야에서의

무역분쟁만을 다루어 왔던 데 비하여 분쟁해결 기구는 UR협상 결과로서 규범이 새롭게 정립되는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분쟁까지 포함하여 모든 무역분쟁을 관장하게 되며, 이로써 현행 GATT 체제하에서 GATT 이사회와 동경라운드 협정 위원회(예: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등)가 각기 별도의 분쟁해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기된 GATT의 다원적 분쟁해결 구조가 다자간 무역기구내에 신설되는 분쟁해결 기구에 분쟁해결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일원화된다.

이와 관련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교차보복 즉 상품·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중 어느 분야에서도 보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 분야인 통신분야와 관련된

분쟁시 패소국이 패널의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아 보복을 승인하는 경우 보복 발동국이 패소국이 수출하는 통신장비(상품분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GATT의 감시기능 강화와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 제고

GATT의 기능과 관련된 제도분야 협상그룹의 협상목표는 GATT의 감시기능 강화와 세계경제정책 결정시 일관성 제고로 대별된다.

GATT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협정문 초안은 '89년 4월부터 잠정 시행중인 각국 무역정책 검토제도의 실시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국제무역환경 검토제도 계속 실시, 체약국의 무역정책 결정과 관련된 명료성의 자발적 제고, 중앙통고문 기탁소의 GATT 사무국내 설치를 통한 통고제도의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국 무역정책 검토제도에 따르면 세계 4대 무역국인 미국·일본·EC·캐나다는 2년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16대 무역국은 4년마다, 기타 GATT 체약국들은 6년마다 한번씩 자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해 GATT 체약국단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검토 대상국은 自國의 무역제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GATT 사무국은 조사반을 대상국에 사전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제도의 이점은 여타 체약국의 무역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무역정책

UR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경우, 세계 제12대 무역국인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수출을 더욱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및 관행의 명료성 제고 및 이해증진을 통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 協定文 초안은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GATT가 통화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 발전시키 나갈 것과 GATT 사무총장이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GATT와 이들 국제기구간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의 GATT를 확대 개편하여 多者間貿易機構 설립

다자간무역기구 설치 문제는 현행 GATT 체제의 성립 배경과 연관성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하바나 憲章'이 작성되었으나 참가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유산되었으며, 이러한 사정하에서 1948년 1월 1일 관세협정으로 발효한 GATT는 '하바나 헌장' 중 무역정책 부분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잠정적인 형태로 운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86년 9월 출범한 UR은 GATT

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여덟번째 다자간무역협상으로서 동경라운드까지의 7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UR이 지금까지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 신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라 하겠다. UR협상의 결과 이들 신분야에서도 새로운 규범이 성립함으로써 UR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행 GATT 체제의 확대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다자간무역기구 설립을 추진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자간무역기구 설립 문제는 아직 초기 협의 단계에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설립 협정안에 따르면, 구조면에서 볼 때 각료급 총회(2년마다 개최)·일반이사회·상품이사회·서비스 이사회·지적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으로서 상품·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의 운용, UR협상 결과 및 향후 협상 결과 이행, 향후 다자간 무역협상 주관, 통합 분쟁해결절차 및 국별무역정책 검토제도 관장,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경제정책상의 일관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무역기구 설립 협정 발효일자는 UR협상이 4월 중순까지 완전 타결되는 경우에는 '93년 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간무역기구가 기존의 GATT를 확대 개편하여 성립되는 기구인 만큼 기존의 GATT 체약국은 UR협상 결과를 일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다자간 무역기구 회원국 자격이 주어지나 다자간무역

기구 설립 협정 발효일('93년 1월 1일 예정)로부터 2년이내에 UR협상 결과를 수락하지 못하는 GATT 체약국은 다자간 무역기구 회원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가입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거쳐야만 다자간 무역기구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수출신장과 경제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UR 협상은 덤벨 사무총장이 '91년 12월 20일 최종협정문안을 제시함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여 금년 1월말부터 시장접근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협상, 협정 조문의 법적인 정비작업과 협정 초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 검토를 거쳐 4월 중순까지 모든 협상을 종결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도분야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문안을 통합하는 작업과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 협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나 최종 협정문안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분야에

제도분야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문안을 통합하는 작업과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 협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나 최종 협정문안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자간무역체제는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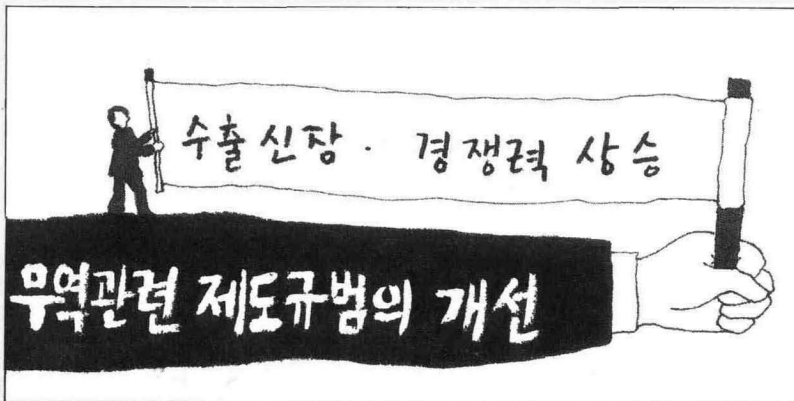
서의 협상 타결로 다자간무역체제는 확대 발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자간무역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무역환경 여건이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제도가 다자간 무역기구의 주요기능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우리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현재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가 올해 7월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가 신속·자동화 되며, 미국이

301조상의 일방조치를 발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양자협상이 아닌 다자간 무역기구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자간 무역기구의 소관사항이 전통적인 상품분야로부터 신분야인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무역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자간 무역규범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행후 불필요한 무역마찰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여타국의 GATT 위반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UR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경우, 다자간 무역기구가 설립되어 기존 GATT 체제의 제도적 기능이 일층 강화되고, 상품분야에서의 기존 규범이 개선·강화되며 신분야에서도 규범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모든 국제무역이 무차별 원칙 등 自由貿易主義에 의거한 무역규범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또한 각국간 무역 분쟁은 강화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해소됨으로써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인바, 이는 세계 제12대 무역국인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수출을 더욱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



社會的 合意形成을 위한 提言



趙 淳

前 副總理 겸 經濟企劃院 長官

本誌에서는 2월 12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盧泰愚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 회의」 석상에서 趙淳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 ‘社會的 합의 형성을 위한 提言’을 입수하여 全載하였다. (편집자 주)

오늘 大統領閣下께서 主宰하시고 各界의 여러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經濟社會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勞使關係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經濟社會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바람직한 勞使關係의 방향은 저절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經濟實績을 요약하는 몇 개의 巨視指標가 우리 經濟의 현황을 말해 줍니다. 經濟成長率 9%線, 物價上昇率 10%線, 貿易收支赤字 100억달러線 등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指標가 함축하는 경제상태를 그대로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認識下에 政府는 금년도의 經濟運用

에 있어서 모든 巨視指標를 하향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時宜適切한 방향설정이라 생각되며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에는 몇 차례의 선거를 비롯하여 정부의 目標達成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경제운용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비상한 舍心努力이 필요하리 하겠습니까. 만일 작년과 같은 經濟狀況이 금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물가상승의 고리 단절해야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와 貿易收支입니다. 우리 경제는 오래전부터 螺旋形 인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通貨量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公共料금이 오르고 收買價格이 오르고 금리와 환율이 오르고 이것이 또 물가를 올리는 일종의 物價上昇의 고리(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리가 작동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금 物價安定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國內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의 國際競爭力을 회복할 도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物價上昇의 고리를 단절해야 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단절해서는 안되고 그 고리의 마디마디를 동시에 단절하는 힘겨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플레이나 國際收支赤字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플레이나 國際收支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 그 밑바닥을 이루는 經濟社會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社會紀綱의 解弛, 勤勞意欲의 저하, 企業意識의 약화, 消費性向의 증가, 集團利己主義의 蔓延 그리고 政府政策의 실효성의 低下 등은 모두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의 脆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 하부구조의 취약성 극복이 관건

지난날의 量的成長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장이나 건물 등 겉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上層構造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 상층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하부의 기초는 제대로 다져지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부구조의 脆弱點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산업구조가 均衡을 상실함으로써 中小企業이 너무나 脆弱하고 大企業도 많은 不實業體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원천적으로 分配의 衡平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經濟秩序가 公正性·透明性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시장경제의 原理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력개발의 체계가 歪曲·落後됨으로써 인력 부족과 기술부진이 早期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賤民資本主義의 意識이 사회각층에 확산됨으로써 건전한 직업의식이 싹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體質의 脆弱이 위에서 지적한 인플레이와 서로 고리를 맞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없이는 못 건디는 취약한 체질이 인플레이를 불러 일으키고 인플레이를 먹고 자라면서 자라날수록 취약한 체질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經濟의 下部構造의 강화 내지 體質改善의 노력 없이는 인플레이를 收束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國際的으로도 힘겨운 挑戰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冷戰體制의 終熄은 세계경제질서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國際情勢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날로 熾烈해 가는 새로운 國際競爭에서 밀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中進國으로부터 後進國으로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對內·對外的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새로이 제기되는 挑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發展戰略이나 企業方式은 이제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묵은 固定觀念을 버리고 새로운 自生의 길을 찾아 힘차게 매진해야 합니다.

그 길이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인플레이의 고리를 단절하는 동시에 경제의 하부구조를 개선하여 그 自生力을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勞使關係의 설정도 이러한 國民經濟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서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勞使關係나 企業의 經營方式 등은 경제의 하부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國力의 消耗를 막을 수 있는 생산적인 勞使關係를 담은 새로운 產業文化를 창조해야 하며 企業次元에 있어서도 능률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創意力을 鼓吹하는 새로운 企業文化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等閑視되어온 經濟의 下部構造를 제대로 構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經濟의 自生力을 마련하기 위해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직한 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해 근로자, 기업주 및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提言을 하기에 앞서 우선 몇 가지 前提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바람직한 勞使關係의 정립 개요

첫째, 勞使雙方은 서로의 利益이 항상 대립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노사간에는 물론 利害의 相衡도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指向하는 同伴者입니다. 이들 동반자 사이에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共同體意識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붙임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밀어붙임으로써 될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勞와 使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두 개의 바퀴처럼 그 중 하나만 없어도 企業活動은 불가능합니다.

企業主는 勤勞者를 단순한 生産要素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勤勞者는 기업활동을 白眼視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 곧 나를 위하게 되는 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우리 國民의 心性에 알맞은 생산적인 産業文化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民主的 勞使關係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民主主義를 指向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이 시대의 風向에 맞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民主主義 時代의 勞使關係는 옛날 家父長 時代의 主從關係의 연장일 수 없고, 權威主義 시대의 命令服從關係의 계승일 수도 없습니다. 非民主的인 産業文化를 가지고는 결코 진정한 産業平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高度의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업의 創意性이나 技術의 開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주에게 固有의 權利와 義務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도 고유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民主時代의 産業文化는 그것을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賤民意識을 완전히 씻어 버려야 합니다. 國民經濟야 어찌 되었든 어떤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賤民意識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임금만 올려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근로자들의 賤民意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資本主義의 本質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資本主義의 價値觀과 賤民意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賤民意識을 가지고는 현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企業倫理와 勤勞倫理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賤民的 思考와 行態를 버리고 건전한 職業意識을 體得할 때 비로소 고도의 산업사회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企業主는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이상에서 말씀드린 前提 위에서 企業主에 대하여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주들은 스스로가 이 나라의 産業을 지도하는 地位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적극적이고도 겸허한 사고와 행동으로 國民의 존경을 받으면서 經濟와 社會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企業의 운명은 자기가 선택하는 業種에 걸고 세계의 기업과 경쟁한다는 참다운 企業精神을 드높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주는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私有物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업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共同體의 公有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종업원과 同苦同樂하는 企業文化를 길러 주십시오.

그같은 노력이 勤勞者에게 널리 알려질 때 勞使關係는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그 기업은 저절로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종업원들을 아끼고 그들의 潛在能力을 키워주십시오. 기업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教育의 場이 되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인력이 부족할 때, 그것을 다른 데로부터 끌어 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內部에서 길러 쓰도록 하십시오.

企業은 단지 物件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人才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企業主는 産業現場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韓國의 勤勞者들은 사실 돈보다도 도리어 따뜻한 人間的인 배려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 韓國的인 人情에 맞는 경영의 스타일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독특한 企業文化를 정착시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體面을 중시하고 겉치레를 잘하는 버릇이 있는데 기업도 例外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損益計算과 經營指標에는 거짓이 많고 이것이 합리적인 企業經營에 지장을 초래하고 勞使紛糾를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서는 國民經濟의 下部構造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虛勢와 거짓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企業의 實態를 근로자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서로의

信賴를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勞使關係에 있어서도 正直과 公明의 代替物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公명한 경영자세 없이 勞使關係의 正常化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인상요구 자제하는 슬기와 용기 가져야

다음 근로자들에게 몇 가지 提言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이 나타내기 쉬운 被害意識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低賃金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高賃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賃金에 관한 한 근로자들에 대한 待遇가 疏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賃金水準에 비해 生産性的의 向上이 뒤떨어져서 우리나라 상품은 세계 도처에서 價格競爭이나 非價格競爭의 兩面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賃金이 오른다면 經濟는 破綻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厚生과 國民經濟의 장래를 위해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년동안 임금수준이 웬만큼 오른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아예 自進해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용기와 슬기를 보여 준다면 그것은 온 국민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產業文化의 創出을 촉진하는 무엇보다도 新鮮한 刺戟劑가 될 것이며 근로자들 자신이 그 새로운 문화의 가장 큰 受惠者가 될 것입니다.

둘째, 만부득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暴力을 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을 던지거나 바리케이드를 치지 마십시오. 간디의 哲學을 빌릴 필요도 없이 暴力보다는 非暴力의 투쟁이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데 더욱 유효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群衆心理에 휩쓸려 附和雷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自主意識을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습니다.

政府, 경제체질 강화 위한 정책 추진해야

끝으로 政府에 대하여 몇 가지 提言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정책은 우리 經濟의 自生力を 기르기 위한 基本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自生력을 기르기 위한 政策基調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의 고리를 단절하는 동시에 脆弱한 經濟體質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勞使問題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勞使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되 違法行爲가 있을 때에는 노사를 막론하고 法律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韓國人의 心性에 적합한 산업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財産形成과 福祉增大를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住宅의 공급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勞·使·政이 힘모아 도전 이겨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부터 屢한 挑戰을 받고 있고 勞使關係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할 課題가 많습니다. 이 도전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는 難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한 예는 先進國이 된 나라들의 歷史에는 허다히 많았습니다.

歷史가 우리의 奮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勞·使·政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새로운 각오와 인식전환을

이길음

내외경제신문 기자/건설부

정 부기구표상으로 建設部는 위로부터 14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다. 경제부처만 놓고 봐도 6 번째에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순위로만 따진다면 10위권 안에도 못 드는 하위급(?) 부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중요하다 고 앞자리에 놓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뒤로 밀어놓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조직도 사람의 오장육부나 다를 바 없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일들이 소위 아래쪽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렇다.

건설부의 업무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사회간접자본의 확충·국민생활환경의 개선·토지이용 질서의 확립·해외건설의 활성화 등의 금년도 건설부의 업무계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집중 심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 이와 반대로 지방의 낙후현상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망국병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투기열풍에 휩싸인 토지와 주택문제, 제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국제수지 개선에 일익을 맡고 있는 해외건설, 이밖에 맑은물 공급대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기자도 작년 2월 건설부 출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못했다.

장안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水西사건이나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열풍 등이 국가나 국민생활에 미쳤던 엄청난 파장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설부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 또한 많아질 것이다.

건설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공지와 자부심도 다시 높게 세워야 한다.

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에 앞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욕심도 필요하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되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

래하거나, 단순히 해진 곳만 기우는 땀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가급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희망을 줄 것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건설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부드럽지만은 않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불신은 아직도 일부에 남아 있는 무기력과 保身主義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 없이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국면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있다. 어려운 나라경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각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려울수록 각기 자기자리에 충실하며 보람을 찾으려는 새로운 각오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내외**

전문성과 상식을 조화시켜야

정성관

매일경제신문 기자 / 보건사회부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하는 보사부는 그 임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민적 관심대상에서 조금은 비켜 있는 듯하다.

지난해 발생한 콜레라와 연말 『웅진여성』의 에이즈보도 파문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언론의 관심사가 없었음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에도 보사부는 靜中動의 모습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고 이해를 조정하며 정부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실적을 보더라도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국민연금의 확대, 의료 및 약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장치 추진,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在家福祉制度 도입 등과 같은 복지사업 정책개념의 전환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렵다.

장관 재임기간이 짧기로 이름난 보사부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꾀직한 업무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테크노크라트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사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료분야 등 발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터져 나오던 식품위생 관련기사가 줄어든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보사부를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보사부의 업무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성을 내세워 숨기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보사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寸志수수사건 이후 보사부 출입기자들이 모두 바뀌는 바람에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같은 지적은 분명한 경종이 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당연히 언론에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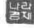
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애써 외면하는 구석도 보인다.

실례로 '90년 일부 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보험연합회와 분쟁이 일었고, 이를 일부 언론이 부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것이 그 하나다.

보사부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곳이다. 의사나 약사·박사 등 고급인력이 많다.

그러나 그 같은 전문성은 일반국민의 상식선을 기준으로 집행돼야 한다. 결코 어떤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와 연관되어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보사부가 국민복지와 생활의 안정·편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일부로부터나마 비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의약분업제의 도입을 두고 부처내에서조차 局別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 등은 바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사부가 국민복지 향상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專門性과 함께 국민일반의 常識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綜合商社의 기능 活性化가 필요하다



남상빈
종합무역상사협의회 간사
(삼성물산 기획실장)

우리나라 종합상사는 1차 오일 쇼크후 輸出增大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75년 4월 30일 '종합무역상사 지정에 관한 요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간 종합상사는 去來의 專門化 및 規模의 經濟에 따른 거래비용 최소화, 정보능력 및 관리능력 우위에 따른 중소기업 리스크 감소, 국제적 유통 경로를 통한 코디네이터 역할, 신용과 정보를 활용한 자금 차입으로 중소기업에의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해외 자원 개발 참여, 국제화 先導,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상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근래 종합상사를 보는 시각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퇴색되어 정부 일각에서는 支援者 역할 보다는 規制者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국민들도 재벌 그룹의 팽창을 억제하는 시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

는바, 종합상사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일부의 이러한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종합상사 성장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운용상의 문제로서, 이제 종합상사의 지정요건도 전국 수출의 2% 이상과 기업공개 정도로 되어 있고 지원제도는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계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종합상사의 存立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개방화·국제화의 가속으로 국내외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쟁할 만한 우리편의 발목을 잡아 놓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차제에 종합상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종합상사가 國民經濟에 기여한 바를 요약하고 종합상사가 당면한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는바, 종합상사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들

	'75	'91	신 장	연평균신장률
전 국(A)	54.3	719.9	13.3배	17.5
종합상사(B)	6.3	306.3	48.6배	27.5
점유율(B/A)	11.6	42.6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綜合商社の 국민경제에의 寄與

종합상사의 설립 背景이 수출증대에 있는만큼 종합상사들이 수출에 주력하여 '75년 종합상사 수출액이 6억4천만달러로 전국 수출의 11.6%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306억달러로 전국 수출의 42.6%를 차지하는 등 수출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종합상사는 美洲·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물론 초기 코스트가 많이 소요되는 소련·동구·중동·중남미 시장 등의 新市場 개척을 주도함으로써 통상관계 확대는 물론 未修交國과의 국교 수립에 기여한 바도 있다. '91년말 현재 7개 종합상사에서 전세계의 360여개 지점에 주재원 1,300여명, 현지 채용인력 2,900여명

등이 해외마켓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자원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에너지 및 資源의 開發은 높은 리스크, 기간의 장기화,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선불리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종합상사가 정보력과 금융력을 바탕으로 한 오가나이지 기능을 발휘하여 석유 탐사, 석탄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안정적 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상사가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 중 國際化에의 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상사는 수출입을 통한 해외 지점망 확충 등 國際화를 주도하였고 최근에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을 통한 3국간 거래 활성화 등 거래

의 國際化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전문가 및 국제 무역전문가 양성 등 국제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생산을 담당하고 종합상사는 수출입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共存共榮의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수급기업 협의회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정보·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상사가 당면한 문제점

종합상사는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근간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그 사업 성격상 국내외에서 무역·유통·금융·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중소기업 수출 대행의 해외마켓팅과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제공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를 획일적 대기업 규제에 적용시킴으로써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與信規制와

他社持分 참여규제 풀려야

현재 종합상사가 중소기업과의 연계상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제약은 대

〈종합상사의 주요 해외자원 개발 사례〉

석 탄

- 삼성 : 호주 스프링베일 탄광, 호주 뱅갈라 탄광
- 현대 : 호주 드레이턴 탄광, 호주 뱅갈라 탄광
- 럭키금성 : 호주 퀸즈 랜드 엔산 탄광
- 쌍용 : 호주 뱅갈라 탄광

석 유

- 삼성 : 말레이시아 광구, 콜롬비아 육상 광구
- 현대 : 마리브해상 유전, 베트남 빅베어 광구, UAE R.A.K 광구
- 대우 : 리비아 해상 광구, 미얀마 블럭-C 광구
- 쌍용 : 베트남 빅베어 광구
- 선경 : 미얀마 블럭-C 광구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와 타사지분 참여 규제이다. 즉, 지분 참여시 금액이 純資産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40% 이내의 투자이더라도 지분 보유 금액의 300~600%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주식매각 또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야만 주거대출 은행의 투자 승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신규 참여 인수, 資本參與를 금지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종합상사가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하지 않고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상호 지속적 관계 유지와 안정적 공급 및 상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본참여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상사는 국제기업으로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중소기업에 시설 자동화 지원 등 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생산 합작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完製品 구매자금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시켜야

최근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증대를 위해 비계열 대기업까지 무역금융이 확대 운용되고

있으나 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만 무역금융 시혜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종합상사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역금융이 실제 중소기업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상사의 완제품 구매자금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금융 지원 대체 수단으로 운용중인 무역어음제도의 경우에도 제1금융권 이용시 여신한도 관리의 적용을 받고 있고 自社製品에 한정되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요망된다.

한편 종합상사는 직접금융 조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會社債 발행에 있어 회사채가 장기자금 특성을 갖고 있어 발행기업의 규모보다 자금 용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평점기준이 자금의 용도보다도 계열 기업군 여부, 업종 및 발행기업 규모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비제조업 대기업은 자금 용도가 시설투자나 상환 발행이더라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금 증자시 증자 발행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종합상사는 제3순위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금융규모 증대 절실

현지법인이 영업 형태가 다양화되어 단순 수출 에이전트가 아니고, 현지 물품 구매, 현지 판매와 3국간

거래 등을 수행하는 종합회사화하여 현지 금융규모 증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과거 수출실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여유한도 부족으로 인한 영업기회 상실 방지를 위해 과거 1년간 본사 매출액(수출입) 및 지점 3국간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조정하거나 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기업이 해외 투자(현지법인 설립 및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시 한국은행 및 투자기업의 주거대출 은행 또는 그룹 주거대출 은행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한 투자 이행 등을 위해 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해외 부동산 구입시에도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나 주거대출 은행 및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한국은행은 2백만달러 이상)을 얻도록 되어 있고, 승인 신청시 등기부등본·감정서·현지 공관 의견서 등 첨부요구 서류가 많아 承認決定의 지연으로 인해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부동산 구입도 승인기관을 일원화하고 부동산 종류별(사옥·사무실·사택 등)로 구입 한도액을 설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쿼터 배정으로 수입기능

강화해야

대외무역법상 종합상사는 實需要者로 인정되어 수입제한 승인 품목

수입시 협회의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추천 신청시 원료 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시설이 없는 종합상사는 농산물쿼터 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실수요자는 해외시장 정보, 해외 공급원 정보, 해외 구매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효율적인 구매가 어려워 대부분의 수입 물량을 外國商社에 의존함으로써 수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외국상사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합상사에 대한 쿼터 배정으로 수입 기능 강화를 유도하여 외국상사에 의존하지 않는 장기 안정적 농산물 공급원의 확보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더구나 점진적인 농산물 수입 자유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생활과 직결된 농산물의 공급을 외국상사에 의존하는 것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통관련 부동산은 '취득허용대상 부동산'에 포함시켜야

규정상 여신관리 대상 기업은 유통관련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그나마 경쟁력이 약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유통망 확대가 불가능하여 국내시장에서조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외국기업의 부동산 취득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된 유통업·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허용 대상 부동산'에 포함시키고 투자에 대한 자구노력 측면에서도 '취득허용대상 부동산'중 '제품생산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여 유통시장 개방 후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남원

『나라경제』 온라인 구좌번호 변경 안내

『나라경제』의 온라인 구좌번호가 92년 2월 8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좌 번 호	예 금 주
국민은행	070-01-0348-325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상업은행	189-05-073621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농 협	100089-51-056979	국 경 연

※ 지로번호 및 우체국 대체계좌는 종전과 같습니다.

出資總額制限制度, 경제력집중억제 위한 조치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관리과장

최 근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다.

公正去來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액(자기 자본-계열회사 출자분)의 40%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난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 대해 자신의 합리적인 출자능력범위 내에서만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기업의 財務構造를 개선시키는 데 제도시행의 근본취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 억제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종합상사가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根幹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조

한 상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그 사업의 성격상 국내외에서 무역·유통·금융·물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중소기업 수출상품의 해외마케팅과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제공 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 소속회사의 타회사출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보면 제도의 성격상 기업의 출자(투자와는 개념상 구분되어야 함)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약을 주는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합리적인 출자능력범위(純資産額의 40%)내에서만 타회사 출자를 가능토록 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방만하고 무리한 비관련 업종에의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이 스스로 출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나

기업에 우선적으로 출자토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되어 있는 종합상사들은 자기의 출자능력범위 내에서는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응키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얼마든지 출자가 가능하며, 만일 출자능력 밖의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불필요한 출자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新規出資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인 7대 종합상사 중 '92년 1월 현재 4개 회사는 출자여유가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출자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며, 3개 회사는 출자여유가 없어 추가적인 타회사출자나 설립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3개 종합상사의 경우에도 신규로 필요한 사업에 출자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출자금액 중 불필요한 출자(예를 들어 사업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투자유가증권 보유 등)는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투자만 제한할 뿐 해외투자에는 제약 없어

다음으로 國際化·開放化시대에 대응하여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수출상품의 해외마케팅과 경영정보 제공

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나 타회사 출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종합상사의 기능 활성화는 자기 회사의 사업부서를 신설·확장하거나 회사내의 신규투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중소기업에 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出資行爲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도는 국내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한 海外投資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자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종합상사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국내에서의 회사설립 또는 타회사 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의 시행취지인 '무리한 계열기업확장 억제를 통한 경제력집중 완화'라는 정책목표와의 조화를 찾아야 하겠지만, 경제력집중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종합상사의 타회사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논의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60, '70년대의 수출주도 고도성

장과정에서 야기된 바 크며 기업집단의 성장과정에서 종합상사의 역할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계열확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종합상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신축적 운용이나 예외인정은 자칫 무리한 系列擴張을 통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원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불가피



김정연

재무부 저축심의담당관

최 근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종합상사의 기능활성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력의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과,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체에 대한 우대정책 등이 종합상사의 기능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취득시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자구노력 의무 부과로 유통업·창고업 등 유관업종에 대한 진출이 곤란하고, 중소기업과의 연계상 타기업 출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배 이상의 자구노력 의무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둘째, 자금조달측면에서 종합상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금융제도인 완제품 구매자금이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이나 자본금증자 등에 의한 자금조달시 제조업체에 대한 우대로 자금조달이 곤란하고

셋째,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해외투자절차가 번잡할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차입 등 자금조달상

제한으로 해외현지에서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중소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자구노력 완화문제

현행의 자구의무제도는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과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소요자금의 1~6배 상당을 보유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토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하여금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처분 등 자구노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당해기업의 차입금을 줄여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유통업·창고업·유통업이라 하여 특별히 자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재도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을 취득하거나 기술개발관련 연구

소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주력 업체가 신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 지원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는 자구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종합무역상사가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의 자구의무 경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기 투자의 촉진을 적극 유도하는 측면에서 현행 자구의무 부과기준액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금조달상의 제약

완제품 구매자금의 폐지문제

무역금융제도는 그간 수출증대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UR협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인 완제품 구매자금제도를 '87년 8월에 폐지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 바 있으나,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재개하는 문제는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위주로 운용한다는 기본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종합상사의 경우 물품구입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제조업

우대 문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직접금융자원(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가급적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조절기준상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종합상사를 제조업체와 같이 직접금융 자금조달 측면에서 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증권시장의 회복 및 시중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하여 주식이나 회사채의 공급물량의 조절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종합상사 등에 까지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활동상의 제약문제

정부는 그동안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투자절차 등에 관한 외환관리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다. 특히 현행 해외투자절차는 '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시기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폭 간소화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91년중 운용실적을 보면 총 539건의 해외투자 중 84.6%인 456건이 단순요건 확인만의 신고 절차를 거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국제수지 적자 등의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기업투자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성 심사 등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해외투자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절차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과 여타 부문의 자본거래 자유화 추이를 고려하여 계속 간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차입 등은 비거주자간의 대외거래이기는 하지만, 내외금리차를 이용한 현지금융자금의 국내유입 방지와 현지금융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의 방지 및 국내 모기업의 代支給에 따른 외화의 대외지급억제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지금융을 무역·건설용역·원양어로 등 용도별로 분류하여 한도를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은 업체별로 과거 1년간 총수출실적,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입금실적과 연계하여 그 한도가 정해지고 있으며 꾸준히 그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어 무역업, 특히 종합상사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총현지금융의 53.1%('91년 9월말, 잔액기준)인 63억6,100만달러를 무역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상사가 무역업계 현지금융의 70%선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금융의 용도 및 한도의 확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농산물수입 직접참여 바람직하지 않아



김영욱

농림수산부 통상협력2담당관

綜合商社 본래의 설립취지인 해외마케팅 능력향상에 의한 수출증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농산물 수입에 종합상사의 직접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는 穀物(사료용 및 식용 포함)수입에 대해서 현행 수입제도와 종합상사의 참여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종합상사에 직접수입 허용하면 수입곡물 사후관리 어려워

종합상사의 곡물수입 참여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면에서 利點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곡물시장의 경우 소수의 곡물 메이저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穀物市場의 가격불안정과 이에 따른 食糧安保 측면에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종합상사들이 직접 세계곡물 시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시장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상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현황을 보더라도 실제 수입곡물의 상당량을 종합상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론 종합상사에서 직접 수입쿼터 배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입추천기관(생산자단체 등)의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公開競爭入札 방식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종합상사들이 싸게 확보할 수만 있다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참여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요곡물의 수입추천시 종합상사를 직접 '實需要者'에 포함시켜 일정한 쿼터를 배정할 경우, 수입쿼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관련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양은 원활히 수입하여 공급하되,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수입쿼터를 정하여 실수요 업체에 한해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상사를 실수요업체로 인정하여 직접수입을 허용할 것

우 輸入穀物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고, 실수요업체들은 품질 및 가격 면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들여온 곡물을 강제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곡물수입과 관련하여 부여되고 있는 곡물수출국의 수출금융(GSM 102 등), 유산스 등의 혜택도 사실상 실수요업체에서 수입상사로 넘어가게 되어 실수요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합상사가 직접 수입할 경우 실수요업체 수입에 비해 수입곡물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곡물거래는 연간 2억이 넘는 거래량을 10여개의 곡물메이저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므로 우리 종합상사들은 결국 세계 곡물메이저가 공급하는 곡물을 다시 구입하여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마진만 크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구나 종합상사의 購買戰略 실패에 따른 부담도 결국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세계곡물시장에서의 실질적 商圏 구축노력 필요

우리 종합상사들이 세계곡물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독자적으로 곡물을 수집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보다 손쉽고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곡물수입을 이용하기보다는, 장기간의 집중투자 와 전문인력의 육성으로 穀物去來機能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만 곡물시장 직접참가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政府의 일정한 지원 등 안정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82~'86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 곡물회사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 물량에 대해 0.5%의 우대마진까지 제공하며 종합상사의 곡물거래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왜 그 제도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이 시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제기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종합상사의 곡물수입이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 곡물회사의 대리점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여타 무역회사와 종합상사의 差別待遇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점, 둘째, 각상사 내부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의한 손실 발생시 책임을 지고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장기적인 체질배양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일부상사의 경우에는 국제시장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경험을 쌓기도 전에 선불리 뛰어들어 상당한 손실만을 초래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도하에서도 국내 종합상사가 실수요자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상당량('90년의 경우 전체 사료곡물의 32% 공급)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제곡물시장 참여를 위하여 직접적인 쿼터배정이라는 새로운 '特惠의인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곡물시장에서 실질적인 商圏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국립

지난해는 내수진정세 시현, 최근 물가 · 임금 · 고용안정 조짐

권오봉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계획과 사무관

우리 경제는 '89년 이후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급증에 의한 內需 위주의 경제성장이 '90년 이후 9%를 상회하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수입수요를 유발하여 經常收支 赤字로 연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특히 금년도 經濟運用에 있어 성장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내수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경제정책상 여력을 수출부문으로 유도하려는 것도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제운용 성과를 종합하면 성장은 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용면에서 民間消費가 9.0%로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점차 안정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건설투자는 상반기 18.5%에서 하반기에는 7%수준으로 현저한 진정세를 나타내 연간 전체로는 12.3%로 전망되어 '89년 18.5%, '90년 27.9%에 이르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진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수진정 추세를 반

영하여 상반기중 6.5% 상승하였던 消費者物價는 하반기에 3.0% 상승에 그쳐 연간으로는 9.5%로 마감되었다. 상품수출은 물량기준으로 9.5% 증가하여 '89년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수입이 17.8% 늘어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90억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생산 호조세 속에 내수진정 뚜렷

巨視經濟 지표로 나타나는 지난해 실물경제 활동을 보면 12월중 産業生産은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차 생산감소로 전년동월에 비해 7.2% 증가에 그쳐 11월(8.5%)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연간으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내수호조와 선박의 수출증가 등을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生産者 出荷도 노사분규 요인 등으로 12월중에는 9.7%로 둔화되었으나 연간으로는 10.6%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이에 따라 12월중 製造業稼働率도 79.6%로 전월보다 0.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는 80% 수준을 보여 '90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건축허가면적은 12월중 住居用許可(-62.9%)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비해 37.9% 감소하여 8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으로도 건설경기 진정시책에 힘입어 주거용(-16.7%), 상업용(-3.0%)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9.7% 감소하여 '8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설비투자의 증감을 예고하는 國內機械受注額은 12월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9.1% 감소하였다. 연간으로는 민간부문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이 감소하여 전체로는 1.9%의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해외기계 수주를 나타내는 기계류 I/L발급액은 12월중 33.5%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연간으로는 0.1% 증가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89	'90. 上	'90 연간	'91. 上	'91연간전망
경제성장률	불변%	6.8	10.2	9.0	9.1	8.6
(민간소비)	%	10.9	11.5	10.4	9.1	9.0
(건설투자)	%	18.5	34.6	27.9	18.5	12.3
(설비투자)	%	15.2	20.1	18.4	16.3	12.5
경상수지	억달러	50.5	-15.3	-21.8	-58.8	-90~-95
상품수출	불변%	-5.0	2.5	4.6	11.8	9.5
상품수입	불변%	14.2	15.4	13.2	17.7	17.8
소비자물가	比前年末%	5.1	7.4	9.4	6.5	9.5

〈표 2〉 생산·출하·제조업 가동률 동향

(전년동월·동기비, %)

	'90	'91. 上	3/4	4/4	11월	12월	연간
생산	8.9	8.2	5.6	11.0	8.5	7.2	8.3
출하	11.3	10.9	6.8	13.7	12.3	9.7	10.6
제조업 가동률	79.6	80.0	79.4	80.6	80.2	79.6	80.0

〈표 3〉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전년동월·동기비, %)

	'90	'91. 上	3/4	4/4	12월	연간
건축허가면적	31.4	4.3	-8.7	-40.2	-39.7	-9.7
(주거용)	(49.3)	(5.0)	(-6.1)	(-63.6)	(-62.9)	(-16.7)
(상업용)	(1.3)	(0.7)	(-28.5)	(35.1)	(15.9)	(-3.0)
(공업용)	(17.0)	(13.6)	(-7.4)	(9.5)	(7.2)	(6.7)
국내건설수주액	55.8	17.3	8.9	13.9	24.7	13.9

〈표 4〉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전년동월·동기비, %)

	'90	'91. 上	3/4	4/4	12월	연간
국내기계수주액	38.8	-9.7	34.5	-2.6	-9.1	1.9
(공공부문)	(36.1)	(-32.4)	(140.9)	(-32.2)	(-4.4)	(-0.7)
(민간부문)	(39.6)	(-3.4)	(10.0)	(9.2)	(-10.6)	(2.7)
기계류 I/L	41.7	16.3	10.0	-31.4	-33.5	0.1
발급액						

에 그쳤다.

12월중 도소매 판매액과 内需用

消費財 出荷는 각각 7.2, 4.9% 증

가에 그쳐 11월보다 크게 둔화되

었으며 연간으로도 '90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실업률 속에 인력흐름 점진적 개선

경제성장이 8.6%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54만명이 늘어난 반면, 經濟活動人口 增加는 이보다 낮은 52만5천명(2.8% 증가) 증가하여 실업률은 '90년 2.4%에서 2.3%로 낮아져 완전 고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18만9천명이 감소하고 제조업 취업자는 8만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SOC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서는 65만2천명이 늘어나 6.7%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구조는 산업의 서비스화 진행을 반영하여 SOC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建設景氣의 진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 감소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제조업의 자동화 등에 따라 제조업의 '雇傭吸收力'이 점차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조업의 취업자는 '90년의 0.1% 증가에 비해 1.8% 증가로 크게 늘어나고 SOC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 '90년의 17.5%에서 15.2%

〈표 5〉 소비관련지표

(전년동월·동기비, %)

	'91	'91. 1	3/4	4/4	11월	12월	연간
도소매 판매액	12.3	7.3	8.1	9.1	8.7	7.2	8.0
내수용소비재 출하액	15.2	13.6	10.1	11.8	12.0	4.9	12.2

〈표 6〉 최근고용동향

(단위: 천명, %)

	'89	'90(A)	'91(B)	증감(B-A)
• 경제활동인구	17,971	18,487	19,012	525
(증가율)	(3.9)	(2.8)	(2.8)	
(경제활동참가율)	(59.9)	(60.0)	(60.6)	
• 취업자	17,511	18,036	18,576	540
(증가율)	(3.8)	(3.0)	(3.0)	
농림어업	3,420	3,292	3,103	-189
(증가율)	(-1.8)	(-3.7)	(-5.7)	
제조업	4,841	4,847	4,936	77
(증가율)	(3.7)	(0.1)	(1.6)	
SOC 및 기타	9,162	9,816	10,468	652
(증가율)	(6.8)	(7.1)	(6.7)	
• 실업률	2.6	2.4	2.3	

〈표 7〉 '91년 분기별 구인·구직 동향

(단위: 명, %)

		1/4	2/4	3/4	4/4	연간
노동부 직업 안정기관 집계	구일자수(A)	46,610	51,170	39,452	33,231	170,464
	구직자수(B)	18,504	16,094	16,438	18,774	69,812
	구인배율(A/B)	2.52 (2.91)	3.18 (3.80)	2.40 (2.78)	1.77 (2.05)	2.44 (2.89)
반월공단	구일자수(A)	433	646	438	252	1,769
	구직자수(B)	159	162	121	115	557
	구인배율(A/B)	2.72 (2.74)	3.99 (4.57)	3.62 (3.34)	2.19 (2.69)	3.18 (3.34)

註: 괄호 안은 '90년 구인배율

〈표 8〉 '90~'92년 1월중 물가상승

(비전년말, %)

	'90. 1	'91. 1	'92. 1
소비자 물가	1.0	2.1	0.8
도매 물가	0.5	0.6	0.3

증가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내수진정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반영하여 산업간 人力配分面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에서도 인력의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노동부가 전국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집계하는 求人·求職動向을 보면 구일자수 대 구직자수의 비율이 '9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공단의 경우도 求人倍率이 하향추세에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내수의 진정과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업의 人力節減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계속 안정세 보여

금년 1월중 소비자 물가는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가정부임)의 상승과 出荷가 감소한 일부 과일류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前월에 비해 0.8% 상승에 그쳐 최근 3년간 1월 물가 중 가장 안정되었다. 이것은 연말연시 물가 오름세 심리를 단절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방지, 공공요금 조정시기를 연간 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나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및 농축산물

의 안정세가 뚜렷하다.

都賣物價는 前月に 비해 0.3% 상승하여 작년 2/4분기 이후의 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매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에서도 명태 등 일부 수산물이 크게 하락한 반면, 밀감 등 과일류는 다소 높은 상승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작년 5월 이래 하락세가 지속되어 금년 1월중에도 0.5%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작년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안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정부는 금년도 임금안정을 위하여 대기업 등 高賃金分野에서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그 준수여부에 따라 금융·세제상 우대 또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1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정 부투자기관 23개 중 17개 기관이

總額基準 5%이내 임금타결을 완료하고 일정직급 이상 관리직과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민간기업의 賃金交渉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으나 勞總은 통상임금기준으로 1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經總은 총액기준 4.7~6.7%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어 노·사 단 체간 8.3~10.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勞·使·政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년 2월 12일 勞·使·公益·政府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토론참가자들은 근로자주택 문제 해결, 물가안정, 임금인상 자제,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제기 하였다. 특히 勞動關係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가동, 직업안정기능 확충, 嬰幼兒 보육시설 확충, 勞動銀行 설립 지원 등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출증가에도 수입금증으로 수출입적자 확대

수출은 금년 1월중 전년 同期 對比 15.7% 증가한 53억9,2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대 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

〈표 9〉 1월중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1.1월 (증감)	'92.1월 (증감)
수출(FOB)	4,662 (17.7)	5,392 (15.7)
수입(CIF)	6,151 (33.0)	7,300 (18.7)
수출입차	-1,489	-1,907

〈표 10〉 부문별 통화증감 내역

(단위 : 억원, %)

	'91.1월	11월	12월	'92.1월
정부부문	-25,218	12,915	57,044	-17,171
민간부문	22,464	18,247	5,882	17,128
해외부문	-13,071	-1,054	1,999	-1,978
기타부문	22,362	-20,940	-7,032	13,229
총 말 잔	6,537	9,168	57,893	11,208
통 (증가율)	(17.3)	(19.7)	(21.8)	(22.3)
화 평 잔	23,958	9,192	23,913	27,205
(증가율)	(16.9)	(20.2)	(18.3)	(18.1)

〈표 11〉 시중 금리 동향

(월평균, %)

	'91.1월	10월	11월	12월	'92.1월 (1.31)
통안증권수익률	16.60	18.76	17.79	17.60	16.85 (15.15)
회사채수익률	18.50	19.58	19.28	18.98	18.33 (16.90)

차질(1억5천만달러 추정)과 蘇聯 邦 해체로 인한 對蘇經協 수출이 부진함에도 수출이 금년 전망치 12.7%를 상회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몇가지 요인에 힘입은 것이다. 그것은 작년 4/4분기 이후 수출 신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컨테이너가 큰폭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반도체·석유화학·조선·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한 73억달러로 집계되어 지난해 1월중 33% 증가한 데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平均關稅率引下(11.4% → 10.1%)와 輸入自由化 擴大(43개 품목) 등으로 1월중에 집중적으로 통관된 일시적 요인과 민간 항공기 수입, 석유 및 유류제품 도입물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중 수출입차는 19억7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4억1,900만달러가 증가하였다.

향후 작년 4/4분기 이후 L/C 도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I/L 발급은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輸出入差는 1월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의 안정공급하에 금리는 하향 안정세 시현

금년 1월중 총통화 증가율은 평잔기준 18.1%에서 안정되었다. 작년말의 높은 末殘 增加率(21.8%)에도 불구하고 1월중 平殘 增加率이 낮은 것은 계절적 자금수요 감소와 지난해말 재정자금 방출로 증가된 제2금융권의 여유자금이 은행권으로 還流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문은 부가가치세(1조8천억원), 소득세(5천억원) 등의 세입 요인으로 1조7,171억원을 환수하였고 민간부문은 무역금융, 주택자금 및 설날자금 수요로 1조7,128억원이 공급되었다. 해외부문에서는 종합수지 적자로 1,978억원을 환수하였으며 기타부문은 通貨債券의 순상환 등으로 1조3,229억원이 증발되었다.

시중금리는 지난해말 財政資金 放出과 자금수요가 감소되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을 內需鎮靜과 산업경쟁력 회복에 두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다수가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을 감내하는 힘겨운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여건도 여러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新3低의 도래가 예견되는 등 대외 여건면에서 어려움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곧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극복여부는 각 경제주체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우선, 지난 4~5년간 급속히 상승되어온 임금은 대기업 등 高賃部門을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3월 하순경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총선의 물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총통화 증가율의 적정수준 유지와 자금의 消費性部門 流入을 차단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 사례가 없어야겠다.

셋째, 소비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과 에너지 10% 절약, 외식풍조개선 등의 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既樹立한 製造業 競爭力 強化施策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무역에로타개를 위한 면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국제유가, 석유사이클상 하강시점

윤동훈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걸프전쟁이 끝난 '91년 2월말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하게 올랐던 주요 국제원유가격은 겨울철 석유 성수기로 접어든 지난 10월 말을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최대 성수기인 작년 12월과 금년 1월중에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油價, 겨울철 성수기에 오히려 하락

세계적 대표유종인 미국산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작년 12월 둘째주부터 支持線으로 여겨왔던 배럴당 20달러선이 무너졌고, 12월말에는 한단계 더 내려갔으며 금년 들어서도 18달러선을 맴돌고 있다. 18달러선은 걸프전쟁이 종결되기 직전인 '91년 2월말 이래 최저치이고 작년 4/4분기중 최고였던 10월 18일의 24.2달러에 비하면 약 25%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였던 '90년 8월 2일 걸프사태발생 이전인 7월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겨울철에 강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하락하고 있는 주원인은 기본적으로 세계석유수급이 크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非OPEC의 생산은 침체를 보이는 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자 전세계의 총공급량도 늘어나고 있다.

OPEC의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의 실제 생산량은 하루 2,270만배럴, 2,350만배럴로 자신들이 결정했던 공식 산유쿼터보다 각각 40만배럴, 120만배럴 초과하였다. 이어 4/4분기 공식쿼터는 전분기보다 135만배럴 많은 하루 2,365만배럴로 합의하였지만 실제 생산량은 10월 2,380만배럴, 11월 2,410만배럴, 12월 2,420만배럴로 각각 하루 15만배럴, 45만배럴, 55만배럴이나 공식쿼터를 상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구소련의 석유수출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소련의 석유생산은 '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작년 4/4분기에 하루 1천만배럴에 이르렀으나, 대외 석유수출은 작년에 하루 평균 약 200만배럴에 달해 소련내의 혼란스러운 경제사정이나 석유감소추세에 비추어보아서는 비교적 안정된 물량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석유수급사정 대폭 완화

이와 대조적으로 수요측면에서는 세계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경기후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호조를 보였던 일본·독일마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쇠퇴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석유수요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석유수요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OECD)의 석유수요량은 '91년 3/4분기 동안 하루 3,720만배럴에 불과, 전년동기보다 하

루 100만배럴 감소하였고 4/4분기도 3,880만배럴에 그치고 있다. 통상 동절기 석유수요는 하절기보다 하루 약 200만~400만배럴 더 증가함으로써 계절적인 유가상승 압력요인이 되어 왔다.

결국 '91년 2/4분기와 3/4분기의 세계 석유수요는 하루 6,500만배럴, 6,520만배럴인 데 비해 공급은 6,590만배럴, 6,640만배럴로 초과공급량이 90만배럴, 120만배럴에 달하였고, 4/4분기에도 수요가 6,720만배럴이나 공급은 6,740만배럴로 하루 20만배럴의 초과공급량이 생겼고, 여기에다 여름철에 비축하였다가 겨울철에 방출하는 在庫油의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공급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금년 1/4분기의 세계 석유수요가 당초의 하루 6,840만배럴에서 6,810만배럴로 30만배럴 하향 수정되자 시장에서의 공급과잉감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수급요인 외에 국제유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중에서 사우디의 저유가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걸프사태를 계기로 국제 석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안정공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석유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사우디가 석유공급을 늘리자면 석유수요가 늘어야 하고,

수급요인 외에 국제유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중에서 사우디의 저유가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걸프사태를 계기로 국제 석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안정공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하려면 유가가 낮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석유수요가 저유가를 통해 증가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사우디는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에 일어난 고유가현상은 '80년대 전반내내 세계석유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86년초부터의 저유가현상은 '89년까지 연평균 하루 100만~200만배럴씩 세계 석유수요를 급증시켰다.

저유가 때 세계석유수요 급증

'90년 하반기 걸프사태로 촉발된 30달러 이상의 고유가현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소비국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만들었다. '90년 4/4분기의 선진국 석유수요는 당초 예측치보다 하루 150만배럴 격감함에 따라

세계석유수요는 하루 6,590만배럴에 그쳤으나 공급은 6,700만배럴에 달해 110만배럴의 공급과잉이 발생하였다. 이만큼의 과잉규모도 정치·군사적 위기국면에 가리웠으나, '91년 1월 17일 걸프전쟁이 발발, 승패가 확실하게 판가름나자 시장불안감이 일거에 해소된 대신 수급상 공급과잉요인이 전면에 대두하였고, 국제유가는 WTI기준 '91년 1월 16일 배럴당 31.2달러에서 1월 17일 21.4달러로, 두바이기준 25.3달러에서 14.1달러로 각각 급락하였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제유가는 WTI기준 평균 21달러선, 두바이기준 16달러선으로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도 세계 석유수요는 걸프사태 후유증과 경기후퇴가 겹쳐 하루 10만배럴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 사우디는 현재 명실상부하게 OPEC내 盟主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세계 제일의 석유수출국으로서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십분 활용, '90년 7월 OPEC의 목표가격 3달러 인상을 마지못해 수용하여 야기된 고유가 불안을 해소하고, 세계 석유수요가 본격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저유가가 분명히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석유소비국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우디가 저유가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지난해 수차례의 OPEC 회의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91년 2/4분기 동안 7개 유종으로 구성된 바스켓 현물가격은 배럴당 17달러선을 기록, OPEC이 지향하고 있는 21달러 목표가격을 4달러나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91년 6월의 제89차 OPEC 총회는 3/4분기의 생산쿼터를 2/4분기와 같은 하루 2,230만배럴로 결정하였다. 목표가격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減産을 단행해야 했음에도 사우디는 일부 회원국의 감산론을 배격하고 일관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특히 OPEC은 지난해 3/4분기부터 총량에 대해서는 결정하되 개별 쿼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파행적인 산유쿼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회원국에 대한 개별쿼터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우디는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기술적·정치적 애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쿼터 산정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나 사실은 사우디가 겨냥하고 있는 저유가정책이 OPEC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석유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약세를 크게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석유사이클상 저유가현상 재도래

사우디의 저유가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석유사이클상 저유가시대가 재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장기 유가변동을 살펴보면, '73~'74년의 제1차 석유파동 때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폭등하였고, '79~'80년의 제2차 석유파동시 30달러의 고유가시대가 개막되었으며 '86년초 유가대폭락 이후 '90년 상반기까지 WTI기준 15~20달러의 저유가현상으로 바뀌었다. '90년 하반기 걸프사태시 3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였다가 '91년초 다시 하락하기 시작, 금년 1월중 WTI 기준 배럴당 18달러선(두바이기준 15달러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약 5년을 주기로 한 돌출성 사건이 터졌고, 국제유가는 단기간 급등을 보였다가 그후 장기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때마침 이번 겨울철의 유가하락 市況은 사우디가 생산조절자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확대정책을 선언하면서 하루 수백만배럴을 더 생산하자 국제유가가 대폭락 하였던 '80년대 중반과 유사하다. 현재 사우디는 OPEC의 전체 생산쿼터에는 합의해 주고 있으나, '91년 하반기부터 개별쿼터 산정에는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루 약 850만배럴의 생산량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한겨울철에도 약세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우디는 걸프사태 이전에 산유량이 하루 550만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걸프사태 이후 300만배럴이 늘어난 약 850만배럴에 달하고 있는 등 걸프사태가 사우디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약세를 크게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동의 유전지역을 장악하고 고유가시대로 이끌려는 야망으로 걸프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 이

라크는 '91년초 걸프전쟁에서 완전 패배, 아직까지 UN에 의해 禁輸措置를 당하고 있다. 걸프사태 이전에 하루 314만배럴의 생산쿼터를 배정받은 이라크는 '90년 7월 OPEC 회의에서 군사력을 앞세워 쿠웨이트와 UAE가 유가하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OPEC의 목표가격을 당시의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시켰던 것이다.

강경과 이라크의 몰락과 쿠웨이트의 수출재개

이라크는 걸프전쟁시 파손된 산유설비를 복구하여 하루 15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금수조치 때문에 내수용으로 하루 40만배럴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는 향후 6개월간 하루 50만배럴씩 수출할 수 있다는 UN의 부분적 해제조치를 거부하고 있으나, 진행중인 UN과 이라크간 추가협상이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의사에 따라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유력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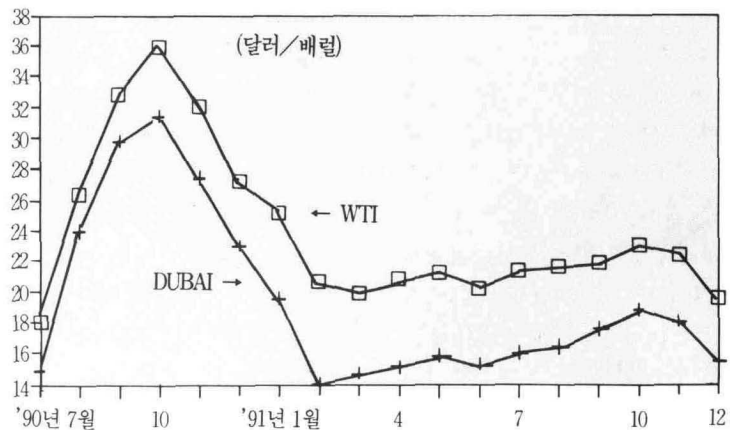
반면 이라크에 의해 약 7개월간 점령당했고, 700여개의 油井을 완전 진화한 쿠웨이트는 벌써 하루 약 60만배럴을 생산하여 일부를 수출하고 있다. 금년 중반경 하루 100만배럴 이상을 생산

이번 겨울철의 유가하락 市況은 사우디가 생산조절자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확대정책을 선언하면서 하루 수백만배럴을 더 생산하자 국제유가가 대폭락하였던 '80년대 중반과 유사하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의 신규물량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과거 국제석유시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유량을 증가시켰던 生産重視派의 하나였기 때문에 쿠웨이트의 재등장은 시장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사우디의 증산체제 고수 등 수급상으로 보나 석유사 이클상으로 보나 금년은 수급이 상당히 순조로워 두바이기준 배럴당 15달러 내외를 중심으로 한 저유가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 주요 국제원유가격의 최근 추이



부시대통령의 '92 연두교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최근 美國의 기술정책동향

박영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조사실장

미국은 오랜 역사를 두고 자 연발생적으로 산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정부의 지원은 주로 국방·기초과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日本이나 유럽 先進諸國에 비하여 비체계적이고 분산된 정책체계를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각료급의 전담행정부서는 없으나,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국장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기타 행정부서로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SF), 우주개발연구를 지원하는 항공우주국(NASA) 등이 있으며 국방부·상무부·에너지부 등에 차관보급 과학기술 전문관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분권화된 과학 기술행정체제를 가지고 국방 및 기초과학 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군사기술 및 우주개발 프로그램 등 대형 R&D 프로

젝트의 성과가 연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간접지원 방식에 의존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80년대 이후 자동차·전자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낙후를 초래하여 급격히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제조업 부문의 對日 경쟁력 저하현상의 원인을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의 협력체제 미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기술개발에 의 정부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대동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지원 강화 움직임은 지난 1월 28일 부시대통령의 '92 年頭敎書'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의 항구화 및 연간 760억달러 이상의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emerging technology)資金 支援政策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정책에 관한

미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술정책의 기초를 시장 메커니즘에 두고 정부의 개입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미국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및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 미국내 景氣의 침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기조의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政策基調의 수정은 얼마전 미국 상무부의 기술담당차관보 (Deborah Wince-Smith)의 의회 증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최근의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미국은 민간의 힘만으로 세계를 리드하기 어려우며, 외국의 주요국들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技術需要가 미국 국내시장에서 결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 障害를 제거하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무부는 외국이 경제·기술·통상정책을 연계운영하면서 산업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기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기술정책 전환의 당위성이 있음을 議會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행정부의 기술정책에 관한 입장의 변화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강화를 위하여 年頭敎書를 통해 보다 강력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그간 미국의 기술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오던 미국내 산업계 및 의회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종래의 규제적인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助長的 산업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美議會 역시 행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기술개발 진흥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의회가 독자적으로 기술우월법(Technology Preeminence Act)·국가주요기술법(National Critical Technology Act)·첨단제조기술진흥법(Advanced Manufacturing Act)·연방기술진흥법(Federal Technology Strategy Act)·제조업 전략법(Manufacturing Strategy Act)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종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온 산업 및 기술정책의 일

대 전환을 촉구해 오고 있다.

결국 미국은 종래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民間主導'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체제를 고수해 오면서, 국방 및 기초과학 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왔으나, 최근의 對日경쟁력 저하에 따른 산업계 및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92 연두교서'에서는 국방비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산업부문의 신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의 변화는 곧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기술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혁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최근 쇠퇴일로에 있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술드라이브정책에 발맞추어 최근 일본정부에서도 '新世紀를 향한 과학기술의 종합적 기본방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과학기술회의(의장:미야자와 수상)의 답신에 부응하여 과학기술청 주관으로 '과학기술예산 倍增 7개년 계획'을 成案中이며, 대만정부 역시 향후 6년간 1,500억 대만 달러(한화 4조 5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산·

학 공동 연구지원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미 행정부가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및 획기적인 기술개발 투자 증액 등을 통하여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연두교서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상품시장에서의 무역마찰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自國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경쟁'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기술개발 관련 국제질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함께, 각종 지원·유인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特化技術의 개발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유리한 位相 확보에 기술정책의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전용부담금제도

국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에 기본이 되는 토지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토지를 전체국민의 이익, 즉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公共財의 성격을 강조하여 현행 憲法 제23조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22조에서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전용으로 私有化되는 이익 환수

토지의 公共性을 강조한 헌법정신은 해방 이후부터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일찍이 3ha 이상의 농지소유제한, 농지전용제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국토의 용도지역제도, 도시의 용도지역제도 등 토지의 공공성에 중점을 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과열되었던 토지투기를 억제하

기 위하여 '89년 및 '90년에 토지초과이득세제·개발이익환수제·종합토지세제·택지소유상한제 등 일련의 土地公概念 관련법률을 입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오고 있다.

토지공개념 관련제도 중 開發利益還收制度는 토지의 形質變更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특정인에게 사유화되는 개발이익 중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불로소득분을 환수, 낙후지역의 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지·산림전용부담금 제도는 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사유화될 不勞所得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즉 농지·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률 체계 및 농지·산림보다 다른 토지의 가격이 월등히 높은 현실하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농지나 임야의 전용허가 등을 받아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경우 평균 다섯배, 많게는 수십배에 달하는 地價上昇이 수반된다. 현재 이와 같은 전용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유



김선오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장

화를 막는 제도로서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농지(산림) 전용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으로 사유화되는 轉用利益을 환수하여 이를 사회적 형평 배분차원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농어촌과 저생산 산업부문인 농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2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반영되어 도입된 것이다.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전용허가·동의 등을 통한 농지의 형질변경·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용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지에 대한 假需要現象 및 이와 관련된 地價의 연

쇄적 상승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억제함으로써 전용이익을 겨냥한 농지전용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둘째,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용이익 중 사회적 형평배분 차원에서 불로소득분을 흡수하여 상대적 落後地域인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상대적 저생산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기본목적들을 두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전용부담금은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附加價値稅額 전액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91. 11. 22 공포)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歲入으로 계상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농민의 영농편의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 경지정리·농업용수 개발 및 밭 기반정비사업 등 농지의 기반정비, 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확충, 과수·채소·화훼 등 부가가치가 큰 현대적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등과는 서로 달라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수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의 토지가격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의 차액 중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 지가상승분의 50%를 환수, 이를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제도로서 이익이 발생된 연후에 징수하는 발전된 형태의 公用負擔金의 일종이다. 반면에 轉用負擔金은 국민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 차원에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농지보다 다른 토지가격이 높은 실정하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전용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인하여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나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시점에 전용

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전에 부과·징수, 이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50%는 당해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歸屬되는 반면, 전용부담금은 일정비율의 부과·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한편 農地轉用負擔金은 전용시점에 전용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점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와 유사하지만, 농지조성비와 代替造林費가 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나 훼손되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인 반면, 전용부담금은 농지 및 산림전용으로 특정인에게 귀속될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또한 농지조성비는 논인 경우 m²당 3,600원(평당 11,900원), 밭의 경우 2,160원(평당 7,140원), 대체조림비는 ha당 399만원(평당 1,320원)으로서 定額制로 부과되는 반면, 전용부담금은 당해 농지 또는 산림

의 公示地價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定率制로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부담금액을 합리적으로 부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제2항에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地價公示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해당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규정된 부과상한은 공시지가의 범위 이내이다. 예컨대 평당 2만원 하는 농지의 평당 전용부담금은 2만원, 평당 1만원 하는 임야는 평당 1만원이 당해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의 상한이다. 따라서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수준에 따라 총부담금액이 좌우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전용부담금의 부과율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용부담금 제도의 도입목적인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投資財源 마련과 전용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부담, 투기목적의 농지전용 억제,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적절한 환수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과율은 전용하고자 하는 당해 농지(산림)의 공시지가의 20% 수준이다.

즉, 농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시설 설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적용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과 금년도 예산에 전용부담금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歲入財源으로 2,500억원이 計上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준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부과율이 대략 20%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되겠지만, 전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1. 11. 22 공포)에서는 轉用負擔金의 납입의무자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

농지전용부담금제도는 농지전용으로 사유화되는 轉用利益을 환수하여 이를 농어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산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2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반영되어 도입된 것이다.

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 결과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도 면제하게 된다. 즉, 생활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정면적 이하의 농가주택, 창고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고자 농지를 전용하는 농민, 도로·철도·다목적댐 등 공용·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전용부담금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에도 기여

농지전용부담금제도는 비정상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法制化된 토지공개념 관련법률 정신이 농지부문에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째, 그동안 농지전용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특정인이 누리던 이익을 還收,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한 자와 전용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상의 형평을 도모하고, 둘째,



환수한 전용이익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며, 셋째, 不要不急한 농지전용을 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농지면적의 감소를 막고, 농지투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과 농어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보다 강한 체질의 농업, 활기찬 농어촌으

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의 시련은 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연대로 설정, 42조원을 농어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민의 의지, 생산자단체의 시장확대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우리 농업도 세계 속의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농림**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시책

경제정책해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높은 임금상승과 성장률을 상회하는 소비증가 그리고 건설경기의 과열 등으로 성장률은 높았으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91년에는 96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활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技術力이 부족한 데 있다.

우리의 기술수준을 보면 전체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매출액 중 기술개발 투자비중도 2.14%로 일본의 3.29%에 비해 훨씬 낮아 주요 핵심기술을 자체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외 기술의존도가 22.3%로서 일본의 6.6%, 독일의 6.2%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의 경우 조립·가공기술 등 일부 생산기술은 선진국수준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설계·소재·고기능부품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이 취약하여 신제품창출, 공정혁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半導體의 경우 세계 2위의 기억소재 생산국이지만 핵심기술의 자립도는 설계가 40%, 재료

10%, 반도체장비 4%에 불과하여 만약 선진국이 반도체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제품생산의 기초가 되는 정밀가공·금형·주단조 등 재래기술도 5~10년 낙후되어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보장벽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수준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産業技術政策은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기술인력을 양성하며 기술의 이종구조문제 즉, 첨단기술과 재래기술의 연계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적 기술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産·學·研 공동연구 및 산업내 협력강화로 모든 기술개발역량을 총집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재동
상공부 산업기술과장

여기서는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지원정책 중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의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조건,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자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산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술분야와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는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8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과제는 첫째, 산업의 國際競爭力 강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애로기술 및 요소기술과제, 둘째, 국제수지 개선효과 및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先導的 첨단산업기술과제, 셋째, 국내의 연구기관·기업 등이 외국의 연구기관·기업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기술 개발과제 등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태 및 기업수에 따라 차등

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2개 이상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총 개발비의 80%까지, 1개의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및 기업간 공동개발을 보다 우대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를 보면 매년 상공부가 실시하는 공업기술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애로기술과제를 선정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기술과제에 대하여 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35개 기술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소요개발비를 지급하게 된다. 公 告된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나 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政府出捐研究機關, 산업기술 연구조합, 대학,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과의 공동개발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과제가 선정되면 개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협약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2년 이상 수행되는 과제는 매년 협약기간 종료후 반드시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한다. 기업은 총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

금 및 現物投資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과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완료후 5년 이내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이자 없이 원금만 기술료로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로 '87~'91년간 1,753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727억원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2월말경 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접수 및 개발계획심의는 생산기술연구원이 담당하게 된다.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공업발전기금 우선 지원

공업발전기금은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이 기계·전자·전기부문의 시제품개발과 소재개발 및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長期低리로 융자하여 주는 자금이다. 동 기금은 시제품 개발사업과 첨단산업기술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시제품개발사업의 융자대상은 기계류·전자·전기 기기 및 동 부품과 신소재의 시제품 또는 섬유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상공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으로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상공부장관이 기계류·부품·소재개발 대상으로 고시한 품목의 개발사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융자하고 있다.

첨단산업기술 개발사업의 융자대상은 상공부고시 제 90-26호('90. 6. 1)에서 정한 첨단산업의 업종 및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우선융자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으로 공고한 과제,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공업발전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각 부문별 취급기관에 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취급기관에서는 신청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검토, 現場實査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확정하며 확정된 기업은 융자취급은행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사업계획을 신청받는 기관은 기계시제품부문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자시제품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섬유신소재는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첨단산업기술은 생산기술연구원이며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동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6.5%이며 2년의 据置期間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시제품개발사업은 동일인당 한도가 3억원이나 첨단산업기술 개발사업은 한도가 없고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되어 있다. '92년도 지원금액은 총 760억원으로서 기계시제품부문이 135억원, 전자시제품 65억원, 전기시제품 10억원, 소재개발이 50억원이고 첨단산업기술개발이 500억원이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도 기술개발자금 융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성된 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에서도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조건은 공업발전기금과 동일한 연 6.5%, 2년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 상환, 동일인 한도 3억원이며 융자비율은 소요비용의 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그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12월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이며 常時從業員 수가 5인 이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최근 결산연도의 負債 비율이 80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조정기금은 공업발전기금과 같이 기업의 지원신청, 취급기관의 심의 및 확정, 융자취급은행의 융자에 이르는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취급기관은 기계시제품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자시제품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섬유신소재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며 기타분야의 시제품·신소재·산업기반기술·공정기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92년도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530억원이며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기술개발활동에 올해 총 1조 3,600억원 지원

이와 같이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의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 등 國策銀行을 통해서도 금융

정부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기반기술사업비,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총 1조 3,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92년에는
 그 규모가 1조 3,6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시급한
 데 여기에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지
 원자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남원지]

〈표〉 각종 기술개발자금 지원 내역

사 업 명	주관부서	취급기관	'92예산 (억원)	비 고	문 의 처
출 연 금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상 공 부 생산기술 연구원	727	○중소기업우대, 80%까지 지원	상공부(산업기술과) 생산기술연구원 500-2563 563-6891
	특정연구 개발사업	과 기 처 한국과학 기술재단	1,300	○국책연구, 기업연구, 기초연구 등 구분 지원	과기처(연구관리과) 503-7627~8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동 자 부 에 너 지 관리공단	69	○기업주관 60% 이내 ○전문연구기관 주관 100% 이내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개발센터) 583-4441
지 원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국 민 은 행	—	○중소기업이 전문연구기관 에 의뢰하는 연구비의 80%까지 지원	국민은행 (종합상담실) 773-5168
원	생산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체 신 부 전자통신 연 구 소 동 자 부 한국전력	200 200	○중소기업우대, 80%까지 지원 〃	전자통신연구소 (사업관리실) 820-6715 한국전력(연구개발부) 550-5873
	생산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재 무 부 산업은행	818	○소요자금의 100% 이내, 한도 매년 10억 ○8%, 3년거치 8년 이내	산업은행(자금부) 398-6146
금 용	공업발전기금 개발사업	상 공 부 生技院 등 관련단체	760	○6.5%, 2년거치 5년 이내 ○첨단산업은 무제한	생산기술연구원 기계공업진흥회 563-6891 780-4111~4
지 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 기술개발자금	상 공 부 生技院 등 관련단체	530	○3억원 이내 ○6.5%, 2년거치 5년 이내	전자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553-0941~8 551-1481 783-9611~8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재 무 부 중소기업 은 행	1,700	○소요자금의 100% 이내 ○10%	중소기업은행 (여신기획부) 771-50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재 무 부 국민은행	250	○5억원 이내 ○10%, 1~3년 거치기간 10년 이내	국민은행 (기업금융과) 754-1211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재 무 부 국민은행	7,000	○소요자금의 100%, 한도 없음 ○12%, 3년거치 8년 이내	산업은행(심사부) 732-4141

지역난방의 보급현황과 추진방향

우리나라 주택의 熱供給方式의 변천과정을 개관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방마다 아궁이를 설치하여 나무나 연탄으로 난방하던 것을 보일러 보급에 따라 주택단위로 熱源을 일원화하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확대보급에 따라 대형보일러를 통상 2천세대 이내 범위까지는 한 보일러에서 집중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중앙난방방식이 보급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大型熱併合發電方式에 의하여 수만 세대를 한 지역으로 묶어 집중된 熱源에서 열을 일괄 공급하는 지역난방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地域暖房이란 일개의 도시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상가·사무실·학교·병원 등 다수의 건물에 개별적인 난방용 熱源施設을 갖추지 않고 일개소 또는 수개소의 집중된 열원시설에서 배관망을 통하여 각 需用家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1877년 미국 뉴욕주 록포트에서 中央集中式 보일러를 이용하여 인근 수개의 건물에 暖房熱을 공급한 것을 시초로 하여 현재 서구 여러 도시들의 일반적인 난방열공급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열생산방식으로는 熱併合發電(C. H.P.: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方式과 비열병합발전방식인 熱專用플랜트·燒却爐·산업

폐열·열펌프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主 方式은 열병합발전방식으로 우리나라의 木洞이나 서울화력발전소도 이에 해당된다.

열병합발전방식은 동일 熱源으로써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방식으로서 단일 열발생시설로부터 생산된 高温蒸氣를 이용하여 터빈발전기에서 電力을 생산하고 이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추출하여 난방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발전만 하는 일반발전소의 熱效率이 40%미만인 데 비하여 열병합발전방식의 에너지 이용효율은 80%이상까지 높일 수 있는 설비로서 수도권 신도시의 열원시설도 열병합발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역난방은 기존 난방방식과 비교해서 설비의 대형화와 熱輸送配管網 및 각종 制御設備 등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기후적인 조건으로 暖房度日(heating degree days)이 연간 2,500度日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온도 18℃를 기준으로 2,000도일 이상일 경우 지역난방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단계로 2,500도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의 난방도일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가 2,476도일, 서울



유동욱
동력자원부 에너지지도과장

2,869도일이며 외국의 경우 코펜하겐 3,033도일, 파리 2,395도일, 헬싱키 4,060도일이다.

다음은 熱負荷로서 煖房面積이 30만㎡(30평 기준 3천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蒸氣需要 25t 이상으로 최소 열병합발전 규모를 만족시키는 규모이다. 또한 熱密度가 20 Gcal/Km².h 이상이어야 하는데, 즉 일정지역 이내에 아파트나 빌딩 등 열수요가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끝으로 熱輸送損失 및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動力費 등을 감안하여 각 열수송관은 20km 이내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기존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난방방식 아파트로서 配管構造와 斷熱狀態 등 건물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급시설의 건설현황

현재 지역난방방식에 의하여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木洞地域과 여의도·반포·동부이촌동 등 남서울지역 두 곳이다.

목동지역은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서울시가 '84년 8월부터 '87년 12월까지 361억원을 투자하여 2만 kw급 열병합발전소와 1만5천t/日 규모의 쓰레기 燒却爐를 건설하여 현재 지역내 2만6,600세대와 공동

주택 85개의 빌딩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남서울 지역은 서울시·韓電·에너지관리공단이 共同出資하여 지역난방사업 전담회사로 설립한 韓國地域煖房公社가 공급주체로서 '86년 6월부터 '87년 10월 사이에 562억원을 투입, 기존의 서울 화력발전소 4·5號基를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개조하여 주변의 4만200세대와 114개 빌딩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의 地域煖房供給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盆唐·坪村·山本·一山·中洞 등 5개 신도시는 총 1,571만평의 면적에 38만 1,4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27만 6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大役事로 5개 신도시에 소요되는 난방에너지는 총 2,943Gcal/h로 추정된다.

新都市 이외에도 加陽·傍花·水西·大峙의 서울시내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果川·江南·瑞草 등 기존 주택밀집지역 11만8천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신도시 열공급시설은 盆唐·坪村·山本이 '92년 12월, 中洞은 '93년 10월, 一山이 '93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신도시에 건설될 熱源設備은 앞에서 언급한 열병합발전방식으로 한국 전력에서 盆唐·坪村(一山은 坪村

에서 공급)·一山·中洞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신도시에 소요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전기생산 이후 발생하는 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주택·상가 등에 난방열로 공급하는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연료는 수도권 大氣公害對策의 일환으로 淸淨燃料인 LNG를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LNG 主供給管은 한국가스공사가, 열병합발전소는 韓國電力公社가, 그리고 열공급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신도시의 에너지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신도시지역의 업무지구에는 겨울의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에 냉방도 할 수 있도록 건설중에 있다. 즉 지역난방의 계절별 수요특성상 동절기에는 난방 및 給湯의 수요가 급증하나 하절기에는 給湯需要만 있는 반면 하절기 냉방수요를 전기에 의존함으로써 하절기 피크負荷를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규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하절기 電力피크負荷의 일부를 신도시내에는 열병합발전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을 통하여 감당함으로써 열병합발전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發電所 투자비의 일부를 줄일 수 있

도록 제반시책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신도시 건설계획상 업무지구
가 포함되어 있는 盆唐·坪村·一
山·中洞 4개 도시의 상업용·업무
용 및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냉방
면적은 8백만㎡로 冷房容量은 31만7
천USRT로 이에 따른 電力代替效
果는 11만 7천Kw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와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

지역난방의 효과로는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의 제고와 대기오염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의 측
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병합발전방식이 일반 발전방식에
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시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료절감 효과
도 높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설계
시부터 지역난방을 도입한 木洞의
경우를 살펴보면('89년도 사업실적
결과),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연
간 연료사용량이 43.86ℓ 인 반면 준
공시기가 비슷한 월계지구 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10개 단지의
평당 연료사용량은 62.72ℓ 로 목동
지역이 기존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
비하여 30.1% 정도의 연료가 절감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대기오염 개선효과로서 지
역난방은 단일오염 排出源(煙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電氣集塵機
등 고성능 오염물 배출방지시설 설
치가 가능하여 기존 중앙난방방식에
비하여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목동지역
을 대상으로 미국 환경청의 환경영
향평가 프로그램(CDM-2.0)에 의
하여 지역난방, 기존 중앙난방, 환
경개선식 중앙난방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투자비와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바에 의하면 지역난방방식은 기존

중앙난방방식에 비하여 大氣汚染防
止 시설투자비를 훨씬 절감시키고도
대기오염을 대폭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木洞에 기존 중앙난방방
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72개의 보일
러와 굴뚝을 설치하여야 했고, 대기
환경조건을 지역난방 도입시와 비슷
한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난방식 보일러 각각에
電氣集塵機와 굴뚝을 설치하여야 하
는데 이 때에는 약 180억원의 環境
汚染防止施設 비용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지역난방공급 추진현황

	공급대상 (세대수)	투자비 ¹⁾ (억원)	공급규모		공정률 ('91. 12 현재)	최초 열공급시기
			열 (Gcal/h)	전기 (Mw)		
성남 분당	97,500	1,079	860	600	77.72	'91. 9
평촌·산본	97,000	849	600	480	85.21	'91.11
고양 일산	119,400	1,162	849	600	40.07	'92. 8
부천 중동	67,500	855	634	450	40.12	'92.12
강남·서초	93,900	1,060	478	분당연계	41.96	'91.10
가양·방화	24,400	314	120	목동연계	25.78	'92. 6
계	499,700	5,319	3,549	2,130	—	—

註: 1) 열병합발전소 건설비 제외

〈표 2〉난방방식별 대기오염방지 시설투자비 및 오염도

	기존 중앙난방	지역난방	환경개선식 중앙난방
투자비(억원)	55.2	37.5	216
연돌	50.4	10.6	144
집진기	4.8	26.9	72
오염도(최고치)			
먼지(μg/m ³)	2.67	0.41	0.38
아황산가스(μg/m ³)	29.4	6.7	8.4

지역난방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기후조건 · 주택밀집도 · 열생산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되는데, 현재 총 주택의 1% 수준에서 2001년까지 首都圈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하여 155만세대인 15%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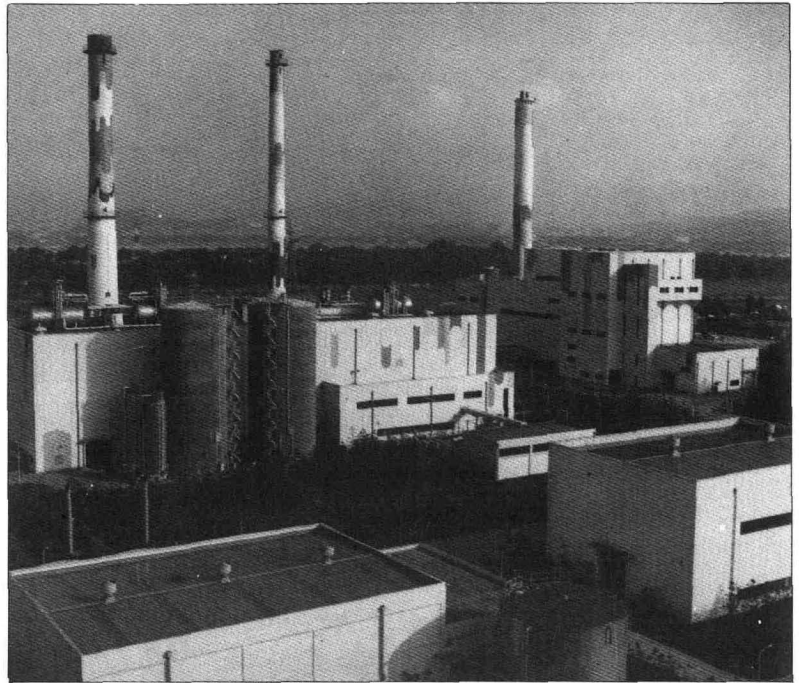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효과로서 지역난방은 기존의 중앙난방방식이 간헐난방인 데 비하여 24시간 연속난방으로서 항상 熱을 공급받을 수 있어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층별 · 세대위치별 난방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일러시설이나 유류저장탱크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안전성 확보 및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굴뚝 없는 도시로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목동의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3개의 大型高煙突이 중앙난방식의 72개소 굴뚝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2001년까지 총주택의 15%까지 확대 보급

지역난방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기후조건 · 주택밀집도 · 열생산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되는데, 油價 18\$/Bbl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中部圈 이상 1만 2천세대, 中南部圈 1만 4천세대, 南部圈 1만 5천세대를 기준으로 도입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총 주택의 1% 수준에서 2001년까지 首都圈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하여 155만세대인 15%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財源調達方法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에너지 소비절약계획 · 長期電源開發計劃 등에 반영하며, 發電所餘熱 · 산업폐열 · 쓰레기 燒却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의 확대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집단에너지

관련규정을 확대 보완하여 '91년 정국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였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 韓電 · 에너지관리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韓國地域暖房公社를 집단에너지 사업법상 公共法人으로 확대 개편하여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육성책과 公益事業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닐링

성인병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질병발생 양상이 급만성 전염병으로부터 암 등 비전염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90년에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0.1%인 3만8,423명으로서 사망원인순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89년도에 비해 약 5%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統計廳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암을 포함한 成人病이 10大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는 소아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병 즉 만성퇴행성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과감한 투자와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암등록사업의 강화

정부에서는 전국의 암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암의 기초연구와 암 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암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암 등록사업은 그동안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나 '80년부터 국가관리의 癌登錄事業이 시작되어 '90년 현재 73개 專攻醫 修鍊病院이 참가하고 있으며, '90년 6월 31일 현재로 35만1,410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병원이 암 등록사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암 발생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전체인구 대비 암 발생률과 생존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든 대상병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 암 등록 사업을 통하여 유용한 政策資料를 적극 개발하여 나갈 것이다.

대국민 홍보계몽활동

암 등 성인병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 습관·흡연·육체적 활동의 감소·바이러스 등에 의한 感染症 및 환경공해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병은 감염성 질환과는 달리 질병의 경과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발병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



안상우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장

이나 만일 발병이 된 경우에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시 치료에 임한다면 완치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성인병의 예방과 早期檢診事業에 역점을 두고 홍보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며 '88년부터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무료강좌와 홍보자료의 제작 보급 및 자궁암 등의 조기검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하고 있다.

성인병 전문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성인병은 종류가 다양한데다 그 관리방법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진료기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9개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특수질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약 28억엔의 OECF 借款資金을 앞선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인병에 대한 전문진료 및 연구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인병 전문치료 및 연구기관 설립

암 등 성인병 관리를 위하여 각종

〈표 1〉 주요 사망원인('90년 기준)

(단위 : 명, %)

	계	惡性新生物	사 고	뇌혈관질환	심장병	고혈압성질환
사망자수	191,010	38,423	26,322	26,320	16,615	12,386
구 성 비	100	20.1	13.8	13.8	8.7	6.5

註 : 신고된 사망자 중 사인분류가 가능한 사망자수임.

〈표 2〉 惡性新生物(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추이

(단위 : 명/인구 10만명)

	'81	'90	증가율(%)
위 암	23.7	31.5	32.9
간 암	11.4	24.1	111.4
폐 암	4.5	14.5	222
기 타	19.2	40.3	109.9
계	58.8	110.4	87.8

〈표 3〉 암 등록사업 실적

(단위 : 개소, 명)

	'88	'89	'90	'91
참가병원수	58	63	72	73
등록 수	36,715	32,449	42,135	43,205

〈표 4〉 관련단체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88	'89	'90	'91	'92(계획)
성인병예방협회	18,000	25,000	44,600	44,600	49,600
건강관리협회	72,000	60,000	72,000	72,000	72,000
계	90,000	85,000	117,600	117,600	121,600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성인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

립암센터를 건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방 및 진료사업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나갈

각종 성인병의 發病率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적인 연구 및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들 질환의 예방 및 조기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질환의 예방 및 조기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발병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각종 성인병을 퇴치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보건소·지소 등의 보건기능을 강화하여 고혈압·뇌혈관 질환·당뇨병환자들에 대한 치료후 관리업무까지 수행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조기에 小兒成人病을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림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암관리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최고수준의 인력, 연구분위기 및 실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능면에서는 예방이나 集團檢診·등록사업·정보교류 및 전문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중복투자를 막고 예방위주의 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제도의 補完 및 투자 긴요

각종 성인병의 發病率과 이로 인

한 사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적인 연구 및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표 5〉 특수질환센터 현황

(단위 : 엔)

병 원 별	전문진료과목	지 원 액	의료장비도입수
대구파티마병원	암	188,579,791	8종
세브란스병원	심혈관	294,003,091	10종
인천중앙길병원	성인병	377,824,000	35종
강동성심병원	심장고혈압	290,827,997	25종
중앙대부속병원	성인병	350,220,754	57종
전주예수병원	암	108,311,709	10종
고신의료원	성인병	240,691,000	57종
순천향천안병원	암	221,000,000	41종
원주기독병원	암	340,000,000	3종

시간제근로의 활성화와 근로조건의 보장

경제정책해설

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指針'을 마련하여 '9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측이나 시간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 모두가 時間制勤勞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법정근로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산업사회의 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제근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勞動移動의 불균형에서 오는 마찰적 요인을 이유로 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근로자 수의 부족, 遊休人力이 산업노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인력난 해소는 노동력 공급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海外人力 輸入과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먼저, 해외인력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문제와 부작용이 염려되고 現行法이나 제도상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제근로 문제는 현재 일할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적절치 못해 취업하지 못한 주부·고령자 등 遊休潛在勞動力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부·고령자 등 유희잠재노동력은 약 2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¹⁾된다. 이들은 집안일을 돌보아야 한다거나 체력이 약하다거나 하는 점 등으로 通常勤勞者보다는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는바, 실태조사 결과 그들 중 약 110만명이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참고로 외국의 예를 보면 인력난을 시간제근로 활성화로 해결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경우 시간제근로자 고용비율은 10%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1년 1월에 14개 주요 工團地域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제근로자 고용비율이 약



문형남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1) 위의 수치는 '90년 11월 경제기획원에서 발간한 「고용구조 통계조사보고서」에서 인용
2) 同上

0.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通常勤勞者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근로자로 근로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반면에 소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주부·고령자 등이 취업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한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시간제근로자로 취업하려 해도 취업하였을 경우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시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勤勞基準法을 보면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휴일 부여시 유급임금지급·월차유급휴가·유급생리휴가 등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제도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고 생산성이 낮은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이러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휴일·휴가 등의 부여에 있어 特例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法改定을 검토한 바 있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보하고, 우선 시간제근로의 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現行法の 테두리 내에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기존의 시간제근로라는 제도에 대하여 判例나 행정해석 등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적용여부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의 내용

시간제근로자의 정의
시간제근로자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자로서 ‘1주의 所定勤勞日數 또는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3할 이상 적은 자’이다. 따라서 法定 기준근로시간(주 44시간)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4일 이하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8시간 이하인 자가 시간제근로자가 된다. 외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法定 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8할 미만의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日本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2할 이상 적은 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시간제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외국의 예보다 그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임시직근로자 등을 시간제근로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용어의 개념과 法定勤勞條件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용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형태인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날 또는 그 시간에 근로

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指針'을 마련, '9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시간제근로는 일할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적절치 못해 취업하지 못한 주부·고령자 등 유휴잠재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과 동시에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이러한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며 소정근로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형태이다. 그러나 1일 단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常傭勤勞者로 보게 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취지를 볼 때 3개월 정도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日傭勤勞者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法定勤勞時間을 그 기준으로 하며 소정 근로일이 없으므로 법정 휴일·휴가 부여 시 개근 여부 판단을 曆日에 의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선호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일용근로자는 결근 등이 자유로워 적절한 노무관리가 어렵고 작업의 안정성 유지 등에도 문제가 있어 상용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택하게 될 것이다.

■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判例나 行政解釋, 학설 등이 이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임시직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고용되거나 기업형편상 기간을 한정하여 고용되는 자로서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아르바이트 근로자

아르바이트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부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제근로·일용근로·임시직근로자가 되며 그에 따라 근로조건도 달리 적용된다.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勞動關係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법정 근로조건을 상회하거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통상근로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침에서 예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면 그 내용을 본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시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시간제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就業規則이 똑같이 적용된다.

임금·상여금·퇴직금의 산정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임금이 근로시간이나 업무의 양과 질 등을 감안하여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수준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저임금('92년 : 시급 925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여금, 法定外手當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수령액이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量·質과 무관한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시간제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退職金累進制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일이 현저히 적은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일급기준으로 임금을 비교하면 퇴직금산정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므로 3월간을 평균한 1일분 평균통상임금과 1일분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부여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소정 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일 내에서 근로시키는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한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법 규정 자체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미만이면 설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 하더라도法定加算賃金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초과근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더라도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법정 휴일·휴가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근로자

의 경우 법정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간제근로자는 그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이에 따라 적절히 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별히 휴무일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에 휴일·휴가를 휴무일로 대체하기로 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인정된다. 즉 週休日, 연·월차 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은 법정부여 요건이나 일수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그 날의 유급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일·휴가는 동일한 요건에 따라 동일한 일수가 부여되나 그 날에 대한

유급임금은 시간급×(주당 소정 근로시간÷6일)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는 시간제근로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같이 취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現行法 테두리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근로는 그 근로형태가 통상근로자와 다르므로 통

〈표 1〉 기업의 애로 요인

(단위: %)

요인별	인력부족	자금부담	인건비상승	판매부진	근로의욕 저하	기술수준 낙후
비율	58.7	15.2	9.7	7.8	2.6	4.6

자료: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기업애로요인분석과 기업환경개선」, '90.7.

〈표 2〉 각국의 시간제근로자 고용비율

국가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비율	24.7	17.3	13.6	12.6

자료: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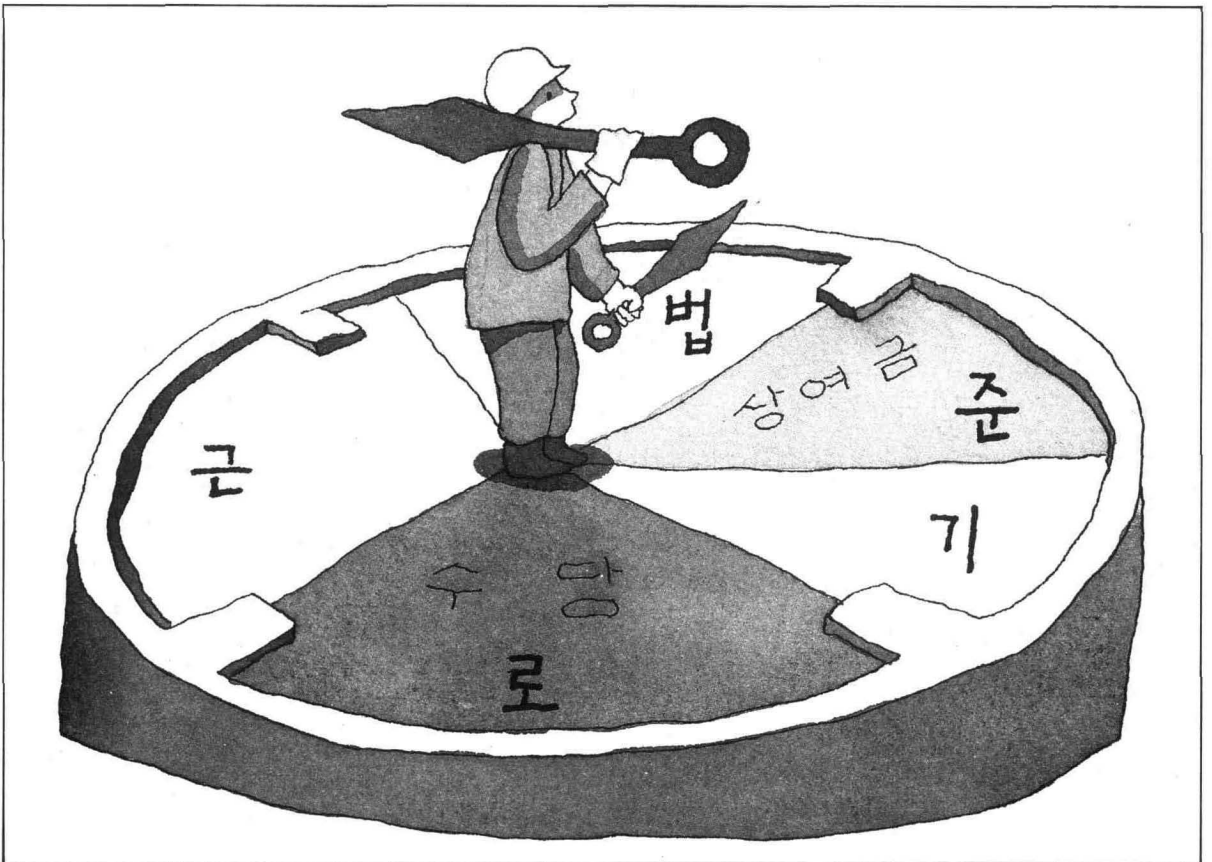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은
 現行法 테두리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을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모호한 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이번에 지침을 제정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주부·고령자 등 유휴인력이 시간제근로로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측에서 보다

라도 시간제근로자에게 상여금·각종수당 등을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어 時間制雇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 정하지 않았거나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법정근로조건 중 經濟的 補償과 관계가 있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된다는 점이 지침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경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추진대책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으로 인식될 만큼 익숙해졌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91년말 현재 42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자동차의 증가는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사고의 증가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91년 한 해에만 해도 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26만건이 발생하여 1만1,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하루 평균 35명이 도로상에서 죽어가는 비극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자동차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여 汎政府的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의식의 획기적 제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法規違反과 보행자의 질서의식 결여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숫자는 '90년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2.3%를 차지하여 美國 14.7%, 日本 28.9%, 프랑스 15.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자 비율도 12.5%로 일본의 5.6%에

비해 훨씬 높아 우리의 교통질서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교통사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통관련 각종 단체를 조직화하여 교통안전행사와 홍보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이 운동이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교통안전의 노래 공모·보급, 교통가족 회의,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교통안전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월과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정하여 대대적인 국민교통안전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5월과 9월의 반상회는 교통안전반상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는 최소 필요 교육시간을 설정하고 교통안전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부분의 사고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김규선
교통부 안전과장

적으로 확충·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시설은 '80년 이후 매년 1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日本과 비교해 볼 때 도로 1Km당 신호기 설치 수는 우리나라가 0.08개인 데 비해 일본은 0.11개이고 안전표지는 우리나라가 4.08개인 데 비해 일본은 9.44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交通犯則金 등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족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도로상에서 반경 30m 이내의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하여('96년까지 4,300여개소) 개선할 것이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건널목입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96년까지 195개소의 건널목을 立體化하고 안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어 안전시설이 취약한 4종건널목은 완전 일소할 계획이다.

사업용차량의 사고방지대책

'90년도의 경우 전체 자동차보유 대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차량이 사고건수에서는 26%를 차지해 높은 사고율을 보여줬다. 특히 시내버스의 사고율은 68%로 비사업용차량의 사고율 5.2%에 비해 13배 정도에 달했다. 사업용자동차의 높은 사고율은 과다한 주행거리,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무리한 운행체제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약한 경영기반과 사업자의 안전부문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處分基準 事故指數를 너무 높게 책정해 사고예방 효과가 미흡한 事故評價制를 대폭 보완하여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고지수를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업체 자체의 사고감소 대책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노선버스의 무정차·과속·난폭운전의 원인이 되

고 있는 무리한 운행시간은 교통체증 및 地下鐵工事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덤프 트럭이나 대형화물차의 과적과 난폭 운전 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運賃을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운수종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良質의 운전기사를 확보하여 부족한 인력난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지도 단속의 체계화·과학화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무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交通法規위반에 대한 단속률은 계속 높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은 증가해 왔다. 그 원인을 보면, 주요 단속대상이 과속·중앙선 침범과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항목보다는 주·정차위반, 차선위반 등 靜的인 단속 위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단속경찰관의 전문성부족과 속도측정기·순찰차 등 장비의 부족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운행 중점단속 대상을 靜的 위반행위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動的 위반행위로 전환하고 현재 15개로 되어 있는 운전자 벌점부과항목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표〉 신호기·신호등·안전표지 설치현황

('91년 3월 기준)

신호기		신호등		안 전 표 지				
일반	전자	차량등	보행등	주의	규제	지시	보조	소계
3,411	1,454	41,472	20,121	91,918	78,624	56,894	34,680	262,116

정부에서는 '92년을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으로 정하여 汎政府的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交通犯則金 등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족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위하여 정부에서는 '10大 불법운행 중점단속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음주운전 ② 안전띠 미착용 ③ 총알택시(자가용영업 포함) ④ 불법추월, 중앙선 침범 ⑤ 난폭·과속운전 ⑥ 과적차량, 번호판 가린 차량 ⑦ 버스·택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⑧ 상향등 조작, 경적 사용 등 위협운전 ⑨ 폐차량 재운행 ⑩ 오토바이 폭주족 등 열가지 사항이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실적 위주의 단속이나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사고 많은 지역,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예방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특수차·버스·화물차·택시 등 사고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경찰관의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기동장비 및 속도·음주 측정기 등 과학장비를 '94년까지 9천여대를 확충하고 현재 5천명 이내의 교통경찰관을 1만여명으로 보강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자동차안전도 향상

'90년도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승차중 사망한 사람의 차내 충격부위를 보면 핸들 11.9%, 전면유리 11.0%, 좌석 10.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의 주요 손상부위는 머

리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승용차 71.1%, 버스 64.2%, 화물차 70.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승차자가 핸들 등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핸들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며 전면유리의 치명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 및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 '92년말까지 완료될 1단계 사업에서는 충돌·충격·광학 등의 시험연구동이 완공되고 '93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소음·진동·환경 등의 시험시설과 주행시험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시설의 확보와 연계하여 車體強度, 충격흡수 등 승차차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성능시험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안전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효율적인 추진체제의 확립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교통사고사망자수를 '91년 1만2,800여명에서 '96년까지 8,6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

다는 목표 아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내 관련부처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교통안전추진체제를 확충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남원

전파진흥을 위한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

19세기말 전파를 媒體로 한 무선 전신이 발명된 이래 전파는 그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인하여 무선통신분야뿐만 아니라 방송·기상·의료·군사분야 등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情報社會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다양하고 고도화된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도 대부분 전파를 매체로 하고 있어 전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전파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파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통신·방송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超短波(VHF) 및 極超短波(UHF) 帶域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전파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이용하는 無線局의 숫자는 '92년 1월 현재 37만여국으로서 '80년의 2만2천여국보다 무려 17배가 늘어났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1,500만국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합리적 분배, 無線機器의 정확한 型式檢定, 무선국간의 混信防止,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전파환경의 개선 등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표 2> 참조), 이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재원은 매년 적자예산이어서 대부분의 비용을 통신사업특별회계의 郵政歲入으로 보전

<표 1> 무선국 증가추세

(단위: 개소)

	'60	'70	'80	'90	'95	2000
무선국수	1,025	6,102	22,773	238,702	1,413,000*	15,060,000*

註: * 전망치임

<표 2> 전파관리 예산현황

(단위: 억원)

	'88	'89	'90	'91	'92*
세입	33	35	43	44	65
세출	157	201	235	307	309
부족액	124	166	192	263	244

註: * 전망치임



이상윤

체신부 전파기획과장

하고 있다.

한편, 전파분야는 '80년대에 들어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유선통신분야에 비해 기술수준이 매우 낮아 단말기기의 국산화율이 34%에 불과하고 핵심부품이나 시스템장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 전파산업 구조의 취약 등으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제도도입의 배경

전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憲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가 共有하는 무형의 한정된 자연자원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전파는 통신·방송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混信이라는 물리적 성질 때문에 임의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經濟財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정인이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아 전파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의 대가로서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전파사용료제도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자에게 受

益者負擔原則에 따라 전파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電波管理經費에 충당하고,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을 통한 전파자원의 확대, 전파관련산업의 육성 및 전파환경의 개선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전파분야의 진흥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전파사용을 허가 받고 사용하지 않는 死藏된 전파자원의 반환을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전파사용을 억제하여 제한된 전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전파사용료제도는 '81년 1월 한국 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로부터 분리되어 발족한 이후 부족한 전파관리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의 사례와 학자·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공청회·심포지움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1년 12월 14일 공포된 전파관리법 개정법률에 전파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주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이 전파사용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명칭은 電波使用料·電波料·免許料 등 나라마다 상이하고 부과대상과 부과기준도 自國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파사용의 대가를 징수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91년 3월 郵政省 전파정책간담회에서 전파이용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93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동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사용료의 부과대상

전파사용료의 부과대상은 無線局의 개설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자가 되며 生活無線局(citizen band)이나 無線呼出機(pager) 등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광고수입이 없는 비영리 방송국이나 광고방송을 함으로써 방송광고물의 受託手數料를 납부하는 방송국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무선국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非營利放送局의 경우에는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

전파사용료제도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電波管理經費에 충당하고,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개발을 통한 전파자원의 확대, 전파관련산업의 육성 및 전파환경의 개선 등 전파분야의 진흥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외의 방송국은 방송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탁수수료가 전파관리에는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른 전파사용료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인명·재산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과 같이 영리도모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는데, 구체적인 減免對象과 減免率은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시에 정할 계획이다.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周波數帶域幅·출력·운용시간 등을 기본요소로 하고 이용형태·개설목적·주파수대역의 선폭도 등 加減要素를 적용할 계획인데, 보다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방법은 월별·분기별·年別·先納制·後納制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징수규모 및 용도

전파사용료의 징수규모는 전파관리경비의 적자폭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인데, 무선국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 징수로 확보되는 재원은 현재 우정세입에서 보전되고 있는 전파관리경비에 우선 충당하고 전파이용의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파관련산업의 육성 등 전파분야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전파진흥의 기틀마련

전파사용료제도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10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전파사용료 징수를 위한 인원 및 조직의 보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체신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2년 1월부터 전파사용료제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무튼 전파분야에 대한 정부내의

관련부처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한층 높아진 덕분에 뒤늦게나마 전파사용료제도 도입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파분야의 진흥이 필수과제임을 인식하고 '90년 12월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電波振興中長期計劃을 근간으로 각종 전파이용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다양한 국민의 전파이용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전파관련 연구기관의 지도·육성으로 전파이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대학의 電波工學科 증설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파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靑寫眞

경제정책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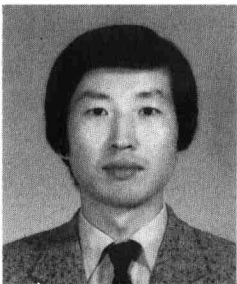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 왔던 東西 冷戰體制의 와해는 세계지도를 바꾸어 놓았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질서도 바꾸어 놓았다. 경제력·외교력·군사력도 과학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는 技術主權時代에 접어든 것이다. 자연의 회복과 환경의 보호도, 평화와 안전의 보장도 과학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각국, 특히 선진국이 취하는 정책의 움직임은 대단히 예민하고 활발하다. 힘의 내용이 기술로 결정되는 技術霸權主義의 흐름에 따라 각국은 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自國開發과 他國規制의 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UR협상에서는 제조업·농업·서비스시장을 전면 개방시키면서도 기술만은 선진국에서 독점하기 위해 知的所有權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91년 6월에 개최되었던 OECD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기술개발지원제도가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규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정치적 友邦은 있어도 기술의 友邦은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美國은 약화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85년과 '89년에 '경쟁력 협의회'를 설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1년에는 백악관에서 22개의 國家的 核心技術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핵심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技術優越法案'을 '91년 7월 하원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부시 行政府는 핵폭탄의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고 현재 주문중인 핵탄두의 생산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誌가 1월 25일 보도한 바 있다. 그 돈으로 환경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제고에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은 '지구화'와 '국경 없는 세계'라는 구호 아래 기초과학분야에서 美國을 추월하고자 생명과학프로그람, 지능생산시스템 등 국제적 규모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련기술의 선도국에 접근하고 있으며, 政·產·學·研이 혼연일체가 되어 '과학기술 世界一等'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강점은 첨단기술 및 고급기술인력과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에 있으며, 특히 '기계를 만드는 기계'의 생산에서 세계 각국의 달미를 잡고 있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精密金型이



최석식
과학기술처 기획총괄과장

없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정지될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中國도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科技興國’노선을 확립하여 전국 38개 도시에 ‘新技術產業開發試驗區’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초기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스템과 유사하게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분야의 생산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고 있다. 죄수가 만든 상품이 미국시장에 상륙하여 미국인의 인권적 시각을 자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中國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은 현대 최첨단기술의 복합체라고 불리는 핵실험에 이미 성공하였고, 매년 5만명 이상의 과학자를 선진국에 계획적으로 유학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달러가 남아돌아 쓸 곳을 찾고 있는 臺灣側이 중국 유학생의 학비를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러시아聯邦 등의 힘도 앞잡아 보아서는 안된다. 비록 지금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심각한 과도기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세계의 한쪽을 장악했던 무서운 저력의 나라이다. 그들의 높은 基礎·尖端技術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부문

으로 집중시킬 경우 머지않아 대단한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술수준

이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세계와 주변 4대강국 속에 위치한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떤 상태인가?

종합적인 규모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9.8%, 일본의 12.0%, 프랑스의 38.1%이고 해외기술의존도는 22.3%이며(일본 6.6%, 독일 6.2%), 창조적 기술의 원천인 基礎科學 論文의 국제 인용편수는 세계 38위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의 경우 조립·가공 등 일부 단순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설계·소재·소프트웨어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수요를 가진 고유기술이 없다. 반도체기술의 경우 기억소자의 생산분야에서는 세계 제2의 공급기지로 부상하였으나 핵심기술의 자립도는 설계기술 40%, 재료기술 10%, 장비제조기술 4% 수준으로서 일부 선진국의 의도에 따라서는 일시에 무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자동차기술의 경우에도 최근에 엔진을 자체개발하는 데 성공하

였으나, 신차종 개발·핵심기능부품·전장화기술이 뒤떨어져 선진국시장의 고급수요를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日本 한 나라에 대해 8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기계류·부품·소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국내의 임금인상에 따른 자동화시설의 도입에 주로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적자폭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일본 경제학자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새로운 도약의 기틀

급변하는 시대조류와 국제적인 力學關係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틀을 '92년말까지 잡아야 하고, 제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부터는 '우리만의' 創造的 結實이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 '우리만의 창조적 결실'은 모두 원천적으로 새로운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源泉技術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든 외국에서 개발되었든 우리 특유의 기법을 통해 최후의 결과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면서 세계 속으로 파

고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의 그 결실이 세계 시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면 된다.

우리는 그 創造의 씨앗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 바로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면서 부존자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업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서 교통문제·공해문제·생활공간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각국은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만든 제품은 세계적인 제품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구조·산업구조·경제구조를 가지는 동시에 國際收支問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기술에는 '一攫千金의 論理'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은 철저한 '累積性의 原理'에 입각하여 발전한다. 하루하루 개발한 아이디어와 제품의 개선노력이 쌓여서 새로운 기술의 형태로 변모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건너뛰면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나아가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즉, 우리의 生存基盤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12월 특정 분야의 과학기술을 200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즉, '96년까지는 생산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2000년까지는 핵심적인 先導技術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000년까지는 '7대 정보통신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포부와, 2000년경에는 연간 3만편 이상의 국제적인 기초과학 논문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리하여 2000년 세계 7대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 제시, 수단의 동원, 연구풍토의 질적 개선, 종합정보체제의 구축과 연구개발의 본격적 국제화라는 새 혁신의 뼈대와 방향과 신호가 잡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美·日·中·露의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背水陣'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우리의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의미의 선언으로 간주하는 시

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연장에서 볼 때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렵다는 인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두 일등국이 뒤로 밀려나고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경우, 敗戰國이 한세대만에 勝戰國을 누르고 일어난 경우 등 10년전, 30년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하리라 확신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과학기술 G7'을 향한 도전

과학기술발전의 양대 핵심요소는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투자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은 '90년 현재 7만명으로서 미국('88: 94만9천명)의 17분의 1, 일본('90: 48만4천명)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과학기술투자는 '90년에 53억달러로서 미국('89: 1,420억달러)의 32분의 1, 일본('89: 790억달러)의 18분의 1, 독일('89: 345억달러)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하기는 현재의 사고와 발상, 정치·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용이하

1) 연구개발인력과 과학기술투자의 국제비교배율에 있어 연구개발인력은 '88년 기준, 과학기술투자는 '89년 기준임.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12월 특정분야의 과학기술을 2000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즉, '96년까지는 생산기반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2000년까지는 핵심적인 先導技術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지 않다. 사회간접자본, 농어촌대책, 국민의료·복지대책 등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이다.

G7 核心先導技術의

전략적 개발 추진

이러한 시각에서 지난해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상공부·체신부·동력자원부·보건사회부·농림수산부·환경처·공보처 등 과학기술關聯部處들이 서로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성공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7개의 '次世代 제품 기술'과 7개의 '源泉基盤技術' 등 14개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次世代 제품기술 개발사업'은 산업화에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성장·성숙기의 제품수명주기에 이르게 될 次世代 尖端技術製品 또는 미래 유망산업 제품 중에서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나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제품관련 기술개발과제이면서 개발기간중 자원동원이 가능한 과제이다 (〈표 1〉 참조).

한편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은 2000년까지 최종연구성과품의 실용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하지만, G7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

〈표 1〉 G7차세대 제품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단계별 개발목표	참 여 부 처
초고집적반도체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년까지 64메가디램 개발 '96년까지 256메가디램 개발 2000년까지 1기가디램 개발 	과기처, 체신부, 상공부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까지 ISDN구축 	체신부
고선명TV(HDTV)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년까지 HDTV 수상기기술 확보 '94년까지 전송·방송기기술 개발 '97년까지 평판디스플레이기술 개발 	상공부, 체신부, 공보처, 과기처
전자자동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까지 축전지 및 고속충전장치 개발 '96년까지 시판가능한 전자자동차 개발 	상공부, 과기처
인공지능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까지 신경망·지식추론형 컴퓨터 개발 2000년까지 동시통역컴퓨터 개발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
신약·신농약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까지 항생·살균 신물질 개발 	과기처, 보사부, 농림수산부
첨단생산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년까지 초정밀 가공시스템 개발 '96년까지 통합제조시스템 개발 2000년까지 지능화 생산시스템 개발 	상공부, 과기처

〈표 2〉 G7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

과 제 명	단계별 개발목표	참 여 부 처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능·고효율·고부가가치 및 에너지 절약형 신소재기술 	과기처, 상공부
차세대 수송기계·부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화·자동화관련 엔진·부품기술 등 	상공부, 과기처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공업기술 및 농업분야의 신생물자원 기술 등 	과기처, 농림수산부, 보사부
환경공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기술, CFC대체물질, 수질 기술 등 	환경처, 과기처, 건설부, 상공부
신에너지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및 변환기술 등 	동자부, 과기처, 상공부
신형원자로 설계 및 실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실용화 목표의 신형원자로 설계 및 제작관련 기술 	동자부, 과기처, 상공부
감성공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서 및 생체계측 기술, 미니로봇 기술 등 	과기처, 상공부

해야 할 據點技術로서 파급효과가 크고 자력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확립해야 될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 그리고 국내외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꼭 개발해야만 하는 분야의 기술이다(〈표 2〉 참조).

정부에서는 금년 4월까지 과제별 연구기획과 산업화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5월중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이 과제의 수행에는 산업계·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의 모든 전문인력을 최대한 동원·투입하고, 특히 차세대 제품기술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관련 산업계의 주관하에 실용화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해외의 인력까지 동원·활용하는 國際共同研究開發體制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초고집적 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첨단소재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로 추진중에 있다.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

과학기술 G7 진입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투자의 규모는 2001년도에 國民總生産의 5% 수준이다. 정부에

서는 이 투자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 나갈 것이다.

첫째, 政府部門에서는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과학기술예산의 비중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단기적 사업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소관분야의 기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특히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를 금년의 2.7% 수준에서 2000년대초에는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방위산업관련 民需分野의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기금의 운용시에도 그 一定率을 관련기술개발사업에 出捐·融資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의 과학기술투자확대의 가시적 사업으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科學技術振興基金'을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의 財源은 일반회계, 정부투자기관 배당금 및 주식 매각대금, 기술개발 복권 발행 수입, 투자기관과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업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戰略課題의 계획적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금은 기술개발의 특성상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응용연구 및 실용화개발에 대해서는 조건부 융자형식으로 지원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기초·기반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出捐金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투자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투자의 증대를 정부가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일정률을 자체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기술개발관련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화제도를 현재의 통신공사 등 3개 기관에서 모든 기관에 확대·적용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영평가항목 중 연구개발 투자 실적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1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혁신은 임원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만큼 기술혁신에 의한 경영개선실적을 임원의 人事考課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기술개발금융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92년 7월 1일에는 현재의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였는바, 이것은 7개의 '次世代제품 기술'과 7개의 '원천기반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화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자금을 확충하여 지원조건을 개선토록 하는 동시에, 優秀技術革新企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를 올해 안에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를 현행의 학사 이상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연구원에서 모든 연구요원으로 확대하며, 기술개발비의 移越控除期間을 현재의 4년에서 5년으로 延長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特別償却率을 현재의 50%에서 90%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연구소가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연구소 설립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감면제도도 크게 확충해 나갈 것이다. 기업연구소 및 연구조합이 도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의 65%에서 80%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업의 연구용부품 및 원자재 등에 대한 80% 關稅減免制度를 추가로 도입

하며, 기업 등이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 이내에 학교·연구기관 등에 無償讓與할 때에도 관세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제품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구매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입찰가격과 품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綜合落札制의 대상품목을 현재의 5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

첫째, 대학의 우수인력양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을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개편하고 '우수연구집단'을 기초과학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연구집단별 연구지원금을 '91년의 3억원 수준에서 '92년도에는 6억원 수준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과 政府出捐研究機關이 공동운영하는 碩·博士課程을 늘리는 동시에 교수임용시 산업체와 연구소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相互兼職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원의 서울분원에 석사 200명, 박사 100명의 '産·學制 및 研究員課程'을 설치하여 '92년 봄학기부터 강의에 들어가며, 광주과학

기술원을 '95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91년도 하반기에 '과학꿈나무 육성운동'을 통해 모금한 80억원을 긴급지원하여 과학기술교육환경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과학과목의 시간수가 확대되도록 제6차 교육과정 개편시 반영하는 동시에,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와 실험보조원을 증원하고 국민학교에도 과학전담교사를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科學英才教育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수학·과학 특별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매주 운영하고, '과학 올림피아드 위원회'를 한국과학재단에 설치·구성하여 창의력·탐구력·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산업계의 자체인력 양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社內技術大學(院) 졸업자에 대해 학위 및 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병역특례연구요원을 '92년에는 '91년보다 46% 증가된 1,570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며 기업별 규모를 실정에 맞도록 하반기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체계의 강화

첫째, 산재한 과학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시스템공학연구소·국방기술정보센터 등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확대하고 과학기술 정책정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도 육성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해외의 심층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현지의 과학관·교포 과학기술자·과협·정부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정보수집망을 연차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우선 '92년에는 일본 동경에 統合事務所를 설치하고 모스크바에도 부분적으로 착수하며 '93년 이후에는 미국·유럽지역 등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해외에 장기파견되는 과학기술자에게는 현지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국가적 공동활용에 제공토록 '정보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되도록 전문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구전산망 등에 연결하며, 국가가 지정한 관리기관 등에 대해서는 情報通信回線 이용료를 30% 정도 감면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구개발의욕의 고취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자금·인력·정보의 자원적 투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들 자원의 투입이 꼭 필요하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魂과 생명의 注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자 공로연금·한국과학賞·장영실賞과 같은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우수업적 창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원의 10~20%를 매년 해외에 연수시켜 지식을 재충전할 기회를 부여하며,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최신기술정보를 입수토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91년에 인사·회계·예산 관련 규정과 준칙을 전면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연구개발체제를 수요지향적으로 개선한 바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서는 매년 1~2개의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연구풍토와 기관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인센티브를 종전의 年功序列기준에서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공립 연구기관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협동연구개발체제의 강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자원을 서로 협의하여 유기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것이 자원활용상의 최대 과제이다.

첫째, '91년에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연구원 교류 勸告制度'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간 기술협동의 구심체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연구와 교육과 산업기능이 같은 공간에 공존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선 대덕연구단지를 '92년말까지 완공하여 중추로 삼고, 광주첨단산업연구단지와 부산·대구·전주·강릉에 지방과학산업연구단지를 2001년까지 건설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엔지니어링과 정보산업체가 입주하는 知識産業研究團地를 경기도 발안공업단지내에 10~20만평 규모로 '95년까지 건설하기 위하여 '92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현존 한 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일부 기능을

과학기술 G7진입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투자의 규모는 2001년도에 國民總生産의 5%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이 투자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 나갈 것이다.

확대·보강하여 '92년중에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운영할 것이다.

과학기술활동의 본격적 국제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인력과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동원하여 활용해야 되며,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선진국으로 파고 들어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美國과의 기술협력을 同盟次元으로까지 강화하고 일본·유럽 등과 협력하여 반도체·공작기계·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을 공동개발하며, 러시아聯邦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기술의 실용화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첫째, '92년 1월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시 체결된 과학기술협정을 토대로 '92년 상반기중에 韓·美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 기술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는 합의된 과제별로 공동연구개발에 착수하며, 양국간의 공동 연구사업과 합작기술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美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韓·美과학기술포럼'을 '92년부터 상호교환방식으로 개최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聯邦 등이 보유하고 있는 48개 기초·첨단기술의 국내 실용화개발을 위하여 이미 착수된 20개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하여 항공기 복합소재 설계기술 등 5~6개 과제의 성과를 금년중에 可視化시키는 동시에 10개 과제를 새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92년에는 이들 과제의 수행에 관련된 러시아연방 등의 우수과학기술자 80여명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연구기관과 대학이 중·장기적으로 정원의 5~10%에 상당하는 해외 고급두뇌를 定員外로 초빙·활용토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1만2천여명의 교포과학기술자를 '韓民族 과학기술공동체'로 규합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활용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에는 재미·재일·在歐·在캐나다 科協에 이어 在露·在中 科協에도 새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生存을 위해서 과학기술혁신 이루어야

400년전에 우리 선조들은 倭軍의 신병기인 鳥銃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때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10萬養兵說을 주장하였던 李栗谷 선생의 뜻을 따랐던들 우리의 국토가 왜군들에게 유린당하는 쓰라림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1세기 남짓 이전에 우리는 世界列強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일본·청·러시아는 우리 땅을 빌려서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을 치렀고, 그 결과 우리는 36년간의 暗黒期에 빠져 들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400년전과 100여년전의 그때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정초에 있었던 日本 미야자와 총리의 訪韓은 大東亞 共榮圈 구축에 따른 한국측의 양해를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신문논평도 있었다. 우리는 '화려한 번영의 꿈'보다는 눈앞의 '生存'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서둘러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質적으로 단탄한 '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불필요한 물질이 발생되어 쓰레기로 버려진다. 그 량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절대적 증가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와 병행된 상대적 증가분이 해마다 늘어나 '90년 현재 1일 발생량이 8만 4천에 이르고 있다. 쓰레기의 質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소비 등으로 폐지류, 자연적 분해가 잘 안되는 플라스틱류, 부피가 큰 가전제품 및 가구류, 유독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폐건전지류 등이 날로 늘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처리에 있어서는 매립 93%, 소각 1.5%, 재활용 5%, 기타 0.5% 등으로서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의 확보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소각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可燃性쓰레기가 발생단계에서 분리되지 아니하여 소각시설 운영과 효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란 이를 개선하고 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의 발생자가 협조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리보관, 분리수집·운반, 분리처분이 체계

화되고, 쓰레기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발생자인 시민 그리고 재생제품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본방향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는 '8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곧 시들해지고 몇몇 지역에서만 명맥을 이어오다가 '90년 3월부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시민운동으로 처음 시작, 시범사업을 벌이던 중 관계 정책당국과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환경처에서 '90년 10월에 '전국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요강'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91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국일원에서 일제히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쓰레기 분류방법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결정하지만,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대별된다.

〈기본적 분류방법〉

- 위생매립장이 있는 지역 :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
-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 : 재활용품, 가연성쓰레기, 기타 쓰레기
- 기타지역 :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



최주섭

환경처 일반폐기물과장

분류된 쓰레기는 정기수집일을 정하여 청소차량이 순회수집하게 된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지역고물상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별도 수집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형쓰레기, 유해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성과

'91년 전국 271개 시·군·구에서 실시된 일반폐기물 분리수거의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쓰레기 수거체계와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이 개선되었다. 공동주택 쓰레기투입구의 폐쇄

이후 수거효율이 개선되었으며, 투입구가 폐쇄됨에 따라 하부저장조 역시 폐쇄되어 환경미화원의 하부저장조 작업의 필요성이 없어져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분리수거 봉지의 사용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서의 악취발생 및 먼지발생이 감소되어 환경미화원의 이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층부의 쓰레기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공해로부터 해방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되었다.

둘째, 일부 시·군·구의 공동주택에서는 단순한 분리수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한 품목별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아파트자치회 동별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시행착오도 발생하였다.

〈표〉 관계부처별 주요협조사항

관계부처	주요협조사항
환경처	• 전국 쓰레기 분리수거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쓰레기위생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 재활용품 유통체계 확립
내무부	• 시·도(시·군·구) 청소행정 인력보강 •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전개 지원
교육부	•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육 및 실천
건설부	• 공동주택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제도 개선
상공부	• 재생제품 제조업체 지원 및 육성
총무처	• 정부기관별 재활용품 수집 및 재생제품 이용 추진
공보처	• 대국민 홍보제도
조달청	• 재생사무용품 등 재생제품의 우선구매 조달
공업진흥청	• 재생원료 사용 의무기준 설정
시·도	• 분리수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시·군·구	• 분리수거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첫째, 일반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에 비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불충분했다. 재활용품 회수를 위한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의 회수체계 미비로 실효성 있는 분리수거의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추진이 지체되어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된 측면도 없지 않다.

둘째, 쓰레기의 분류방법은 통일돼 있으나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 나름의 분류방법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을 빚기도 한다.

셋째, 민간단체 역량의 결집이 미흡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자는 많으

나 이들 역량의 조직화된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올해 쓰레기분리수거 계획

정부는 금년부터 재활용품 회수에 초점을 둔 쓰레기 分離收去制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의 감량화와 매립지 부족문제를 해소키로 하였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활용 중심의

분리수거 추진체계 개선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재활용품 회수 및 재생에 중심을 둔 분리수거체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회수 모범지역을 선정·운영토록 하고, 아파트자치회·부녀회·소비자단체·종교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재활용품의 회수를 주관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 수집대상 재활용품의 선정도 그 판매수익성, 재생공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 수거기관이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용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개발·보급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250세트의 투명보관용기를 일선 시·군·구에 건본품으로 제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리보관, 분리수집·운반, 분리처분이 체계화되고, 쓰레기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발생자인 시민 그리고 재생제품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규격보관용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는 약 4,700세트의 공동보관용기를 自負擔으로 이미 보급하였고, 내무부에서는 시·도당 200세트의 분리보관용기를 보급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사용억제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의 자율적 폐쇄를 유도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여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청소행정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再活用品 회수 및 재생용품 사용운동의 추진을, 공보처에서는 분리수거제에 대한 공익광고 등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별로 쓰레기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위한 주요 협조사항을 보면 <표>와 같다.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의 적극 추진

분리된 재활용품을 수집·처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산하의 재활용사업소를 현재 12개소에서 52개소로 확충하여 지역사회·사회단체·학교·군부대 등에서 분리보관한 재활용품을 유상수집하여 이를 원료로 하는 재생제품 제조회사에 유가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산하의 재활용사업소에 페스티로폴 용융기 17대, 폐금속캔 압축기 17대, 폐가전제품 파쇄 및 자원분리시설 4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재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비축기지를 4개소 설치하여 폐자원의 가격등락을 방지하고 원료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활용폐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발생자와 이용자를 신속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도 정착 위해 국민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자원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총비용의 절감 및 자원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분리수거가 정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91년에 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분리수집처분 체계의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92년은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목표로 정책 및 집행당국에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하고 있으나 완벽한 시행체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중하차 없이 꾸준히 폐기물관리 기본정책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소비 억제, 쓰레기 분리보관의 협조, 재생제품의 적극 사용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쓰레기분리수거제도의 성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관

바깥을 보는 智慧



유득환
상공부 제차관보

요즘 아침 뉴스 시간에 TV를 켜면 외국뉴스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분명히 국제사회에 깊이 들어와 살고 있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化 현상은 교통·통신·정보 등의 물리적 발전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국제환경에 일종의 세계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문제는 이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國際社會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理想은 協力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內在하고 있는 요소는 競爭이 틀림없다. 지금 21세기를 향한 세계 각국은 제각기 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 모든 智慧를 짜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EC가 통합을 서두르고 美國도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 아세안 국가까지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 최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소련도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이 世界 競爭의 대열에서 낙오될까봐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1世紀를 눈앞에 두고 특히 선진경제권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의 未來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경쟁에서 이기면 신흥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대열에서 완전히 탈락해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 지금 바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를 바짝 추격해 오는 나라들과의 경쟁이다. 즉 바깥을 보며 지혜를 짜고 행동하는 對外競爭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現實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세계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바깥을 보지 못하고 내부 각 부문간의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경험한 국제수지 흑자의 이익을 우리 企業이 대외경쟁에 대비한 기술개발에 더 돌렸다면 지금의 對日 무역적자 개선문제가 그만큼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력집중 문제만 하더라도 경제력집중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홀하게 되면 앞으로 대외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기업간의 競爭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깥에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국제화 전략이다.

日本이 오늘의 經濟大國이 된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기업의 끊임없는 국제화 전략이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경제환경과 체질상 정부의 經濟運用도 마찬가지로 바깥을 보며 대외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출이 어려울 때에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중국이 우리의 수출을 앞섰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大學도 마찬가지이다. 美國·日本·西歐 등 외국의 대학들이 엄청난 연구와 지식을 축적하는 동안 우리의 대학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政治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치 그 자체를 위하여 골똘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심정이 앞선다.

금년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2000년대 韓國의 未來를 결정하는 선택과 결단의 해가 될 것이 틀림없



다. 바깥은 공산주의의 몰락을 통한 소련의 붕괴 등으로 세계질서가 경제력 중심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이며 또 새 立法府와 大統領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생각과 선택, 그리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우리의 未來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바깥을 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智慧’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모든 분야에 걸

쳐 바깥을 보지 못하고 대외경쟁에서 지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21세기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난제들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결국 선진국의 꿈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企業은 기업대로,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바깥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제각기 당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면서 힘을 기르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나라경제

다시 한번 뛰어야겠다



박진호
과학기술처 기획관리실장

몇 년전 어느 정치인에게 “의원께서는 명연설로 유명하시는데 연설 원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인즉 30분의 연설을 위해서는 적어도 3일 전에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5~6시간 정도 직접 원고 정리에 몰두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중연설에서는 처음 5분간에 군중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석한 대중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정리하는 데 정성을 쏟는다고 하였다.

그 분이 명연설가로 이름이 높은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2~3년간 우리 사회에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외국인들은 빈정대며 다음과 같이 혹평하고 있다.

“한국인은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한국경제는 구제할 수 없는 괴질병을 앓고 있다”

“外樣은 번지르르하나 속으로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한국인 자신들도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또 일본의 어느 경제 평론가의 말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다.

“韓國은 이제 日本의 경쟁대상이 아니다. 로열티를 많이 받고 첨단기술을 팔아 먹어도 좋다. 부메랑 효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이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민족성에서 연유한다. 한민족에게는 ‘양반주의 이상론’이 깔려 있는데 그 최고의 이상은 바로 놀고 먹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20년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하면, 오직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이제 배가 불러 포만감

이 생기자 그들의 본성인 ‘놀고 먹는 사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따라오지 못한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견적이고 경쟁적인 입장에서 비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할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그들의 경쟁상대자로 혹은 자기나라 발전을 위한 모델케이스로 보았던 간에 근면·성실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보하였을 것인데 모두들 자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준 데 대하여 비판보다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처지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진작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국가경쟁력 신장도 절실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요소 즉, 勤勉性을 되살려야 한다.

우리는 각자 정신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성해야겠다. ‘젖은 수건을 짜면 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일본이 패전후 미국 등 선진국보다 열악한 환경과 투자부족 속에서도 오직 저축과 근면 성실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선진국을 이룩하였고, 지금도 세계의 債權國家 면서도 여전히 절약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

특히 공무원들은 계속되는 선거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들떠 있을 때일수록 각자 맡은 직무에 ‘혼과 생명’을 불어 넣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박진호**

‘작고 힘없는 나라’論



최양부
농림수산부장관 자문관

UR 농업협상과 관련해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심각한 의견의 대립을 겪고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란 바로 우리에게선 쌀의 시장개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농민,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취약한 농업경제 현실에서 쌀의 시장개방은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하여 쌀만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부 언론들과 지식인, 기업가들은 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UR의 성공적인 타결이 국익에 더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쌀의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와 같이 ‘작고 힘없는 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미 대세가 된 예외없는 관세화를 뒤바꿀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반영될 수도 없는 것을 고집하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고, 쌀시장 개방 이후의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를 둘러싼 이상과 같은 수용·거부의 논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국익이 충돌하는 무역전쟁·통상마찰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국익을 놓고 타협하고 흥정하는 협상의 場에서 대세론·불가피론·‘작고 힘없는 나라’론을 펴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 일인가?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겁먹은 우물안 개구리의 사대주의적 발상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무역협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무역협상은 시장확보를 둘러싼 국익의 충돌이고 마찰이며, GATT는 그러한 경제전쟁의 場에 불과하다. 자유무역의 이상과 원칙은 시장쟁탈의 국익극대화를 합리화시키는 고상한 논리이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흥정과 타협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공략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행중인 협상에서 더군다나 끝이 언제 어떻게 날지도 모를 협상에서 상대방의 위협과 공세를 견디 내지 못해 스스로 ‘작고 힘없는 나라’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협상노력의 포기를 대세론·불가피론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쌀처럼 중요한 문제가 걸린 협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상대방의 공세가 아닌 우리 스스로 최후의 순간까지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UR은 아직도 그 결론을 속단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는 협상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쌀의 시장개방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역사적 결단을 요청하는 문제이지 회색적인 대세론이나 불가피론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모두 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그리고 ‘힘없고 작은 나라’라는 자기비하의 역사적 사대주의를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통해 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제



송향섭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국장

우리나라의 年金制度는 '88년부터 실시되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1년말 현재 477만명의 가입자와 3조3,275억원의 적립금이 조성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급여내용 등에서도 선진국에 전혀 손색이 없는 社會保障制度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제도시행 초기여서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까지는 基金規模가 급속도로 커질 것이나 그 이후에는 점차 증가율이 감소되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2040년경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작년말 선진국의 연금관계 업무시찰을 위하여 독일·영국·프랑스·헝가리 등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가입자들의 寄與金 齎出料率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며, 給與開始年齡(65세) 및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老齡化社會로 진전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부과방식에 의한 기금재정 확보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점차 급여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受給年齡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심한 반발 및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한국은 제도도입 초창기로 기금재정을 積立方式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국과 같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平均壽命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변천되는 과정에 있는 점과, 낮은 齎出料 및 높은 급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국민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연금기금의 적립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 公共性 위주로 하자는 의견과 收益性 위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목적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기금의 長期財政安定에 우선 목표를 두고, 기금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도 일정수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비율은 급여지급을 제외한 純粹 각출료의 50% 이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財政投融资特別會計 등 공공부문에 사용할 경우에도 기금전액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소한 國·公債 利率 수준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려운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금고갈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깊게 분석한 후 지급부터 勞·使·政 등 이해당사자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적정 각출료 산출과 급여수준 및 조건을 개선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안정된 老後生活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집배원 손수운전 우편배달



서순조
체신부 우정국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주는 郵便은 주요한 의사전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오늘날 경제 사회의 눈부신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우편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現物性·기록성·대량 전달성 그리고 경제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전기통신 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우편 취급물량이 26억통을 넘어섰으며 최근 수년간에 걸쳐 평균 13%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편제도는 신라 소지왕 9년(487년)에 처음 시행된 郵便制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우역제는 烽燧制와 더불어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통신수단으로 기여해 왔다. 근대적인 의미의 우편제도는 1840년 영국의 로랜드 힐卿에 의해 요금의 균일·저렴·先納를 원칙으로 우표를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884년에 선각자 洪英植선생에 의하여 郵征總局 설치와 함께 이와 같은 근대식 우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까지는 접수·정리·消印·행선지별 분류·우편자루 묶음·운송 그리고 배달지역별 분류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 중 우체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인·분류 등의 작업과정은 기계화가 가능하여 '90년 용산역 부지내에 대규모 기계화 郵便集中局을 건설, 하루 250만통의 우편물을 컴퓨터화된 최신설비에 의하여 자동처리하고 있으며, 오는 '95년까지 성동구 자양동에 제2집중국을 건설키로 하고 현

재 세부 설계를 실시중에 있다.

그러나 우편물의 배달업무는 이와는 달리 우편업무 중에서도 가장 勞動集約的인 분야로서 기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우편물량과 우편물의 중량화, 그리고 대형화 등에 따라 집배원의 업무량이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으나,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가 사회전반에 걸쳐 있어 집배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집배원의 이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우편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集配員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집배업무 기동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해마다 자동 이륜차를 대폭 늘려나가고 있으며, 특히 '91년 11월부터는 도시지역의 다량우편물 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집배원이 손수 운전하면서 배달하는 자동차 배달제를 새로 시행하였던바, 당해 집배원과 우편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매년 배달용 자동차를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 배달제가 정착되면 우편물 배달이 한층 신속해지고 집배원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는 遞信當局은 물론 우편물발송인·수취인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집집마다 문패와 규격에 맞는 우편 수취함을 설치하여 정성들여 보낸 편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수취함을 제대로 달지 않아 우편물 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한다.

입장차이와 균형감각



조우현
건설부 국토계획과장

‘行政規制緩和’ ‘民願解消’ 등 행정개선 내지 행정 쇄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또 각종 促進法이나 特別措置法이 새로이 제정되고 있다. 지금도 각종 법령이 적지않음에도 새로이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본질적인 개선까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그런 논의는 頻度가 더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규제완화와 행정법령을 계속해서 보완시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법체계나 제도로써는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장에 따라 法制改正이나 行政改善의 필요성과 그 주된 이유는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일반 민원인은 기존 법령의 비현실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政策執行者를 포함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비현실적인 관행을 지속하다가 한계에 부딪치니까 마지못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이해집단간에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規定을 만들고 고친다고 생각한다.

또한, 純粹理論家들은 일반수혜자를 需要로, 정부쪽을 供給으로 상정하여 양자의 수급관계로 보고 문제의

본질이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어떻게 보면 兩非論인 셈이다.

이렇듯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는 모습은 공직에 있다가 교수로 변신하거나 은퇴해서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를 자기쪽에서 찾지 않고 주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경우 확실한 것은 장내가 시끄럽고 해결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解決代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입장에 따라 直接規制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의와 규제를 풀자는 供給擴大論者로 갈린다.

전자는 政府主導 쪽으로 규정을 강화하자는 理想論 쪽에 가깝고, 후자는 민간주도로 공급을 확대하자는 現實論에 가깝다 하겠다. 일반경제에서 安定이나 成長이나 하는 문제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것이 수도권문제, 국토이용규제 등 각종 도시·교통·환경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물적·인적자원의 제약,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면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最適의 代案일 것이다.

바깥수록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과격하지 않은 창조적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대이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試行錯誤를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均衡感覺을 갖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원

‘經濟論理’로 日本에 접근하자

박수천

상공부 통상진흥국 사무관

’92년 벽두인 지난 1월 8일 저녁, 상서롭지 못한 일
이 日本에서 일어났다.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美國의 대통령이 일본총리가 베푼 만찬장
에서 일본총리의 무릎 위에 그만 쓰러진 것이다. 왜소
한 미야자와 총리에 비하면 부시대통령은 마치 다윗 앞
에 선 골리앗과 같은데도 말이다. 이 장면을 보며 인간
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역사의 드라마가 역전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하여 씁
쓸했다.

戰後 50여년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가며 오직 한길로
개미떼처럼 준비해온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일본
에게는 두려운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다. 미국이 으름
장을 놓아 결국 자동차나 몇대 더 팔게 되었지만 부시대
통령에게 손님대접으로 체면치레를 해주었을 뿐이다.
이것을 보고 자존심 상한 미국 기업인들이 自業自得
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화풀이를 해뒀
던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다. 일제 36년의 치
욕에서恨을 풀고 해방된 이후, 국가재건 기간은 6.25
를 겪기는 했으나 일본과 비슷했다. 지금 패전국 일본
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해방국 우리나라
는 일본의 경제적 종속을 벗어날 길이 아득하다. 우리
는 일본을 증오하고 배척하고 깔보고 있지만 그러고 있
기에는 무언가 허전하다. 미야자와 총리가 방한했을 때
만 해도 사과니 배상이니 청산이니 하고 몰아치긴 했지
만, 한편으로 90억달러의 무역적자가 가위를 누르고 있
었다.

90억달러의 역조가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자신있는 공박논리
도 아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는 업신여긴다며 그들
의 간교함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시원한 답은 되지 못
했다. 세계에서 행세를 하려면 이웃을 도와야지 그렇게
노랭이 짓만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국제화 논리도 허사
였다.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었고, 옛날에 수탈한 죄
가 있으니 내놓으라고 옥박지른 것밖에는 안되었다.
도대체 일본을 꼼짝못하게 꾸짖을 대안은 없는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섰고, 유교적 체통이 있고, 일
본문화의 本流가 우리라고 자랑하면서 더욱이 창피스
런 과거까지 있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저런 요청이
나 해대고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이 지경이 되
었나 하고 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
을까? 모두 지혜를 모아 내놓은 협상 의제가 어제나 지
금이나 천편일률적이다. 그럼에도 회담이 끝나면 합의
된 것도 많고 약속한 것도 많다. 지금쯤이면 역조개선
이라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성과는 어디
로 간 것일까. 일본관리들의 ‘前向的 推進’ ‘肯定的 檢
討’ 등의 말장난을 순진하게, 아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
였기 때문일까.

역조개선 장기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일본관
리들은 불만스럽게, 한편 두려운 눈으로 보았다. 지금 1
차 계획이 끝난 시점에서 보면 정부의 노심초사에도 불
구하고 자조섞인 여론과 부진한 기술개발과 함께 오히
려 악화된 逆調幅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對日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 수단의 대표주자인 각종의 수
출촉진단도 수없이 파견했지만 시종일관 일본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그 파견횟수가 일본측의 실적과 생색으로나 치부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새로운 우리의 정책과 법령은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그 배경과 운영방식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솔직해지고, 냉정하게 일본을 바로 보며 답안을 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기업·국민이 가져야 할 對日視角을 꾸밈없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對日經濟 교섭은 이제 자존심을 갖고 의젓한 대응을 해야 한다. 힘있는 미국도 일본과 교섭을 하면서 굉장히 얻은 것 같지만 실제 원론적인 선을 맴돌고 있고, 정초의 부시 訪日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본이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60~'70년대에는 施惠的인 협력을 했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경계를 했고, '90년대에는 경시 내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현금가치의 지원·협력을 할 리가 없다. 철저히 '주고 받는' 성격의 일본인이 우리의 무리한 요구를 보며, 한 수 아래로 앞잡아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일본이 지금의 경제대국을 만들면서 미국의 안보상 지원을 받았지만 일방적인 경제협력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다. 오직 은밀하게 접근하여 빼왔고, 공짜없이 거래를 했다. 그러므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목록을 내보아야 그들에게 우리의 취약점과 기도만을 노출시킬 뿐 별소득이 있을 리 없다. 관세인하를 제 아무리 요구해

봐도 자국기업의 동의를 얻어 내놓는 결과야 뻔하다. 결국 생색내기 좋아하는 일본이 한 두건 내놓았지만 우리만을 위해 별도의 배려를 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이 상업베이스로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업종 기능별로 만들어 각개약진을 시키는 각론식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가이드하며, 업계를 계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각 분야에서 온갖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우회적 시도는 당장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없어 국민감정과 부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 일본인은 감정적이고 거칠며 직선적인 것과 단기승부를 몹시 싫어하고,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조정자 역할만을 하려 든다.

이제부터 반응 없는 협상은 하지 말고, 감정이 통하는 대화를 하자. 대신, 우리는 흩어진 힘을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략적으로 끈질기게 추적할 국내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은 일본 현지의 공익기관들을 결집하여 서비스 하면 된다. 그리고 거대한 상사·교포·학생 등 조직이 손발로 뛰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파고 들자. 이것이 외양은 우리와 비슷하나 내면의 성향이 거의 반대인 일본 침투의 수순이다.

둘째, 우리 기업은 일본시장 진출시 본인이 기업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말고 무의식중에 양국의 무역적자가 얼마이고 식민지 운운하며 시장

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애국적인(?) 상사원이 종종 있다. 일본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 ‘마께오시미’ 근성이 있어 이런 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만이 아니고 상거래는 철저히 상업적이어야 한다.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기술습득을 어떻게 했나 살펴보아야 한다. 원천기술이 없는 일본도 거의 미국 등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것을 특유의 匠人精神과 대물림의 전문성, 공동개발의 협동심으로 소화해낸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쉽게 넘겨줄 리 없지만 가진 것이라곤 기술밖에 없는 일본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된 기술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의 지적소유권 환경을 공박하고 있다.

기술보호주의를 헤쳐 나갈 지혜를 우리도 터득해야 한다. 기술도입선과 신뢰관계를 쌓자.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오래도록 교분을 쌓아가자. 단번에 고액을 주고 패키지로 기술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핵심기술의 힌트만을 얻고 주변기술은 자체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길게 내다보고 젊은 연구원을 대학과 연구소에 파견하여 공부를 시키자. 좀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전’ 아닌 ‘흡수’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신용과 신뢰의 바탕에서 아직 문호가 열려 있는 학문과 연구실 쪽을 두드리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생색내며 할 일이 아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유통구조와 상관습이 특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오랜 인간관계와 신용에 의해서만이 납품구좌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것을 고치라는 것은 장사꾼이 할 일이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 장사를 잘하면 된다. 까다롭고 이윤도 시원치 않은 곳이지만 집요하게 지속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그렇게 성공한 기업인도 많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성과에 불문하고 끈기있고 성실하게 수출촉진단장을 아직도 맡고 있는 박용학회장을 닮았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경쟁력과 수출을 명분으로 對日 수입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 그래서 對日 역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제 結者解之의 마음으로 기업인들이

나서야 한다. 경제면에서 對日문제 해결은 정부보다 민간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쌓인 국민감정을 제대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신대 문제로 정치부터 국민감정이 격앙되었고 쌍방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런 열화 같은 감정은 일제라면 사족을 못쓰는 졸부들, 철없는 젊은이 등 일제 광신자들을 계도하는 데 써야 한다. 일본인들은 자기 것을 최고로 친다. 전통일본카드 한 장, 일본무늬웃감 한 벌, 정통일본요정, 정통일본영화 등 ‘和製’라면 일본내에서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和製’로 ‘韓製’는 멍들어 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 경쟁력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애국심이나 국민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면 해결이 곤란하다. 기업인·소비자·국민 모두가 일제를 쓰지 않고 고도 살아남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일본에 대한恨을 푸는 길이다. 정부의 유일 대안인 수입선다변화 정책도 이제는 사방에서 넘치는 일제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 오직 양식있는 국민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도 韓製를 소중히 하는 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결국, 대일문제는 ‘經濟論理’와 ‘感情論理’로 귀결된다. 둘다 필요한 논리지만 어느 곳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분명히 일본과 직접 교섭하고 거래할 때는 ‘經濟論理’로 해야 한다. 그것만이 경제동물 일본인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내면적으로 우리것을 소중히 하는 일에는 ‘感情論理’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정서에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용을 반대로 해왔다.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일제를 구매한다는 ‘經濟論理’를 적용하고, 일본은 미우니까 만나면 욕을 해야지 하는 식의 ‘感情論理’를 사용한다.

속좁고 자기중심적인 ‘섬根性’을 녹여 내기 위해, 일본인들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隱忍自重하며 복수의 날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안으로 다져야 한다. 일본은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제제하고 교활하다며 업신여겨 보았자, 허풍떨고 자만하는 우리는 지금 뒤쳐져 있는 것이다. 선동적이기보다 의젓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열세인 상황에서 확실히 남아있는 가변요소 하나—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